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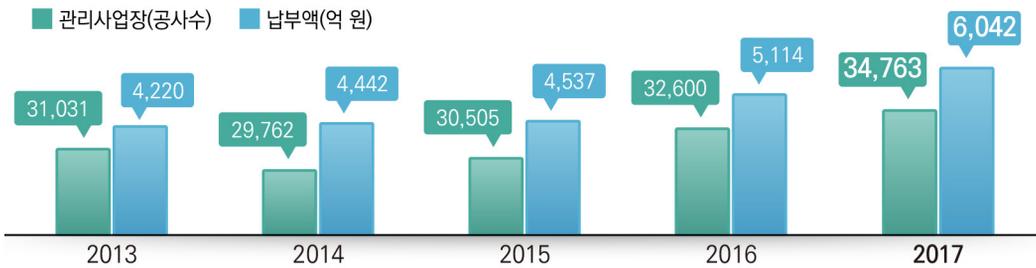
2017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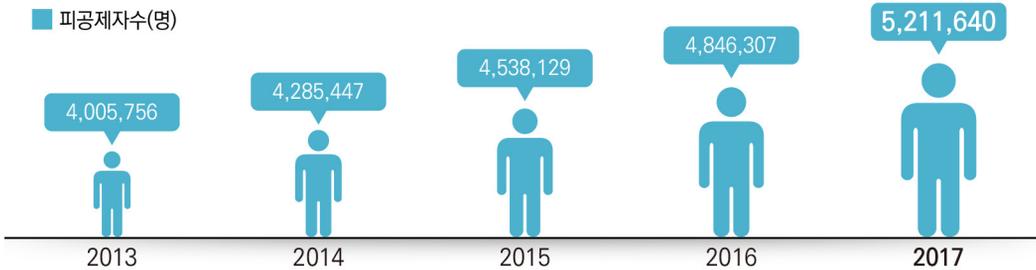
공제회 사업 주요 통계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공제 관리사업장 및 납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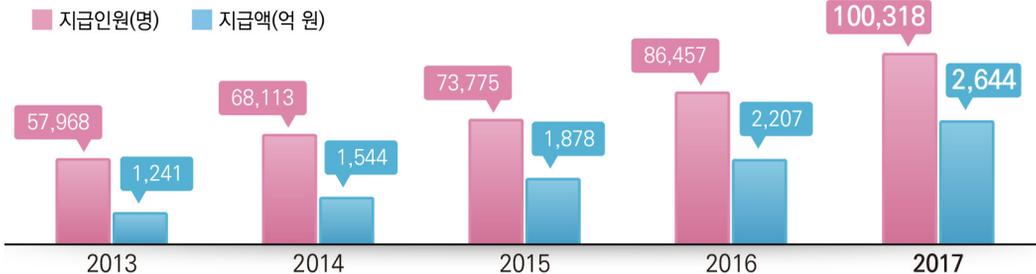


연도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피공제자 수 누계

※ 퇴직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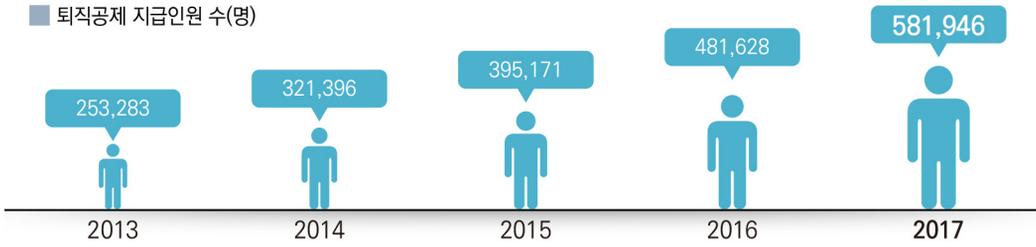


연도별 퇴직공제 지급건수 및 지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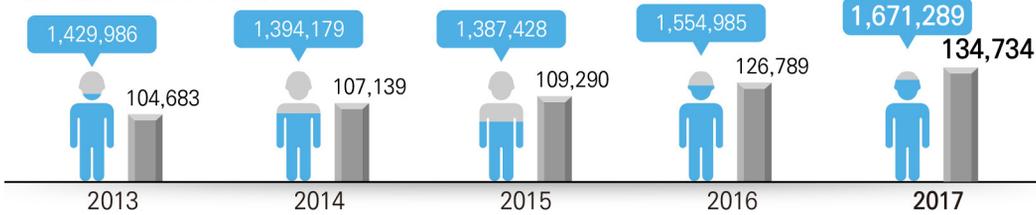
연도별 퇴직공제 지급인원 누계

■ 퇴직공제 지급인원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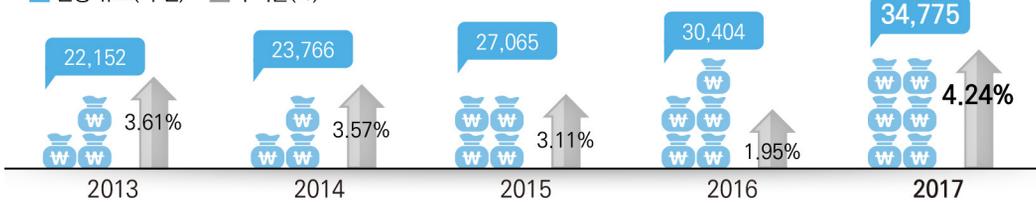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자 수 및 적립일수 현황

■ 적립근로자(명) ■ 적립일수(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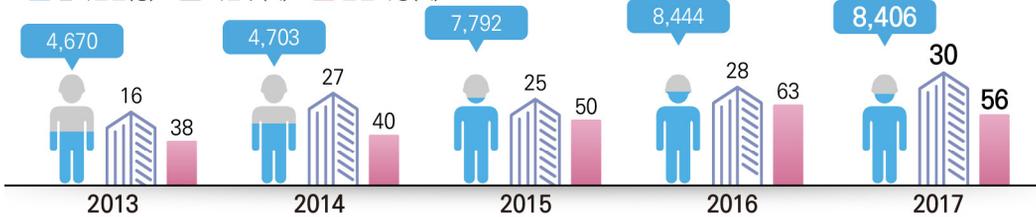
퇴직공제부금 운용규모 및 수익률

■ 운용 규모(억 원) ■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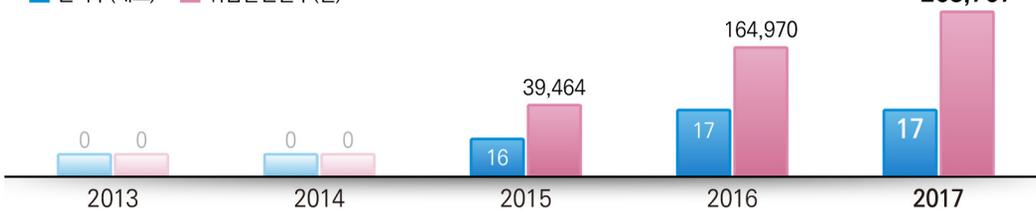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사업

■ 실시인원(명) ■ 기관수(개) ■ 훈련과정(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 센터수(개소) ■ 취업알선일수(일)



🏠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

생활안정 대부사업	11,217명 169억 원	고용이 불안정하여 시중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주택 및 전세자금, 학자금 등 필요자금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 실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32,000명	건설현장,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 상해 등 다양한 보장
종합건강검진 지원	958명	열악한 외부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3명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지원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지원금 지급	1,774명 14.3억 원	생활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 대해 장학지원금 지원
결혼·출산 보조금 지급	3,495명 9.7억 원	건설근로자 본인의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건설근로자 가족 힐링캠프 운영	621명	건설업에 공적이 있거나 감동있는 사연을 통해 선정된 건설근로자 가족을 격려하고 여행기회를 제공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개최	8회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매년 사진공모전 개최
종합지원 이동 상담버스 운영	101,364명	건설현장 및 새벽인력시장을 직접 찾아가 퇴직공제적립내역 확인, 각종 복지사업 안내 등 서비스제공
건설유공 근로자 포상 수여	271명	매년 11.22일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근로자를 발굴·추천하여 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

CONTENTS

CHAPTER 01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제1장 조직 및 기능	22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2
2. 기능	23
3. 조직 및 인원	24
4. 회계	25
제2장 주요사업	28

CHAPTER 02

주요사업 현황

제1부 퇴직공제사업	32
제1장 사업 개요	32
1. 가입 범위	32
2. 퇴직공제 이행	33
3. 퇴직공제금 지급	33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35
1.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35
2. 퇴직공제금 지급의 편의성 증진 및 안내 강화	40
3. 피공제자 정보관리 및 공제부금 수납처리 강화	41

제3장 추진현황	42
1. 퇴직공제 가입 현황	42
2.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	43
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44
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44
제2부 고용지원사업	45
제1장 기능향상훈련	45
1. 사업 개요	45
2. 주요 추진 사업	46
3. 추진현황	47
제2장 무료취업지원	51
1. 사업 개요	51
2. 주요 추진 사업	51
3. 추진현황	53
제3장 관련 사업	54
1.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및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	54
2. 건설고용지수 산정	55
제3부 복지지원사업	57
제1장 사업 개요	57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60
1.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60

CONTENTS

2. 건설근로자 건강지원	61
3. 건설근로자 자녀교육 지원	62
4.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	64
5.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64
6. 근로자 자긍심 고취	65

제4부 자산운용사업 ----- 68

제1장 사업 개요	68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69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69
2. 효율적인 자산운용	71
3.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73
제3장 추진현황	75
1. 자산운용 현황	75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76

CHAPTER 0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제1장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83
1. 건설경기 동향	83
2. 건설노동시장 동향	90

제2장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93
1. 개요	93
2. 공제부금 적립일수	97
3. 공제부금 납부	119
4. 퇴직공제금 지급	127

CHAPTER 04 부록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	139
--------------------	-----

CONTENTS

표 차례

〈표 1〉 주요 연혁	22
〈표 2〉 주요 기능	23
〈표 3〉 직급별 정원	25
〈표 4〉 2017년도 부금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6
〈표 5〉 2017년도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6
〈표 6〉 2017년도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7
〈표 7〉 2017년도 외부수탁사업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7
〈표 8〉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32
〈표 9〉 전자인력관리 현황	37
〈표 10〉 연도별 전자인력관리 사용 현황	38
〈표 11〉 전자카드 발급 및 계좌 현황	38
〈표 12〉 단말기 설치대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결과	39
〈표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43
〈표 14〉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 현황	43
〈표 15〉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44
〈표 16〉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44
〈표 17〉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47
〈표 18〉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48
〈표 19〉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48
〈표 2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48
〈표 2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49
〈표 2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참여유형별	49

〈표 23〉 공제회 자체 동절기 기능향상훈련 추진 실적	50
〈표 24〉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53
〈표 25〉 건설고용지수 점수별 업체분포 현황	56
〈표 26〉 '16년 대비 '17년 건설고용지수 구간별 업체 현황(0.4만점 기준)	56
〈표 27〉 생활안정 대부 사유별 지급현황	61
〈표 28〉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62
〈표 29〉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추진 현황	62
〈표 30〉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63
〈표 31〉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63
〈표 32〉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 추진 현황	64
〈표 33〉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65
〈표 34〉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65
〈표 35〉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현황	66
〈표 36〉 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67
〈표 37〉 사진공모전 추진 현황	67
〈표 38〉 사진전시회 실시 현황	67
〈표 39〉 중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안	71
〈표 40〉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71
〈표 41〉 공제부금 자산운용 현황	76
〈표 42〉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77
〈표 43〉 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77
〈표 44〉 건설투자 추이	87
〈표 45〉 2017년 공종별 건설투자 내역	87
〈표 46〉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최근 10년간	91

CONTENTS

〈표 47〉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17)	94
〈표 48〉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7)	98
〈표 49〉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0
〈표 50〉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1
〈표 51〉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2
〈표 52〉 적립일수 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3
〈표 53〉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5
〈표 54〉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7
〈표 55〉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8
〈표 56〉 신규 가입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9
〈표 57〉 신규 가입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0
〈표 58〉 신규 가입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1
〈표 59〉 신규 가입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3
〈표 60〉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4
〈표 61〉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5
〈표 62〉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7
〈표 63〉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8
〈표 64〉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7)	120
〈표 65〉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122
〈표 66〉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23
〈표 67〉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24
〈표 68〉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26
〈표 6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27
〈표 70〉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7)	128

〈표 71〉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0
〈표 72〉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1
〈표 73〉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3
〈표 74〉 적립일수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4
〈표 75〉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6
〈표 76〉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7

CONTENTS

그림 차례

〈그림 1〉 조직도(2017. 1. 1 시행) : 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	24
〈그림 2〉 사업 개요	28
〈그림 3〉 시범사업 성과측정 결과 최고-최저 사업장 현황	39
〈그림 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46
〈그림 5〉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76
〈그림 6〉 국내 건설수주 중장기 추이	85
〈그림 7〉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85
〈그림 8〉 국내 건설 세부 수주 중장기 추이 : 공공수주 공종별 추이	86
〈그림 9〉 국내 건설 세부 수주 중장기 추이 : 민간수주 공종별 추이	86
〈그림 10〉 건설투자와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88
〈그림 11〉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순환 변동치	88
〈그림 12〉 건설투자 순환 변동치 추이	89
〈그림 13〉 건설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의 경기순환주기 중 현재 위치	89
〈그림 14〉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90
〈그림 15〉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92
〈그림 16〉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17)	95
〈그림 17〉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1998~2017)	96
〈그림 18〉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7)	98
〈그림 19〉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99
〈그림 20〉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99
〈그림 21〉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0
〈그림 22〉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0

〈그림 23〉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2
〈그림 24〉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2
〈그림 25〉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3
〈그림 26〉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3
〈그림 27〉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4
〈그림 28〉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4
〈그림 29〉 월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6
〈그림 30〉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6
〈그림 31〉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8
〈그림 32〉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8
〈그림 33〉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09
〈그림 34〉 성별 신규 적립일수	109
〈그림 35〉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10
〈그림 36〉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일수	110
〈그림 37〉 직종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11
〈그림 38〉 직종별 신규 적립일수	111
〈그림 39〉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12
〈그림 40〉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112
〈그림 41〉 성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4
〈그림 42〉 성별 외국인 적립일수	114
〈그림 43〉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5
〈그림 44〉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115
〈그림 45〉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6
〈그림 46〉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116

CONTENTS

〈그림 47〉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8
〈그림 48〉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118
〈그림 49〉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7)	120
〈그림 50〉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1
〈그림 51〉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액	121
〈그림 52〉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3
〈그림 53〉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123
〈그림 54〉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4
〈그림 55〉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124
〈그림 56〉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5
〈그림 57〉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액	125
〈그림 58〉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7
〈그림 5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127
〈그림 60〉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7)	128
〈그림 61〉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0
〈그림 62〉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0
〈그림 63〉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1
〈그림 64〉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1
〈그림 65〉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2
〈그림 66〉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2
〈그림 67〉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4
〈그림 68〉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4
〈그림 69〉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5
〈그림 70〉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5

〈그림 71〉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7
〈그림 72〉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7

CONTENTS

부표 차례

〈부표 1〉 연도별 피공제자수	141
〈부표 2〉 연도별 연령별 피공제자수	142
〈부표 3〉 연도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144
〈부표 4〉 연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146
〈부표 5〉 연도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148
〈부표 6〉 연도별 성별 피공제자수	150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피공제자수	151
〈부표 8〉 연도별 연령별 신고 피공제자수	151
〈부표 9〉 연도별 시도별 신고 피공제자수	152
〈부표 10〉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고 피공제자수	152
〈부표 11〉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152
〈부표 12〉 연도별 성별 신고 피공제자수	154
〈부표 13〉 연도별 직종별 신고 피공제자수	155
〈부표 14〉 연령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156
〈부표 15〉 연령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166
〈부표 16〉 연령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176
〈부표 17〉 연령별 성별 피공제자수	186
〈부표 18〉 연령별 내외국인 피공제자수	188
〈부표 19〉 시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190
〈부표 20〉 시도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200
〈부표 21〉 시도별 성별 신고 피공제자수	210
〈부표 22〉 성별 적립금액별 신고 피공제자수	212

〈부표 23〉	성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214
〈부표 24〉	월별 연도별 신고 피공제자수	216
〈부표 25〉	월별 연도별 신고일수	217
〈부표 26〉	연도별 연령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218
〈부표 27〉	연도별 시도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220
〈부표 28〉	연도별 적립금액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222
〈부표 29〉	연도별 적립일수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224
〈부표 30〉	연도별 성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226
〈부표 31〉	연도별 시도별 외국인 신고 피공제자수	227
〈부표 32〉	연도별 연령별 외국인 신고 피공제자수	228
〈부표 33〉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 피공제자수 및 금액	229
〈부표 34〉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30
〈부표 35〉	연도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32
〈부표 36〉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34
〈부표 37〉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36
〈부표 38〉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38
〈부표 39〉	연도별 퇴직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39
〈부표 40〉	연령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40
〈부표 41〉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42



PART

01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제1장 조직 및 기능
제2장 주요사업

제 1 장

조직 및 기능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제회는 설립 당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공제부금 규모 증가와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표 1〉 주요 연혁

시기	내용
1996.12.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 9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노동부장관 인가)
1998. 1. 1	업무 개시(퇴직공제사업 시작)
2003. 7. 1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 변경
2006. 1. 1	전국 광역권 7개 지부 개소
2011.10.26	기능훈련, 취업지원, 복지사업 시작(건설근로자법 개정)
2013. 1.31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4. 4.25	건설근로자 종합지원상담센터 개소
2017. 1. 1	직제 개편(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

2. 기능

공제회의 기능은 건설근로자법과 공제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 등이다.

건설근로자법 1차 개정(2002.12.30 법률 제6848호)을 통해 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법률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를 신설해 퇴직공제제도 이외에 공제회가 수행할 다양한 사업을 열거했다. 공제회의 명칭을 변경한 취지는 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퇴직 이후’의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업인 퇴직공제 이외에, ‘재직 중’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각종 제도로부터 소외됐던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은 보다 강화된 고용지원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표 2〉 주요 기능

구분	건설근로자법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 정관 제30조(사업)
주요 기능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에 관련된 간행물의 발행 및 홍보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3. 조직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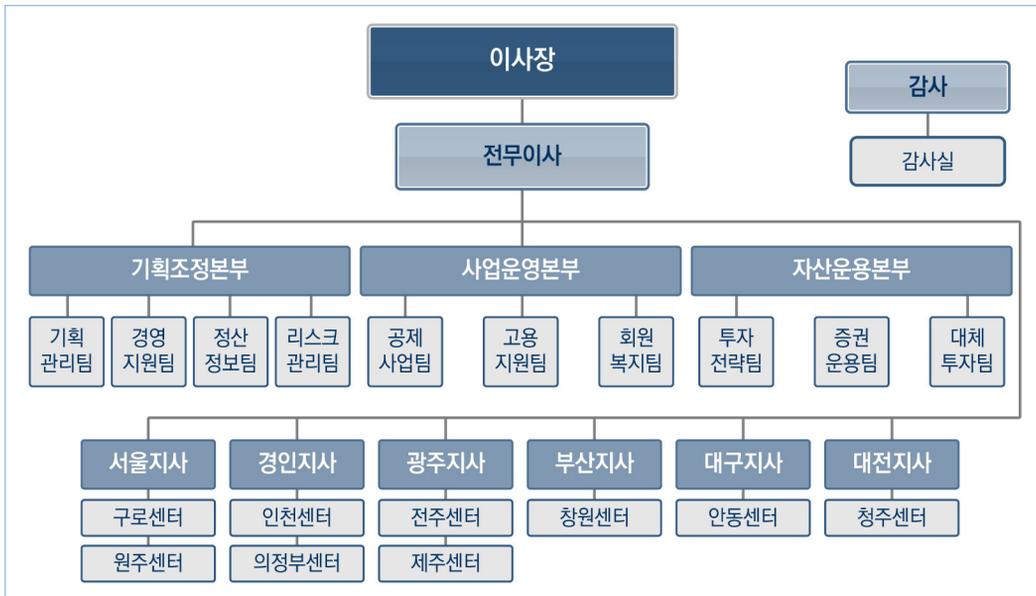
2017년에는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였다. 이것은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국무회의, '15.8.4)」에 따라 확대된 공제회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서별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지원기능과 사업기능을 묶어 2개 본부를 신설하고 자산운용실은 본부로 승격시켜, 기존 5부 2실 3팀에서 3본부 1실 10팀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본회에서 수행하던 일선 고용복지업무(훈련·취업서비스 안내 및 위탁기관 지도, 학자금·보조금 지급 업무 등)를 지사로 이관하여, 민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다원화하였다.

기획조정본부에는 기획관리팀, 경영지원팀, 전산정보팀, 리스크관리팀, 사업운영본부에는 공제사업팀, 고용지원팀, 회원복지팀, 자산운용본부에는 투자전략팀, 증권운용팀, 대체투자팀이 배치되었다. 소속기관은 6지사(서울, 경인, 광주, 부산, 대구, 대전)와 9센터(구로, 원주, 인천, 의정부, 전주, 제주, 창원, 안동, 청주)로 편제됐다. 그중 안동센터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17.1월 개소되었다.

총12명을 증원했는데, 민원업무 증가, 퇴직공제 관리 강화, 정책추진 등 건설근로자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사인력 4명을 늘렸고, 부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분야에 2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신규사업인 건설근로자 대부사업을 위해 6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그 결과 정원은 116명에서 128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 조직도(2017. 1. 1 시행) : 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



〈표 3〉 직급별 정원

(17.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타
정원	128	3	5	9	14	22	32	33	10	-
현원	118	3	4	9	13	21	26	28	13	1
과부족	-	-	△1	-	△1	△1	△6	△5	3	1

4. 회계

공제회의 회계는 부금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외부수탁회계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하루 일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4,200원 중 4,000원은 부금회계로서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으로 전액 적립되어 관리·지급되고, 200원은 공제회의 기관운영비 등인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적립·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는 2006년 1월 퇴직공제금 신고 납부방식의 변경(증지부착방식→전산신고방식)으로 인한 미회수공제증지 판매대금과 그 운영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부금회계에서 분리되었다. 외부수탁사업회계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는 정부 위탁사업(훈련, 취업지원) 관리를 위해 별도로 구분하는 회계다.

가. 부금회계

부금회계 수입은 705,048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157,499백만 원 증가했고, 지출은 총 280,031백만 원인데, 퇴직공제금 264,882백만 원, 특별퇴직공제금 1,789백만 원, 대부금 13,359백만 원 등이었다.

수입 측면에서 공제부금은 예산대비 104,631백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민간공사의 증가, 성실이행 캠페인을 통한 인식의 확산, 누락방지 대책 추진을 통한 사업장 관리강화 등의 성과였고, 지출 측면에서도 퇴직공제금이 예산대비 4,782백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법정 고지와 고령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청구 안내의 결과였다.

〈표 4〉 2017년도 부금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수입	계	547,549	705,048	157,499
	공제부금	471,162	575,793	104,631
	이자수입 등	76,387	129,255	52,868
지출	계	284,591	280,031	△4,560
	퇴직공제금	260,100	264,882	4,782
	특별퇴직공제금	1,690	1,789	99
	대부금	22,800	13,359	△9,441
	일반관리비	1	1	-
지불준비금		262,958	425,017	162,059

나. 특별회계

특별회계 수입은 이자수입 8,378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3,255백만 원 증가했고, 지출은 퇴직공제금 616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469백만 원 감소했다.

이자수입의 증가 요인은 주식 인덱스 운용으로의 신속한 전환 등이었고, 지출감소 요인은 복지수첩의 반납 감소였다.

〈표 5〉 2017년도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수입	계	5,123	8,378	3,255
	이자수입	5,123	8,378	3,255
지출	계	1,085	616	△469
	퇴직공제금	1,085	616	△469
지불준비금		4,038	7,762	3,724

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수입은 28,785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4,275백만 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22,764백만 원으로 사업비 6,583백만 원, 인건비 10,026백만 원, 경상운영비 6,155백만 원이며, 예산대비 1,746백만 원 감소했다. 부가금은 적용단가 인상효과¹ 반영 등으로 5,700백만 원 증가했고, 잡수입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108백만 원 증가했다.

¹ '12.4월에 인상된 부가금 200원의 적용률은 '16년에는 95.2% 그리고 '17년에는 97.5%로 추정된다.

〈표 6〉 2017년도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수입	계	24,510	28,785	5,808
	부 가 금	22,726	28,426	5,700
	잡 수 입	251	359	108
	재산조성적립금 ¹⁾	1,533	-	△1,533
지출	계	24,510	22,764	△1,746
	사 업 비 ²⁾	7,168	6,583	△585
	인 건 비 ³⁾	10,553	10,026	△527
	경상운영비	6,294	6,155	△139
	예 비 비	495	-	△495

주: 1) 재산조성적립금은 예산편성은 하였지만, 부가금 증가 등으로 미집행 되어 증감액 산정 시 제외

2) 전자카드 기능고도화, 정보보안시스템구축 등 용역입찰 시 예산절감 등

3) 정원대비 현원 축소 운영(116명 → 106명) 등으로 불용 발생

라. 외부수탁사업회계

외부수탁사업회계의 총수입은 고용보험기금 10,845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24백만 원 증가(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잡수입 증가)했고, 총지출은 10,466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355백만 원이 감소했다.

〈표 7〉 2017년도 외부수탁사업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수입	계	10,821	10,845	24
	훈련 위탁사업비	7,419	7,419	-
	잡수입	1	22	21
	취업 위탁사업비	3,400	3,400	-
	잡수입	1	4	3
지출	계	10,821	10,466	△355
	훈련 위탁사업비	7,420	7,110	△310
	취업 위탁사업비	3,401	3,356	△45

제2장

주요사업

공제회의 사업은 크게 공제부금 수납, 공제부금 운용,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복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 수납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으로부터 피공제자인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수납하는 과정이고, 공제부금 운용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을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된 공제부금을 불리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돈을 활용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거나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피공제자별로 적립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해야 하고,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고용·복지 서비스는 건설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여주는 기능훈련사업, 무료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개하는 취업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 사업 개요



첫째, 퇴직공제사업이란 퇴직공제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말한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사업주는 소속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매월 근로한 일수만큼 근로내역 신고와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을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98년에 시행된 퇴직공제제도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건설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고용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실시와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무료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정부위탁사업을 통한 고용보험기금이다.

셋째, 복지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기 진작, 직업이미지 제고 등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생활자금 대부,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장학지원금 지급,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결혼·출산보조금 지급, 가족 힐링캠프,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자산운용사업은 퇴직공제금 지급, 복지증진 사업,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수납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을 효과적으로 증식시키는 사업이다.



PART

02

주요사업 현황

제1부 퇴직공제사업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제3장 추진현황

제2부 고용지원사업

제1장 기능향상훈련

제2장 무료취업지원

제3장 관련 사업

제3부 복지지원사업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제4부 자산운용사업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제3장 추진현황

제 1 장

사업 개요

퇴직공제사업은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적립금액 등의 관리를 통해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을 지급하는 공제회의 핵심 사업이다. 공제가입 사업장 및 피공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1. 가입 범위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확대되어 왔는데, 2017년 현재 공공공사 3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 원 이상이다.

〈표 8〉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공사종류	1998.1.1	2001.9.1	2004.1.1	2008.1.1	2010.9.30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정부출자·출연법인 발주공사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시행공사	-	-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오피스텔공사	500호 이상	500호 이상	300호 이상	200호 이상	200호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	-	-	100억 원 이상

주: 1.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의2(2003.6.25)의 개정으로 2003. 7. 1 이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포함됨.

2. 공사에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피공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다. 적용제외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

2. 퇴직공제 이행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로부터 당연 가입되고,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공제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당해 가입공사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적립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부금은 발주자가 부담(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하는데, 소요비용은 '직접노무비×2.3%'(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15-610호, '15.8.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제부금은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비에 쓰이는 부가금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은 네 차례 인상되었는데, 공제부금액의 인상이 세 차례 그리고 부가금의 인상이 한 차례 있었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째 동결됐던 퇴직공제금이 2017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이며 2018년 이후 신규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되었다. 즉,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퇴직공제제도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2,100원이었고, 2007년에는 3,100원, 2008년부터 4,100원, 2012년 4월부터 2017년까지 4,200원, 2018년부터 5,000원이다.

3.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은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건설근로자다.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과 매월 복리로 적립된 이자(공제회가 매년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고시)의 합계액이다.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계는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7년 이상 30만 원, 10년 이상 50만 원, 15년 이상 100만 원이다.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2017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퇴직공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퇴직공제금 지급의 편의성 증진 및 안내 강화, 피공제자 정보 관리 및 공제부금 수납처리 강화 등이다.

1.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가. 공사 이행단계별 퇴직공제 관리체계 개선 및 제도이행 촉진

2017년에는 공제부금 납부기반 강화 및 제도이행 촉진을 위해 건설현장 생애주기(Life Cycle)별 퇴직공제 관리체계 마련과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가입단계에서는 당인가입대상 조사 연계시스템을 강화했다.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파악을 위한 자료를 일부 수기 처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타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건설공사 발주정보²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퇴직공제 가입 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성립신고 관련 서면을 접수하면 공제회에서 수기로 전산입력 처리하던 퇴직공제 관련 민원을, 사업주가 직접 성립신고 또는 정보수정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을 구축(‘17.12)하였으며, 실시간으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신고·납부단계에서는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이행촉진방안을 시행하였다. 퇴직공제 근로내역 축소신고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민원접수를 활성화하고자, 민원접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방문접수 외에 우편이나 팩스를 추가했고, 민원신청서와 함께

²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G2B),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제출하여야 할 근로사실 증명서류로서 기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와 노무비지급명세서의 2종 이외에,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근로소득자용), 근로계약서 및 통장입금내역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년 430건 접수 대비 85% 증가한 797건이 접수됐으며, 해소율 97%(775건)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접속량의 증가에 대응해 고객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립일수 조회 간편인증기능을 도입하였고, 업체명이나 공사명으로도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기존 퇴직공제 위주의 안내에서 고용·복지 서비스 안내를 추가하는 등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회 모바일 앱(APP) 다운로드 수는 전년 39,581건 대비 83% 증가한 72,422건으로 나타났으며, '17년 접속량은 116만 건으로 조회되었다.

이행부진사업장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의 관리기준을 기존 미납 개월수 3개월 이상 또는 미납 공제부금 3백만 원 이상에서 미납 개월수 3개월 이상 또는 미납 공제부금 1백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집중 독려한 결과, 미납사업장 1,661개소의 미납금액 146억 원을 해소하였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을 포함한 출장이행 지도 956회를 통해 미납 공제부금 238억 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국 주요 공동주택 현장 18개소에서 퇴직공제 누락방지를 위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하여 간담회 및 건설근로자 홍보에 3,100명이 참여하였다.

셋째, 준공 단계에서는 미납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점검도 체계화했다. 미납사업장 법적조치 대상을 기존 준공 미납사업장 외에 준공예정공사 중 미납 공제부금 5천만 원 이상 사업장을 추가하여 강제집행을 강화하였으며, 건설사업주의 부실징후를 사전파악하기 위하여 '16.2월 도입한 기업 경영상태 상시분석 시스템을 공제회 각 지사·센터로 확대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였다. 또한 45,353개 업체의 경영상태 및 법인 등기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이행지도 시 활용할 수 있었다.

나. 퇴직공제 이행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업무협업 강화

퇴직공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퇴직공제 이행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퇴직공제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업무개선 시 고객의 제안을 반영하였다.

첫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협력증진을 통해 퇴직공제제도 이행 기반을 확충했다. (재)건설산업정보센터와 '17.4월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퇴직공제정보망을 직접 연계하여 공사 발주정보 및 공제부금 납부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7.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사업주 대상 특화교육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용·산업안전·퇴직공제 등 원스톱 고용·노동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17.12월 강원도청과 지자체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퇴직공제 업무시스템 연계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퇴직공제 신고내역과 노무비내역의 비교를 통한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공제회 각 지사에서 발주기관이나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개별 방문하거나 문서 및 전화로 제도를 안내하거나 이행협조를 요청하던 것을, 본회에서 일괄 수행하도록 해 전달체계를 효율화했다. 퇴직공제 성립신고 안내 및 공제제도 가입 결과 통보를 위해 단순·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사의 우편업무를 효율적인 우편DM발송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량 경감을 꾀하였다.

둘째, 지역·단체 특성에 맞게 각종 퇴직공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식과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노무법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 교육을 34회에 걸쳐 실시하여 총 1,614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역단위 유관기관 협의체 간담회를 12회 개최하여 각 지역별로 사회이슈에 대한 공문의 장을 마련하였다. 앞서 언급한 근로내역 축소신고 민원접수 확대, 모바일 서비스 기능개선 및 각종 고용·복지서비스 홍보 등은 협의체 간담회에서 노동단체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화 추진

2017년에는 전자카드 시범사업 중 36개 시범사업장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전자카드제도가 정식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주력하였다.

첫째,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와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장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사업장 방문교육,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전자카드 사용을 적극 홍보하였다. 그 결과, 카드발급 등록인원(48,093명)이 전체 등록인원(전자인력관리 시스템 등록 전체 근로자 61,333명)의 78.4%를 차지하였다.

〈표 9〉 전자인력관리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매, 명)

공사수	단말기	카드 발급	등록현황				
			계	전자카드		지문	
				명	비율	명	비율
36개소	169대	48,093	61,333	48,093	78.4%	13,240	21.6%

전체적으로 2017년 12월까지 전자인력관리 운영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전자카드 사용률은 90.8%(전체 출력인원 1,014,519명 대비 시스템 집계 연인원의 누계는 920,832명)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 연도별 전자인력관리 사용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출력현황		
	출력일수 (연인원)	시스템 집계일수	사용률
계	1,014,519	920,832	90.8
2015	89,096	72,626	81.5
2016	313,272	269,111	85.9
2017	612,151	579,095	94.6

또한, 2017년 12월 현재 전자카드 및 전용 통장(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KEB하나은행)) 발급 매수(좌수)는 전자카드 48,093매, 통장 42,954좌이며, 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건설사랑통장)의 1인당 평균 계좌잔고는 263천 원으로, 2015년 9월의 39천 원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자카드의 활용도가 근로내역신고 및 출력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 측면에서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 전자카드 발급 및 계좌 현황

(17.12.31 기준)

구분	건설사랑카드 (매수)	건설사랑통장			급여계좌 확인(좌수)
		발급좌수	계좌잔액	1인당 계좌잔액	
KEB하나은행	42,324	42,954	11,305백만 원	263천 원	1,276
신한카드	5,769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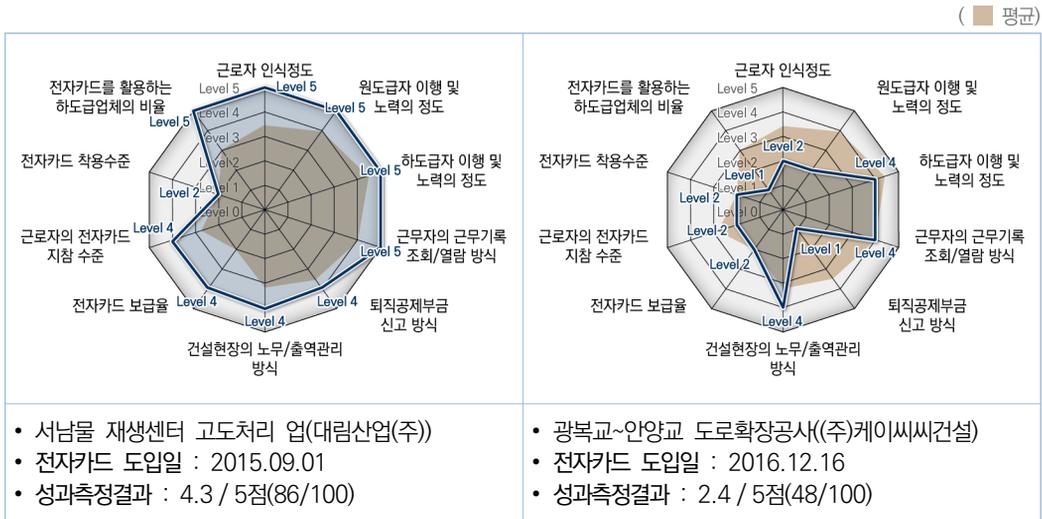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자인력관리 사용을 실적 확인 자료 참조

둘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36개 사업장의 성과측정 결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누락 없는 퇴직공제금 적립, 사업주 입장에서의 인력관리 간소화, 발주자 입장에서의 안전 및 노무관리 수준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현장관리자의 사업 참여의지가 강할수록 카드 발급 및 지참 수준도 함께 높아졌으며, 근로자의 카드 지참 및 카드를 이용한 출력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시범사업 성과측정 결과 최고-최저 사업장 현황



더불어 건설산업에서의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회적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업 참여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장 당 설치 단말기가 적을수록 비용보다 편익이 크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같은 수준이 1임을 고려할 때, 사업 참여율이나 단말기 설치 대수와 관계없이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단말기 설치대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결과

평균 단말기 임대 설치 대수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대	2.72	2.80	3.33	3.43	3.61	3.75	3.91	4.21	4.51	4.63
4대	1.75	1.78	2.05	2.11	2.20	2.27	2.35	2.51	2.67	2.74
6대	1.41	1.43	1.61	1.65	1.71	1.76	1.81	1.92	2.03	2.07
8대	1.23	1.25	1.39	1.41	1.46	1.50	1.54	1.62	1.70	1.74
10대	1.13	1.14	1.25	1.27	1.31	1.34	1.37	1.44	1.50	1.53

※ (비용) 단말기, 카드발급 및 발송, 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인건비 포함) 등
 ※ (편익) 퇴직공제 적립금 증가, 신고내역 확인비용 절감, 체불임금의 빠른 해결 및 감소, 안전사고 방지, 단말기 시장 창출 등

셋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추진방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제도화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도 시행방법(단계적 시행, 전면적 시행), 비용부담 주체, 기타 관련 제도와의 연계 방안, 과거 유사 제도 사례 검토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로서 임금체불 방지, 근로자 복지 향상, 안전사고 문제 등의 해소 등을 거론하며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을 통해 퇴직공제 누락 및 체불 등 고용분쟁의 해결과 근로자의 숙련도 및 건설업 품질 향상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근로자의 정확한 근무이력 파악으로 종합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의 기반도 마련하였다. 2018년도에는 전담조직(전자카드제 사업 추진단)을 설치해 관계법령 개정 대비 후속조치 준비,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관련 정책 지원, 전자카드 적용사업장 확대 및 관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호환성 강화,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범용성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퇴직공제금 지급의 편의성 증진 및 안내 강화

가. 고객 만족형 업무 개선

퇴직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급업무를 지사로 이관하고, 지급 절차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평균 지급소요일을 전년 대비 1.81일 단축하여 평균 2.5일 만에 지급할 수 있었다. 또한, 해피콜(HappyCall)서비스를 통해 퇴직공제금 지급자로부터 접수된 고객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부상·질병, 농업·어업, 출국사유 청구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했다. 퇴직공제금 지급 후에는 지급사실 안내 문자 발송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나. 수급권 보호 강화를 통한 퇴직공제금 청구 사각지대 해소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을 갖추었거나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홍보나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첫째,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망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적시에 지급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력을 통해 연 2회 피공제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였다. 신규 사망확인자와 소멸시효 임박자를 구분하여 안내해 501명에게 12억 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둘째,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갖추고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청구가능사실과 방법을 안내하였다.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간 안내를 받지 못했던 근로자와 기 안

내자 중 일정기간 동안 근로내역이 없는 근로자 64,549명에게 안내하여 그들 중 13,464명에게 259억 원을 지급하였다.

셋째, 고지제도 도입 이전 적립내역이 있는 근로자 46만 명에게 적립내역을 안내했고, 주소 및 전화번호의 정보가 불확실한 5만 명의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 재고지하였다.

넷째, 복지수첩 미반납자에 대한 반납 안내를 강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했다. 수급요건 충족자 고지 시 복지수첩에 대한 안내와 함께 미반납된 복지수첩 수를 기재하였고, 복지수첩과 동일한 디자인의 리플렛을 제작하여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상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대면상담 및 유선상담 그리고 퇴직공제전산망 팝업 등 기존의 안내 방식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발송, 포스터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을 추가했다.

다섯째, 신용불량자인 피공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존에 2개였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발급기관을 21개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발급 편의성이 증진되어 2016년에 3,001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3,927건으로 늘어 전년 동기 대비 이용실적이 약 30% 증가하였다.

3. 피공제자 정보관리 및 공제부금 수납처리 강화

피공제자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제부금의 신고·납부·반환과 관련된 사업주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첫째,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했다. 퇴직공제전산망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화면캡처 기능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써, 출력물에 대한 위변조 및 화면캡처 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였다.

둘째, 공제부금 착오납부에 따른 반환·충당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착오납부 공제부금 반환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기존에 공제회 본회에 국한되었던 반환신청 접수 및 처리권한을 지사(센터)로 확대하는 한편,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지사의 업무량을 경감시켰다. 또한, 기존 본회에서만 통보하던 반환처리 결과 역시 관할 지사에서 별도로 안내하도록 해, 사업주 및 발주기관에 대한 통보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업무혼선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대납 프로그램 및 적립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공제가입사업주의 미납 공제부금 수납액 34억 원을 적립 처리하였다. 원·하도급간 미납 공제부금 대납 실적은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262건(13억 원), 2016년에는 458건(23억 원), 2017년에는 744건(3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제3장

추진현황

1. 퇴직공제 가입 현황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신규 가입한 공사는 27,412개소로 전년대비 14.1%(3,381개소) 증가하였으나, 공사금액과 공제부금 반영액은 각각 4.3%(72,032억 원), 4.1%(307억 원) 감소하였다. 신규 가입공사의 증가는 공공공사와 임의가입공사가 전년대비 각각 3,170개소(14.7%), 195개소(23.2%)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사금액과 공제부금 반영액의 전년대비 감소는 공공공사와 임의가입공사 중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의 가입이 24,391개소로 전년대비 16.2%(3,402건) 늘었으며, 전체 신규가입공사의 89%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는 미가입공사가 8개소(0.03%)였으나 2017년에는 6개소(0.02%)로 2개소가 감소해, 퇴직공제 미가입률은 0.01%p 감소했다. 전체 신규가입공사 대비 미반영공사의 건수는 전년대비 19개소(1.3%) 늘었으나, 비중은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17.12.31 기준, 단위: 개소, 억 원, %)

구분		2016	2017	증감	증감률
신규 가입	계	24,031	27,412	3,381	14.1
	공공공사	21,581	24,751	3,170	14.7
	민간공사	1,611	1,627	16	1.0
	임의	839	1,034	195	23.2
	공사금액	1,672,372	1,600,340	△72,032	△4.3
	공제부금 반영액	7,406	7,099	△307	△4.1
미가입공사 (미가입률)	계	8	6	△2	△25.0
	비율	0.03%	0.02%	△0.01%p	△36.0
원가 미반영공사 (미반영률)	계	1,467	1,486	19	1.3
	비율	6.1%	5.4%	△0.7%p	△11.5

2.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

2017년 공제부금 납부액은 6,042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928억 원(18.1%) 증가했다. 신고 받은 근로일수는 총 145,338천일로 전년대비 22,370천일(18.2%) 늘었다. 2016년에 비해 공공공사의 실적은 약간 줄고, 민간공사의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임의가입 역시 전년대비 공제부금은 26.6%, 근로일수는 26.8%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기본적으로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의 증가에 기인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제회 지사 및 현장 중심으로 퇴직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된다.

〈표 14〉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 현황

('17.12.31 기준, 단위: 천 일, 억 원, %)

구분		2016	2017	증감	증감률
공제부금납부	계	5,114	6,042	928	18.1
	공공	1,882	1,776	△106	△5.6
	민간	3,153	4,166	1,013	32.1
	임의	79	100	21	26.6
근로일수 신고	계	122,968	145,338	22,370	18.2
	공공	44,926	42,617	△2,309	△5.1
	민간	76,151	100,324	24,173	31.7
	임의	1,891	2,397	506	26.8

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2017년 말 현재 퇴직공제 가입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는 5,211천 명으로서, 전년 대비 365천 명이 늘어 7.5% 증가하였다. 신규가입 근로자는 46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8%(74천 명) 증가했고, 퇴직 근로자는 100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3%(14천 명) 증가했다.

〈표 15〉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17.12.31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증감	증감률
피공제자수 누계	4,846	5,211	365	7.5
신규 피공제자수	393	467	74	18.8
퇴직 피공제자수	86	100	14	16.3

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2017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건수는 100,318건이고, 지급액은 2,644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지급건수는 16.0% 증가했고, 지급액은 19.8% 늘었다.

그중 특별퇴직공제금은 4,987건에 대해 18억 원을 지급하였다. 전년 대비 지급건수가 35.6% 늘었고, 지급액은 38.5% 증가했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적립자를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7년 이상자에게는 30만 원, 10년 이상자에게는 50만 원, 15년 이상자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표 16〉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7.12.31 기준,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16	2017	증감	증감률
퇴직공제금	지급건수	86,457	100,318	13,861	16.0
	지 급 액	2,207	2,644	437	19.8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건수	3,679	4,987	1,308	35.6
	지 급 액	13	18	5	38.5

제 1 장

기능향상훈련

1. 사업 개요

고용지원 사업 중 기능향상훈련이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취업능력을 배양하려는 사업이다. 일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 및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자 했다. 현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건축시공 직종을 훈련직종으로 선정했고, 훈련과정은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했으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했다.

기능향상훈련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서, 고용보험에 건설현장 근로내역이 있는 자,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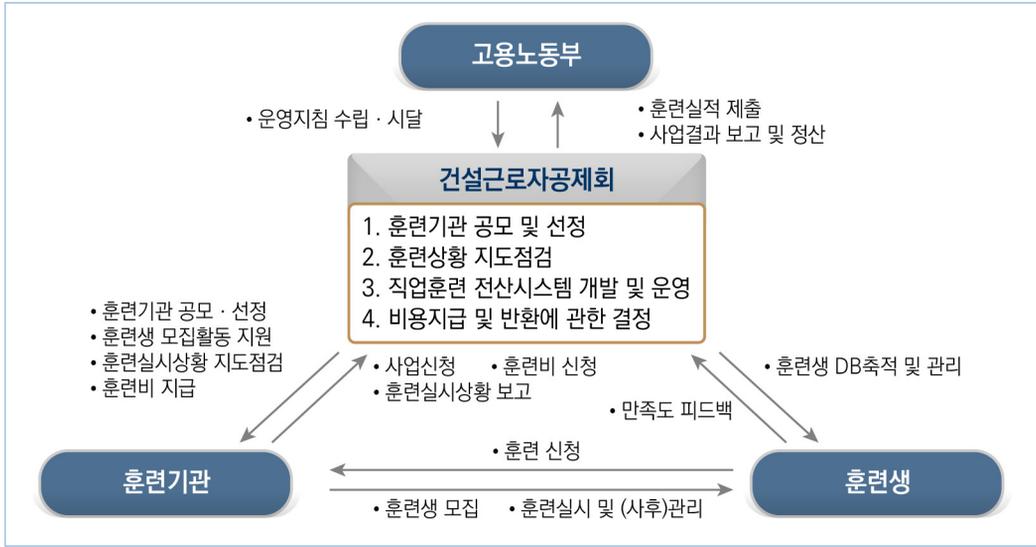
사업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데, 고용노동부가 공제회에 위탁하면 공제회가 민간 훈련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재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시행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위탁계약 체결 및 선정된 훈련기관의 재위탁 승인, 분기별 예산 배정, 매월 추진실적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제회는 약정체결, 훈련 목표인원의 달성, 취업률 향상 등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위탁사업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 공모·선정, 훈련생 모집활동 지원, 훈련생 출결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훈련 실시상황 지도점검, 훈련비 등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결정, 체계적인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한다.

훈련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훈련약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안전교육 및 철저한 과정관리 등을 통해 훈련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무료취업지원센터와 협업 등을 통해 훈련수료자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그림 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2. 주요 추진 사업

2017년에는 기능향상 훈련과정 다양화 및 훈련생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숙련인력 및 다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본과정을 단일직종 및 혼합직종으로 구분해 운영하였고, 별도의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수준별로 맞춤 훈련을 실시했다. 기본과정(단일 및 혼합)은 공급부족 규모가 큰 12개 직종으로 하되 직무연관성이 크고 현장수요가 많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나의 과정에서 두 가지 직종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적+타일’, ‘배관+일반용접’, ‘건축(형틀)+철근’ 등의 혼합과정을 운영했다. 공급이 부족한 건축(일반·형틀)목공, 미장, 조적, 타일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심화과정을 운영했다.

둘째, 연간 공백 없이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적기인 동절기에 훈련을 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훈련과정 공모를 2016년 11월에 실시하고 12월 말까지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정함으로써, 2017년 1월부터 공백 없는 안정적인 훈련공급체계를 마련하였다.

셋째, 기능향상 훈련시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포함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였다.

넷째, 취업률 향상을 위해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였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훈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확인방법을 개선하였다.

3. 추진현황

가.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고용노동부 위탁훈련에는 총 51,353명이 참여하고 40,966명이 수료해 83.7%의 수료율을 기록했다. 참여한 훈련인원과 수료인원은 2009년에 11,297명과 8,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료율과 취업률은 2017년에 각각 93.5%과 71.5%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취업률은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훈련 취업률인 2013년의 45.5%, 2014년의 48.6%, 2015년의 52.6%, 2016년의 48.8% 등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17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표 17〉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17.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훈련기간	훈련인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2009	'09.07~'09.12	11,297	8,894	78.7	2,100	38.4
2010	'10.02~'10.12	6,041	3,815	63.2	2,538	50.8
2013	'13.05~'14.01	4,670	3,608	82.2	1,593	41.1
2014	'14.03~'15.01	4,703	3,670	86.3	2,312	56.1
2015	'15.03~'15.12	7,792	6,478	89.7	3,453	49.0
2016	'16.03~'17.01	8,444	7,184	90.9	4,289	55.5
2017	'17.01~'17.12	8,406	7,317	93.5	5,645	71.5

주: '11년, '12년은 위탁훈련 미실시(고용노동부 사업예산 미편성), 조기취업자수는 생략

수료율(%) = 수료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취업률(%) = (취업자+조기취업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 특성별 훈련 인원 분포의 변화 중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매년 타일과 건축목공이 각각 1위와 2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운영된 혼합과정은 '조적+타일'의 경우 연평균 11.0%로 꽤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배관+일반용접' 등의 경우에는 훈련인원수가 적었다.

〈표 18〉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17.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건축 목공	도장	미장	방수	배관	용접	조적	철근	타일	조적 +타일	형틀 +철근	배관 +용접
2013	4,670 (100.0)	1,229 (26.3)	139 (3.0)	404 (8.7)	76 (1.6)	126 (2.7)	301 (6.4)	151 (3.2)	154 (3.3)	2,090 (44.8)	-	-	-
2014	4,703 (100.0)	1,180 (25.1)	395 (8.4)	215 (4.6)	88 (1.9)	422 (9.0)	640 (13.6)	248 (5.3)	162 (3.4)	1,353 (28.8)	-	-	-
2015	7,792 (100.0)	2,145 (27.6)	539 (6.9)	669 (8.6)	-	425 (5.5)	719 (9.3)	870 (11.2)	103 (1.3)	2,322 (29.8)	-	-	-
2016	8,444 (100.0)	2,240 (26.5)	486 (5.8)	664 (7.9)	174 (2.1)	527 (6.2)	397 (4.7)	439 (5.2)	-	2,277 (27.0)	1,033 (12.2)	147 (1.7)	60 (0.7)
2017	8,406 (100.0)	1,925 (22.9)	579 (6.9)	383 (4.6)	269 (3.2)	492 (5.9)	703 (8.4)	213 (2.5)	165 (2.0)	2,801 (33.3)	823 (9.8)	-	53 (0.6)

과정별 분포의 경우 대체로 주간 과정이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데 2017년에는 주간 과정의 비중이 90.3%까지 높아졌다.

〈표 19〉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17.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주간	야간
2013	4,670 (100.0)	3,876 (83.0)	794 (17.0)
2014	4,703 (100.0)	3,570 (75.9)	1,133 (24.1)
2015	7,792 (100.0)	6,565 (84.3)	1,227 (15.7)
2016	8,444 (100.0)	7,532 (89.2)	912 (10.8)
2017	8,406 (100.0)	7,591 (90.3)	815 (9.7)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50대와 40대가 각각 1위와 2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5년에는 60대가 2위를 차지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주목할 것은 30대 이하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으로서 2013년에 15.8%에서 2017년에는 25.0%로 증가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동 기간 중 3.5%에서 10.6%로 급증했다.

〈표 2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17.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3	4,670 (100.0)	28 (0.6)	162 (3.5)	547 (11.7)	1,234 (26.4)	1,915 (41.0)	784 (16.8)
2014	4,703 (100.0)	14 (0.3)	193 (4.1)	529 (11.2)	1,229 (26.1)	1,735 (36.9)	1,003 (21.3)
2015	7,792 (100.0)	45 (0.6)	404 (5.2)	823 (10.6)	1,784 (22.9)	2,907 (37.3)	1,829 (23.5)
2016	8,444 (100.0)	80 (1.0)	656 (7.8)	1,032 (12.2)	1,826 (21.6)	3,322 (39.3)	1,528 (18.1)
2017	8,406 (100.0)	172 (2.0)	889 (10.6)	1,041 (12.4)	1,812 (21.6)	3,139 (37.3)	1,353 (16.1)

성별 분포의 경우 해가 거듭되면서 남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에는 79.8%이던 것이 2017년에는 88.0%로 높아졌다.

〈표 2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17.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3	4,670 (100.0)	3,725 (79.8)	945 (20.2)
2014	4,703 (100.0)	4,026 (85.6)	677 (14.4)
2015	7,792 (100.0)	6,699 (86.0)	1,093 (14.0)
2016	8,444 (100.0)	7,358 (87.1)	1,086 (12.9)
2017	8,406 (100.0)	7,401 (88.0)	1,005 (12.0)

참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해가 거듭되면서 경력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2013년에는 59.9%이던 것이 2017년에는 87.1%로 높아졌다.

〈표 2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참여유형별

(17.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경력자	구직자
2013	4,670 (100.0)	2,799 (59.9)	1,871 (40.1)
2014	4,703 (100.0)	2,951 (62.7)	1,752 (37.3)
2015	7,792 (100.0)	5,619 (72.1)	2,173 (27.9)
2016	8,444 (100.0)	7,071 (83.7)	1,373 (16.3)
2017	8,406 (100.0)	7,322 (87.1)	1,084 (12.9)

나. 공제회 자체 동절기 기능향상 훈련

공제회 자체 훈련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1~2월)를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으나, 정부위탁 훈련이 매년 3월(공모 및 선정)에 실시하여 훈련의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더 컸다. 2017년에는 이러한 정부위탁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6년 11월부터 공모를 실시하여 훈련기관과 과정을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동절기에도 공백기 없이 2017년 1월부터 연간 상시 운영하였다. 따라서 공제회 자체 동절기 기능향상훈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공제회의 자체 동절기 기능향상 훈련에는 총 4,690명이 참여하고 3,453명이 수료해 73.6%의 수료율을 기록했다. 참여한 훈련인원과 수료인원은 대체로 2014년에 1,228명과 1,0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료율도 2014년에 81.8%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률은 2011년에 72.1%로 가장 높았다. 2016년의 경우 수료율은 73.6%로 중간 정도 수준을 유지했으나, 취업률은 39.9%로 가장 낮았다.

〈표 23〉 공제회 자체 동절기 기능향상훈련 추진 실적

(’17.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훈련기간	훈련인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2010	’10.08~’11.02	611	458	74.9	349	60.2
2011	’11.01~’11.12	836	519	62.1	541	72.1
2012	’12.02~’13.01	1,249	923	73.9	711	51.0
2013	’13.02~’13.04	327	225	68.8	182	64.0
2014	’14.12~’15.03	1,228	1,005	81.8	482	55.0
2016	’16.02~’16.03	439	323	73.6	141	39.9

주: ’15년은 ’14년도 예산으로 2014.12.16.~2015.03.27.까지 자체훈련 실시

제2장

무료취업지원

1. 사업 개요

고용지원사업 중 무료취업지원이란 건설현장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와 건설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무료로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2016년 8월에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전산망인 '건설일드림넷'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른 취업정보 관련 사이트와 달리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관련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2017년 2월에는 건설일드림넷의 '모바일 앱'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주요기능으로서 현재 위치에서 취업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개인맞춤형 일자리 PUSH 알림 서비스 기능이 담겨져 있다.

2. 주요 추진 사업

2017년도에는 취업지원 모바일 앱을 구축('17.2월)하여 신속한 맞춤형 채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취업지원센터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관기관(LH, 안전보건공단, 훈련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구인·구직 개척을 강화하고, 홍보 방법 다각화를 통해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노력

1)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모바일 앱(건설일드림넷) 구축(2017)

공제회는 2017년 2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모바일 앱 ‘건설일드림넷’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 앱은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와 기능인력이 필요한 사업주가 서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구축한 것이다. 이전에는 건설근로자나 사업주가 구인·구직신청, 무료알선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건설근로자취업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으나, 모바일 앱의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일자리와 기능인력에 대한 정보를 찾고 구인·구직신청 및 알선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보다 나은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에는 직업상담 기법, 취업알선 노하우 등 취업지원센터 전담직원의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첫째,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해 취업센터의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둘째, 위탁사업비 정산 담당자 교육을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셋째, 취업지원센터 직원 워크숍, 취업지원센터장 간담회 등을 통해 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했다.



직무능력향상교육



취업지원센터직원 워크숍

3)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함께 건설일드림넷 모바일 앱 기능개선(LH 전용 구인정보 제공 등)과 건설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사업 현장설명회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LH 지역본부 권역별로 취업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구인개척 활동을 강화하였다.

둘째, 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통해 전국 기초안전교육장(101개소)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구직개척 활동을 강화하였다.

셋째, 건설근로자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제회 지사, 기능향상훈련기관, 취업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운영하였다.

넷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근로자 대상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4) 취업지원사업 홍보 다양화 추진

공제회는 유관기관 협업 및 합동 홍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첫째, 지역협의체(지사, 훈련기관, 취업지원센터 연계) 개최, 공제회 이동지원센터 전국순회서비스 일정 공유 등을 통해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합동 홍보를 실시하였다.

둘째, 취업지원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LH 건설현장, 전국기초안전교육기관, 지자체 전광판 등에 상영함으로써 사업에 대해 홍보하였다.

셋째, 모바일앱 이벤트,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밴드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3. 추진현황

취업지원 전산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구축·운영, 유관기관(LH, 안전보건공단, 훈련기관, 공인노무사회 등)과의 협업, 홍보 다각화 추진 등을 통해 취업지원사업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취업알선 실적이 2016년도의 약 16만일에서 2017년도에는 약 27만일로 62.9% 증가하였다.

〈표 24〉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17.12.31 기준, 단위: 일, %)

구분	목표 근로일수(A)	추진실적(B)	달성율(B/A)
2015	16,980	39,464	232.4
2016	82,954	164,970	198.9
2017	154,700	268,767	173.7

제3장

관련 사업

1.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및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

정부는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도에 따른 처우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등급제의 핵심은 산업차원에서 현장근로경력, 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등을 종합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숙련도에 따른 기능등급을 설정하며, 그에 상응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에 정부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행근거가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2월에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제도의 도입방안 및 제도시행 시 인센티브 등을 담아 추진의사를 천명하였다. 2018년 8월 현재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이다.

제도 도입에 대비한 사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7년도에 노·사·정 등으로 구성된 공제회 정책자문위원회 및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총 3차례의 논의를 통해 각 기관별로 관리 중인 건설기능인 직종을 매칭하거나 통합하여 60개 직종 통합(안)을 도출하였다.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 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에 검토결과를 제출하였다.

산업차원의 체계적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2016년 9월에 출범한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2017년도에 건설ISC 구성원 간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표성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 ISC(Industry Skill Council) :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협의체

2017년 건설ISC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산업의 기능인력 수급 현황 및 외국인력 현황을 파악해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기능인력 대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전략분야 발굴 조사로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설업 직종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체계적인 건설인력 양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율기획 사업 추진으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보여주고 필요한 훈련 직종과 규모를 제시하는 한편, 기능인력에 대한 훈련 활성화 방안도 제안하였다.

넷째, 건설분야 역량체계(SQF**) 구축 및 일·학습병행제 실시 등 개별사업을 추진했다. 건축시공분야 중 주요 습식직종의 역량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해 건설기능인력의 능력에 대한 통합 인정(안)을 제시하였고, 건설산업의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CS구조엔지니어링 등 5개사)을 대상으로 훈련과정 개발을 지원하였다.

** SQF(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학위, 자격, 직업훈련 이수결과, 현장경력 등을 연계하여 산업분야에서 통용되는 역량평가 인정의 틀

2. 건설고용지수 산정

공제회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한다. 2017년에는 종합건설업체 8,297개사에 대한 '2017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 발표했다(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 산재,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도입됐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산정되는데,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설계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가점 1점)' 분야에는 건설인력 고용지수(0.4점) 이외에 건설안전(0.2~0.4점), 공정거래(0.3~0.4점) 항목도 포함된다.

공제회는 매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 및 고용보험 신고 피보험자수, 임금체불 횟수 등 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각각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업체별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탄력성'(=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기성총액 증감률)을 구한 다음 6등급으로 나누어 0점~0.4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최근 3년간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0.4점까지 감점하여 업체별 최종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지수의 등급이 높을수록 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감소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수의 등급이 낮을수록 고용은 감소하고 임금체불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8,297개사 중 상위 824개사(9.9%)는 1등급(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853개사(10.2%)는 6등급(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건설고용지수 점수별 업체분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4점	0.32점	0.24점	0.16점	0.08점	0점
점수별 업체 수	8,297	824	1,238	2,062	2,077	1,243	853

2017년도의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2016년도의 8,212개소에서 8,297개소로 85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2016년도 0.198점에서 2017년도 0.199점으로 약간 올랐다. 평균 점수가 상승한 원인은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장이 2016년 8,064개소에서 2017년 8,21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은 1~2등급의 업체수 증가율이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16년 대비 '17년 건설고용지수 구간별 업체 현황(0.4만점 기준)

(단위: 개, %)

구분	계	1~2등급	3~4등급	5~6등급
2017	8,297	2,062	4,139	2,096
2016	8,212	2,027	4,092	2,093
증감률	1.04	1.73	1.15	0.14

300억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업 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제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0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탄력성 점수를 적용하는 등 건설고용지수 활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1 장

사업 개요

복지지원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의 개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의 일부를 대부받아 전·월세 보증금, 자녀 결혼자금, 입원·수술비 마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활자금 대부사업은 1차 사업('09.3.2~'12.6.30), 2차 사업('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17년 현재 진행 중)으로 구분되며, 지원범위는 건설근로자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의 최대 50%까지이고, 무이자로 지원된다. 대부기간은 대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고, 상환방법은 일시·분할·조기상환 등이 가능하다.

둘째,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직업특성 상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월 중 가입신청 등을 통해 선정된 근로자 6천 명이고,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상해후유장애, 암진단비, 암수술급여, 암입원급여,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골절진단 등 15개 항목이다.

셋째, 종합건강검진은 건설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높고 근로환경이 열악해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에 착안해 2017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신규사업이다. 검진항목은 일반X선 촬영 및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검진 뿐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 내시경 등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은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정책에 맞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에 시작됐다.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

다. 지원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내역이 신고·적립된 피공제자 중에서 2년 이내에 결혼(혼인신고일 기준) 및 출산(출생신고일 기준)한 경우다. 결혼보조금은 30만 원이고, 출산보조금은 첫째의 경우 10만 원, 둘째의 경우 20만 원, 셋째의 경우 30만 원으로 각각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다섯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은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4년(1,008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적립 근로자 중에서 4년제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로 하였고, 대학생 자녀의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며,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 납부액이 낮은 순서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여섯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종합건강검진과 더불어 2017년에 신규로 발굴하여 시행된 사업으로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실시하였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대출의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금액이다.

일곱째,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근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 및 직업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능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에서 2009년에 발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2차 기본계획 세부 과제의 효과적 추진 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한 것을 당시 국토해양부가 받아들여 2010년에 기념일로 지정했다. 기념일은 '11월 22일'로 정해졌는데, 그 이유는 '11'은 '서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고, '22'는 '허리를 굽혀 앉아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직업훈련교사 등의 개인분야 그리고 퇴직공제 이행우수 사업주 등 단체분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여기에서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2010년 제1회 기념식에서는 2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나, 2011년부터는 훈장 및 포장이 추가되어 인원이 36명으로 늘었다.

여덟째,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는 건설현장의 작업 특성 상 상대적으로 가족여행 기회가 적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족 1인을 동반한 2박 3일의 여행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원대상은 사연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설근로자다. 동 사업이 시작됐던 초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 중 8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 접수하고 노동단체 추천 근로자의 경우 건설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근래에는 사업취지를 살려 공모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연이 담긴 참가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여행 중 공제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근로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고 있다.

아홉째, 2010년부터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직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반인 및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후, 수상작을 모아 찾아가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2017년도에 추진한 복지지원사업의 주안점은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분야별 복지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1.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가.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부사업은 1차('09.3.2~'12.6.30)와 2차('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17년)으로 구분된다. 3차 대부사업은 동절기 일자리 감소와 임시·일용 고용형태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시 시작되었는데, 기존 대부사업의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를 통해 '신청사유'를 선정하여 목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신청 사유에는 ① 자녀 결혼자금 지원, ②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④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주거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 ⑤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한 생활안정 대부의 사유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217건에 대해 16,861백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대부신청 사유는 주택구입·전월세, 입원·수술, 대학생 자녀학자금 순이었다.

〈표 27〉 생활안정 대부 사유별 지급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 백만 원)

구 분	계	자녀결혼	자녀 학자금	입원·수술	주택구입·전월세	파산선고	개인회생
건 수	11,217	531	2,443	3,488	3,519	519	717
(비율)	100	4.7	21.8	31.1	31.4	4.6	6.4
금 액	16,861	1,003	4,093	4,950	5,375	583	857

나. 건설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고령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없어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존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상품(전북은행 체인지업론, 2016년)과 별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만으로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상품(하나은행 새희망홀씨, 2017년)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대환대출상품의 경우 461건(5,058백만 원), 신용대출상품의 경우 232건(1,263백만 원)을 제공하였다.

2. 건설근로자 건강지원

가. 건설근로자 단체상해보험 지원

직업특성 상 위험도가 높아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 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가입 희망신청 등을 통해 피보험자를 선발하여 단체보험에 가입 시키고 골절, 상해,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장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1년에 3,000명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에는 피보험자가 6,000명에 이르고 있다. 7년간의 추진 현황 총계를 살펴보면, 피보험자 32,000명을 가입시켰고 1,608건에 대해 약 2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표 28〉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피보험자	32,000	3,000	5,000	6,000	1,000	5,000	6,000	6,000
보험료	3,885	360	549	600	110	697	839	730
보험기간	-	‘11. 3. 1 ~‘12. 2.29	‘12. 3. 1 ~‘13. 2.28	‘13. 3. 1 ~‘14. 2.28	‘14. 3. 1 ~‘15. 2.28	‘15. 3. 1 ~‘16. 2.29	‘16. 3. 1 ~‘17. 2.28	‘17. 3.31 ~‘18. 3.30
보험금 지급실적	1,657건 (2,516백만 원)	134건 (192백만 원)	266건 (538백만 원)	361건 (743백만 원)	102건 (251백만 원)	293건 (283백만 원)	230건 (304백만 원)	271건 (205백만 원)

나.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산업 특성상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분진·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조기 질병관리의 필요가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17년에 신규로 발굴하여 시행되었다. 전국에 16개 검진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총 958명에게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내시경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했다.

3. 건설근로자 자녀교육 지원

가.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건설근로자의 자녀에게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사업이다.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선발하여 장학지원금을 지급했다. 1인당 금액은 2014년과 2015년에는 2백만 원이었는데, 2016년부터 1인당 금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급인원을 늘렸다. 4년간 지급인원은 총 470명이었고 지급금액은 총 5억 6천만 원이었다.

〈표 29〉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추진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 계	2014	2015	2016	2017
지급인원	470	30	60	160	220
1인당 금액	-	2	2	1	1
총 지급금액	560	60	120	160	220

주: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고등학생 자녀 1,304명을 대상으로 872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자녀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직전 학기에 발생한 대출등록금의 이자 발생액(173명, 1,266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했다. 동 사업은 2017년에 신규로 발굴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동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2017. 3.17)했다.

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금’

동 장학금은 (재)협성문화재단의 재원으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소득수준과 성적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에게 (재)협성문화재단에서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학습보조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총 299명에게 약 1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7년에는 31명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

〈표 30〉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급인원	304	48	63	57	32	29	39	36
1인당 금액	-	등록금 전액			등록금 + 학습보조비(학기당 50만 원)			
총 지급금액	1,563	307	216	231	177	170	232	230

라.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건설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에게 온라인 무료 수강권 2과목(100명) 및 30% 할인쿠폰(100명)을 제공했다. 2017년에는 1,025명이 수강하였고, 2014년부터 총 2,875명이 참여했다.

〈표 31〉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412	29	30	31	32	34	35	36	37	37	37	37	37
2015	578	20	21	21	22	49	58	63	64	65	65	65	65
2016	860	65	41	43	44	67	70	83	86	87	87	87	100
2017	1,025	100	14	64	64	8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수강인원은 매월 수강 중복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4.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내역이 신고·적립된 피공제자 중에서 2년 이내에 결혼(혼인신고일 기준) 및 출산(출생신고일 기준)한 경우다. 결혼보조금은 30만 원이고, 출산보조금은 첫째의 경우 10만 원, 둘째의 경우 20만 원, 셋째의 경우 30만 원으로 각각 1회에 한해 지원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결혼보조금은 1,351명에게 약 4억 원이 지급됐고, 출산보조금은 2,144명에게 약 5억 6천만 원이 지급됐다. 2017년에는 887명에게 약 2억 원이 지급됐다.

〈표 32〉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 추진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종 류						
	예산	계		결혼보조금		출산보조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300	3,495	966.8	1,351	405.3	2,144	561.5
2010	300	28	8.4	8	2.4	20	6.0
2011	30	42	12.6	13	3.9	29	8.7
2012	18	34	10.2	9	2.7	25	7.5
2013	255	850	255.0	232	69.6	618	185.4
2014	127	414	124.2	174	52.2	240	72.0
2015	180	616	180.0	278	83.4	338	96.6
2016	180	624	179.9	278	83.4	346	96.5
2017	210	887	196.5	359	107.7	528	88.8

5.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가.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종합지원 이동상담 버스 2대를 활용하여 주중 매일 새벽인력시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퇴직공제 적립내역 및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2017년에는 새벽인력시장 250개소와 건설현장 404개소에서 총 20,412명의 근로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표 33〉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개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용인원	6,962	9,646	19,782	19,885	19,327	20,412	
방문현장	새벽시장	219	249	471	462	466	250
	건설현장	175	199	380	379	380	404

나.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전국 확대

노무법인 및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생활 속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가 전국의 지사·센터로 확대되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지사·센터에 노무상담사를 배치하여 산재, 임금체불 등의 노무상담을 실시하였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건강상담 및 간단한 건강체크 서비스를 제공해, 전년 대비 약48% 증가한 1,27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34〉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노무	건강(심리)	재무	외국인	취업
2014	158	21(13.3)	81(51.3)	-	46(29.1)	10(6.3)
2015	867	439(50.6)	229(26.4)	22(2.6)	148(17.1)	29(3.3)
2016	854	583(68.3)	132(15.4)	48(5.6)	91(10.7)	-
2017	1,270	666(54.2)	344(27.1)	39(3.1)	202(15.9)	19(1.5)

6. 근로자 자금심 고취

가.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건설기능인은 주택, 공장, 사무실, 병원, 도로, 댐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축 및 기반시설을 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그리고 잦은 산재 등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높았고 사기도 낮았다. 그 결과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은 악화됐고, 젊은 층은 건설기능인으로의 진입을 꺼려 고령화가 심해졌다.

따라서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킬 계기가 필요했고 건설기능인이 자신

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기능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0년에 ‘건설기능인의 날’을 제정했다. 11월 22일을 건설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건설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나. 정부포상 수여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정부포상 수여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직업훈련교사 등의 개인분야와 퇴직공제 이행우수 사업주 등 단체분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2010년 제1회 기념식에서는 2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나, 2011년부터는 훈장 및 포장이 추가됐고, 2017년에는 3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표 35〉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총계	정 부 포 상					장 관 표 창		
	소계	산업 훈장	산업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	271	62	7	7	24	24	90	119
2010	25	6	-	-	3	3	9	10
2011	34	8	1	1	3	3	9	17
2012	36	8	1	1	3	3	12	16
2013	35	8	1	1	3	3	12	15
2014	35	8	1	1	3	3	12	15
2015	35	8	1	1	3	3	12	15
2016	36	8	1	1	3	3	12	16
2017	35	8	1	1	3	3	12	15

다. 가족 힐링캠프 운영

건설현장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가족여행 기회가 적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족 1인을 동반한 2박 3일의 여행기회를 제공했다. 여행 중 공제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도 했으며, 참여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동 사업이 시작됐던 초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 중 8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거나 노동단체 추천 근로자의 경우 건설노조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근래에는 공모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연이 담긴 참가신청을 받아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2017년에는 80명이 가족 힐링캠프에 참가했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8년 동안 참가한 누적 인원은 총 621명이었다.

〈표 36〉 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17.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참가인원	621명	104명	54명	109명	74명	38명	76명	86명	80명
행사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1차) 상해(2차)	일본 규슈 (1차,2차)
인당 지원액	568	482	422	544	528	480	536	647	835

라.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시회 개최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반인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후, 수상작을 모아 찾아가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접수된 사진은 총 2,181건인데 그중에서 149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2017년도에 실시했던 6차례의 사진전시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7〉 사진공모전 추진 현황

(17.12.31 기준, 단위: 건)

구분	총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	2,181	264	183	341	207	240	143	468	335
수상작	149	19	20	17	17	20	19	18	19

〈표 38〉 사진전시회 실시 현황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일정	8.29	8.30	9.12	9.21~22	9.23	11.22
장소	서울시민청	광고갤러리	마로니에공원	건설기술 교육원	여의도 한강공원	건설회관
참여인원	200명 내외	300명 내외	400명 내외	-	-	400명 내외
행사전경						

제 1 장

사업 개요

자산운용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운용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공제부금을 증식하는 사업이다.

채권 위주로 자산을 구성해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자산운용체계를 구축해 공제부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자산운용은 크게 4가지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첫째는 ‘안정성’으로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는 ‘유동성’으로 퇴직공제금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공공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공제부금의 설치목적과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 넷째, ‘수익성’으로서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공제부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에 공제부금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다다른 시점에서 기금운용팀을 자산운용본부로 확대·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자산운용, 투자, 리스크관리 등에 대해 각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통제시스템도 강화했다.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2017년도에 추진한 자산운용사업의 주안점은 공제부금 자산 증식을 통해 퇴직공제금의 실질가치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세부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자산운용체계의 구축, 공제부금운용체계의 개선, 투자 자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 대체투자상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추진했다. 둘째, 사전적·사후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철저, 리스크관리 체계의 강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유지 등을 추진했다.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공제회는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규정 및 자산운용지침(IPS)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수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고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는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연간 부금운용계획(전략적 자산배분안 포함)의 수립 및 변경, 자산운용지침(IPS)의 제·개정,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한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정해

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는 있으나, 위원회 간의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겸임할 수는 없다.

나.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는 개별 투자건 심의, 투자상품 선정 등 투자 의사결정 전반을 담당한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국내외 SOC 및 부동산 등 실물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국내외 M&A 관련 사모펀드 및 기타 대체투자에 대한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하며, 공제회 투자의 대부분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외부 위원의 경우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석대상 위원을 지명하고 있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주요 심의사항은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 위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지침 및 성과평가지침의 제·개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정책 및 기준, 자산운용 성과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리스크관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효율적인 자산운용

가. 중장기 자산운용체계의 구축 및 개선

중장기적 관점의 운용전략에 기반을 둔 효율적 자산배분과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한 적정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투자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운용체계를 개선하였다. 중장기 자산배분 등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중장기 부금융출입 추이 분석, 장기 경제 전망을 기초로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5개년, 2018~2022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 유동성, 수익기회 확대 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 '17년도 3차 자산운용위원회 토의('17.08)를 거쳐 4차 자산운용위원회('17.12)에서 확정

〈표 39〉 중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안

자산군	2017 ('17.12.31 기준)	2018 ('17년 대비)	2022 ('17년 대비)
주식	14.6%	16.7% (2.1%p ↑)	19.1% (4.5%p ↑)
채권	64.0%	61.9% (2.0%p ↓)	48.4% (15.6%p ↓)
대체투자	13.6%	18.1% (4.5%p ↑)	29.0% (15.4%p ↑)

또한 중장기 자산배분계획의 이행계획으로서 2018년 연간부금융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부 운용역간 브레인스토밍 및 시장조사 실시, 외부전문가 제언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분기·월별*로도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식, 채권 위탁운용 및 금융상품 투자, 신규 대체투자 상품의 발굴 및 집행 등의 중장기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 연간 부금융운용계획·세부운용전략(2회), 분기·월별 운용계획 수립(12회)

둘째, 효율적인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전반적인 자산운용정책 수립, 자산운용체계 개선 등을 이루었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연중 4회 개최되었으며 보고 안건 6건, 심의의결 안건 11건 등이 부의되었다. 주요 안건은 해외투자 전략 및 방안, 공제부금 중장기 자산배분안, 자산운용지침(IPS) 일부 개정안 등인데, 심의의결, 보고안건 부의를 통해 위원회의 제언을 수렴·반영하였다.

〈표 40〉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자산운용위원회 개최(연4회)	심의 의결 안건	보고 안건
	11건	6건

나. 주식·채권·대체투자 자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

2017년도에는 주식·채권 자산별 운용전략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일환으로 주식·채권 투자유형의 확대와 해외투자 확대를 추진하였고, 중장기 대체투자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금융, 사모투자펀드(PEF), 벤처캐피탈(VC) 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했다.

첫째, 주식의 경우 운용 규모와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는 인덱스형(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수익형 상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해외 주식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실시하였다.

둘째, 채권의 경우 금리상승 기조에 대응하여 투자 비중을 축소하였고, 만기보유채권, 금리제시형 상품 등 확정금리 채권자산에 대한 투자로 금리등락에 따른 손익변동성을 줄였으며, 국내 절대수익형과 해외채권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대체투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해외오피스, 물류센터 등),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 신규 대체상품 발굴 및 투자 집행을 통해 대체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2017년의 신규 투자상품은 11건이고, 기 약정상품을 포함해 총 1,991억 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대체투자 규모는 2016년 말의 3,274억 원에서 2017년 말에는 4,729억 원으로 1,455억 원(+44%) 증가했다.

다.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안정적 수익 창출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보고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상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2017년에는 대체자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관리 체계 운영으로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고 회수율을 극대화했다. 첫째, 정기 관리체계로서 월간 자산운용 점검현황 보고(12회), 분기 중점관리상품 관리현황 보고(4회), 반기 일반관리상품 위탁운용사 정기점검(2회) 및 대출상품 자산 건전성 분류 점검, 연간 공정가치평가 등을 실시했다.

둘째, 수시 이슈 대응 관리체계를 운영했다. 상품별 현안사항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대응방안 수립 및 의사결정 등으로 즉시 대응했다. 수시 발생하는 중요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품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했으며, 위탁운용사 정기회의 및 운용보고, 이사회 보고 등도 수행했다. 상품별 수시 현장점검 및 수익률 점검, 소송 대응 등의 사후관리를 수행했다.

일반 관리상품으로서 기 투자상품(15건) 및 신규 투자상품(11건) 4,351억 원에 대해 원활하게 운영했으며, 중점 관리상품으로서 상시 현황 관리, 중요권리 확보, 법적 조치 진행 등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3.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가. 자산다변화를 고려한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부동산, 사모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대체투자상품 및 해외주식 등 신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하는 등 자산유형이 다변화 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리스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신규 유형에 대한 한도 설정 및 리스크 측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대체투자의 경우 상품 투자 전·후 단계에서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직제와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을 견제하고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관리팀을 분리하였다.

나. 투자상품 선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팀에서 투자심의위원 전문가집단(Pool) 관리 및 위원 선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리스크관리팀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선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투자심의 위원 풀의 구성 인원을 확대(46명 → 50명)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다. 자산운용 성과평가

2017년에는 투자상품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및 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성과평가 전문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운용부서와 공유하여 투자전략 수립 및 자금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리스크관리위원회 내 성과평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성과평가 분야의 경험이 많은 외부위원을 위촉(2명)하였다.

라. 대체투자상품 공정가치 평가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장기투자자산이면서 복잡한 상품 구조상 적절한 가치의 측정 및 부실화 가능성의 조기 인식 등이 어렵다. 이에 공제회는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체투자상

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결산 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인식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3장

추진현황

1. 자산운용 현황

2017년도에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산을 운용했는데, 운용수익률은 4.24%로 1,31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식시장의 호황세로 주식운용의 높은 성과와 더불어 채권, 대체투자의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으로 목표수익률 2.42%보다 1.82%p 상회한 실적을 나타냈다. 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단기 현금성 1.55%, 중장기 주식 23.67%, 채권 1.64%, 대체투자 5.79%를 기록했다.

투자 유형별 성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주식의 경우 대형주, IT업종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KOSPI 지수의 상승에 맞춰 23.67% 수익률을 기록(운용수익 731억 원)해, 전년도 수익률 △3.08% 대비 26.75%p 개선하였고, 벤치마크를 1.90%p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채권의 경우 연초 절대 금리 수준이 낮은 환경 속에서, 미국 금리인상 도래에 따른 손익변동성 축소를 위해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1.64%를 기록해, 벤치마크를 0.36%p 상회하였다. 그 외 단기 현금성 자산의 경우는 1.55%의 수익률을 기록해, 전년과 동일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체투자는 신규 상품의 발굴 투자 및 기존 자산에 대한 매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률 5.79%, BM수익률 4.04% 대비 1.75%p 상회하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표 41〉 공제부금 자산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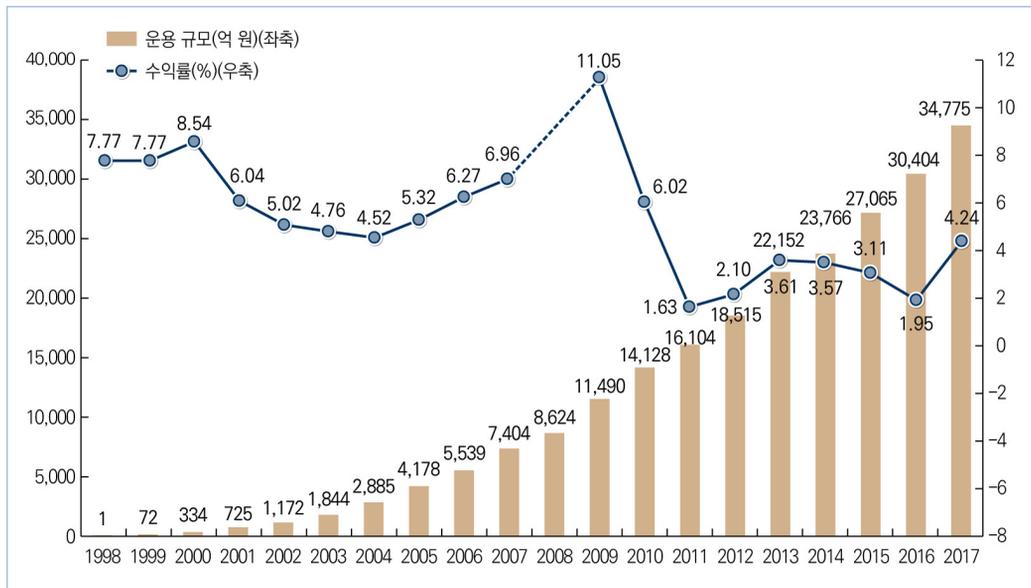
(17.12.31 기준, 단위: 억 원, %, %p)

구분	투자자산	운용규모			투자비중 (평잔기준)	운용수익	수익률
		투자원금	평가액	평잔			
중장기	주식	4,400	5,069	3,400	10.6	731	23.67
	채권	21,925	22,271	22,783	71.1	374	1.64
	대체투자	4,729	4,729	3,706	11.6	172	5.79
계		31,054	32,069	29,889	93.3	1,279	4.66
단기	현금성	2,704	2,706	2,161	6.7	33	1.55
	계	2,704	2,706	2,161	6.7	33	1.55
자산총계		33,758	34,775	32,050	100.0	1,312	4.24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공제회의 자산운용 규모는 설립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2년 1천억 원 달성을 시작으로 2007년 및 2008년 공제부금 일액 증가, 2010년 민간공사 등 의무가입 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부금납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9년 최초로 운용규모 1조원을 돌파한 후, 2013년 2조원 도달에 이어 2016년 3조원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약 3조 5천억 원의 운용 규모와 4.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림 5〉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표 42〉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17.12.31 기준, 단위: 억 원, %)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1998	1	7.77	2008	8,624	-6.56
1999	72	7.77	2009	11,490	11.05
2000	334	8.54	2010	14,128	6.02
2001	725	6.04	2011	16,104	1.63
2002	1,172	5.02	2012	18,515	2.10
2003	1,844	4.76	2013	22,152	3.61
2004	2,885	4.52	2014	23,766	3.57
2005	4,178	5.32	2015	27,065	3.11
2006	5,539	6.27	2016	30,404	1.95
2007	7,404	6.96	2017	34,775	4.24

또한, 부금회계로 운용해 온 공제부금은 「미확인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운영수익」특별회계가 2014년 1월 1일부로 설치됨에 따라 미회수공제증지 판매원금과 이자적립금 등을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되었다. 2017년의 특별회계의 운용 규모는 2,188억 원이다.

〈표 43〉 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17.12.31 기준, 단위: 억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운용 규모	2,034	2,070	2,114	2,188



PART

0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제1장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제2장 퇴직공제사업 운영 실적

이용자안내

1. 본 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수행하는 퇴직공제사업으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공제회에 신고된 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통계 수치로는 한계를 지니므로,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 상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가 당해연도 건설현장에서 일한 모든 날이 아니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만을 의미합니다.
(예시) 근로자 A씨가 2017년도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50일을 일한 후 퇴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100일을 일한 경우 2017년도 A씨의 적립일수는 50일이 됩니다.
- 또한, 적립일수는 근로자의 실제 작업시간을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B씨가 '17년 5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1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B씨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하루에 1.5일로 환산하여 15일이 되며, 달력으로 하는 날짜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2. 자료 추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매월 EDI와 서면신고를 통해 공제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추출하였습니다.
- 직종은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적립일수 자료를 근로자별로 집계한 후 가장 많은 적립일수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 하나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자료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특성은 공사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공종별, 발주자별 가입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 분류가 불가능한 자료는 ‘기타’에 포함하여 표시하였습니다.

3. 동 자료집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 건설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
- 건설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 퇴직공제: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도달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피공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
- 공제부금: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할 경우 건설사업주가 1인 1일당 4,200원*씩 계산하여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
*1일 공제부금액: 4,200원(근로자 적립분 4,000원+사업·운영비 200원)
- 퇴직공제금: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기간동안 납부된 퇴직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
- 적립일수: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건설사업주가 적립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 그 명의로 적립된 공제부금 납부일수
- 근무기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적립일수가 처음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 신고된 때까지 역법에 따라 계산한 기간
- 투입인원: 건설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그 날의 인원 수
- 직종: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며, 그 복잡함과 책임의 정도가 다른 직무의 계열
- 공종: 건설공사의 내역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사의 종목

4. 퇴직공제금 청구 관련,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제부금 납부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에 해당됨

-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야 함

5. 자료 추출 결과 지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유량(flow) 지표에는 적립일수, 신규가입자수, 퇴직자수, 근무기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 적립일수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수 기준임.
 - 신규가입자수는 당해연도에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의 수를, 퇴직자수는 근로자가 그 동안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더 이상 건설 일을 하지 않게 된 사람의 수를 의미함.
 - 근무기간은 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적립일수가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신고된 때까지의 기간 기준임.
 - 퇴직공제금 지급현황은 당해연도 1년동안 퇴직공제금을 접수한 후 지급까지 완료한 사안을 기준으로 함.
- 저장(stock) 지표에는 피공제자 현황,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현황 및 준공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 피공제자는 당해연도에 퇴직공제 가입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현황은 당해연도에 시공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준공사업장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준공처리가 완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6. 통계 수치는 향후 자료 보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본 사업연보는 발간과 동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 장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1. 건설경기 동향

고찰의 필요성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 한다)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크게 퇴직공제, 고용지원, 복지지원, 자산운용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본 공제회 사업연보는 2017년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경기 및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의 정책대상이자 출발점 그리고 추진 실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설경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력의 수요를 생산물에 대한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고 부른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건설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의미다. 요컨대, 공제회의 사업이 활성화될지 여부 또는 추진 실적의 증감은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에 따라 규정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은 다시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를 둘러싼 건설경기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³

가. 개요

건설생산물의 수요 및 공급의 활성화 정도를 건설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건설경기의 상승 또는 하강을 알려주는 건설경기지수를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⁴ 동행지수

³ 주요 통계는 이홍일·박철환(2018.7), 201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⁴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2017.7.11. 검색)

(Coincident Index)란 현재의 경기 상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하고, 선행지수(Leading Index)란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건설관련 지표 중 건축허가나 건설수주 활동이 건설시공 활동에 앞서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허가면적 통계나 건설수주통계가 건설투자의 선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을 측정 한 건설기성액은 건설투자의 동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수주란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금액 과 납기 등으로 표현된다.⁵ 건설투자란 넓은 의미로는 자본으로서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 또는 건축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의 각 측면에서의 자본 투하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건축 생산에 있어서의 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건설기성이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 별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로서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실적을 조사한 것이므로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퇴직공제사업과 관련해 예를 들어본다면, 피공제자수의 동행지수는 건설투자·건설기성·건설업취업자수 등이고, 선행지수는 건설수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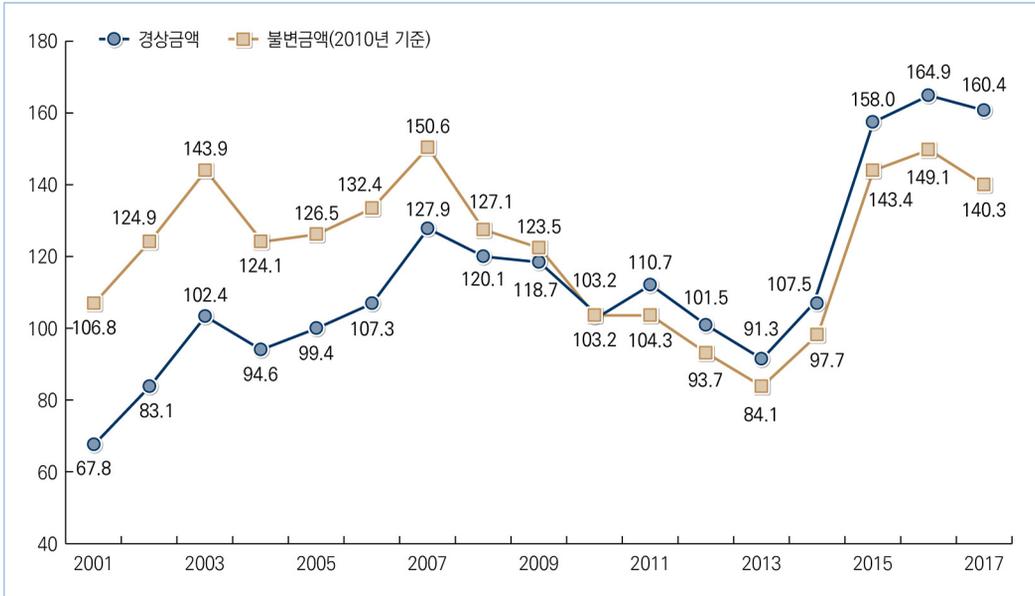
나. 건설수주 동향 : 선행지수

최근 20년간 건설수주의 증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세 번의 정점과 두 번의 저점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상승세로 1997년에 정점에 이른 후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저점까지 하락한 후 회복되어 2007년에 다시 정점에 도달했다.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저점에 이르게 되고 다시 상승해 2016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2017년도의 건설수주액 160.4조원은 사상 최고치인 2016년(164.9조원)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었다.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의 호조세는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의 호조세를 선도하게 된다.

⁵ 건설수주, 건설투자, 건설기성 등의 정의에 대해 참조함. 통계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2017.7.11. 검색)

〈그림 6〉 국내 건설수주 증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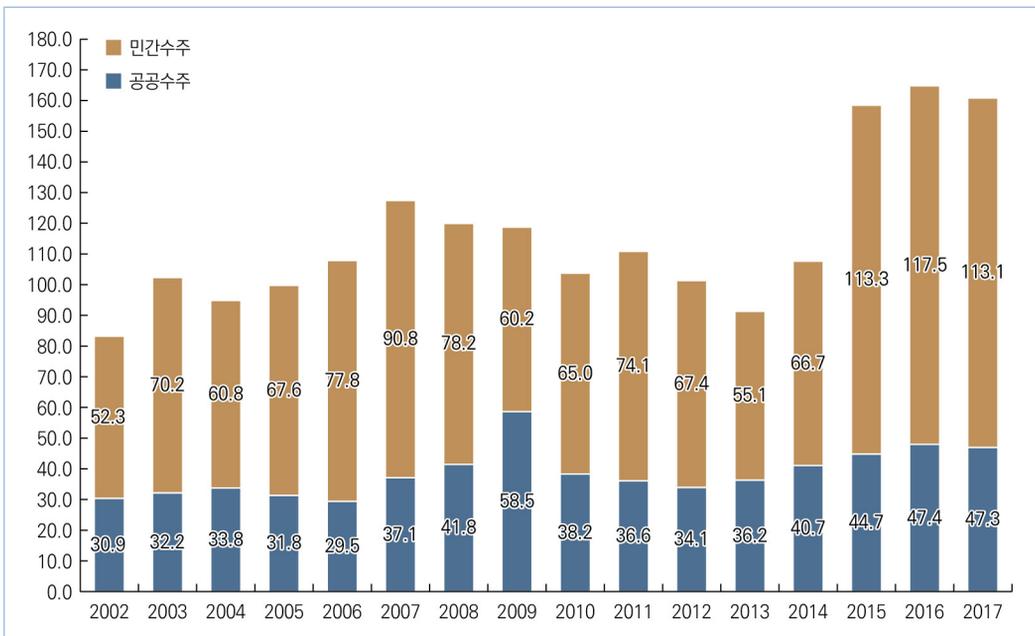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한(2018.7), 201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7〉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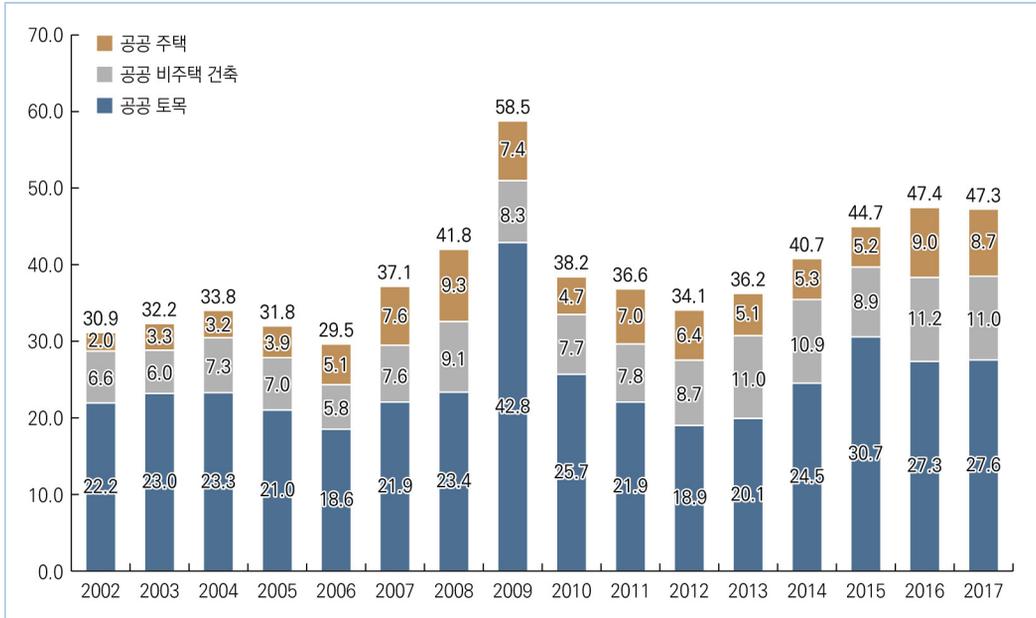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한(2018.7), 201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8〉 국내 건설 세부 수주 증장기 추이 : 공공수주 공종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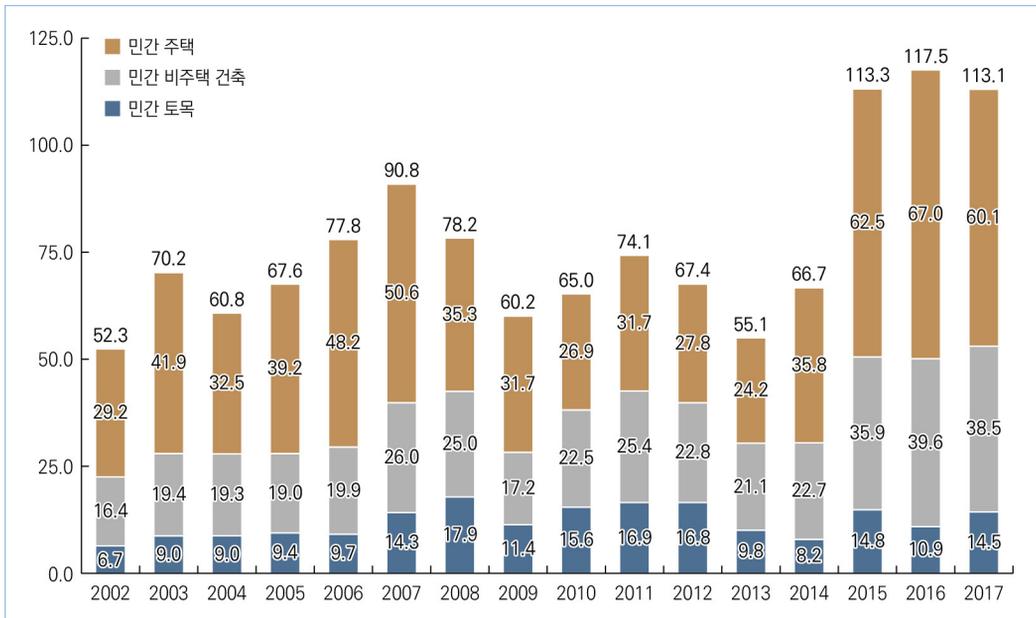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환(2018.7), 201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9〉 국내 건설 세부 수주 증장기 추이 : 민간수주 공종별 추이

(단위: 조 원)



주: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환(2018.7), 201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다. 건설투자 동향 : 동행지수

2017년의 건설투자는 토목 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양호해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주거용 건축 투자가 14.9% 증가하고, 비주거용 건축 투자도 9.4% 증가해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각각 92.7조원과 91.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목 투자는 2017년에 3.5% 감소해 연간으로는 지난 2015년 0.3%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9년 연속 감소했다. 결국,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66.2조원을 기록했다.

〈표 44〉 건설투자 추이

(단위: 조 원, 전년 동기비 %)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211.54	106.24	127.13	233.37	116.55	134.53	251.08
증감률	6.6	9.0	11.4	10.3	9.7	5.8	7.6

주: 건설투자액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호(이홍일·박철한(2018.7), 201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표 45〉 2017년 공종별 건설투자 내역

(단위: 조원, 전년 동기비 %)

구분		금액(조원, 2010년 실질가격)				증감률(% , 전년 대비)			
		건설 투자				건설 투자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목 건설
2017	1/4	49.5	19.5	16.8	13.1	11.3	20.7	12.4	-1.5
	2/4	67.1	24.4	24.4	18.2	8.5	16.0	11.6	-3.6
	3/4	67.0	24.5	26.3	16.0	8.0	15.2	9.0	-3.3
	4/4	67.6	24.3	24.2	18.9	3.8	9.5	5.6	-4.8
2017년		251.1	92.7	91.7	66.2	7.6	14.9	9.4	-3.5

자료: 한국은행(이홍일·박철한(2018.7), 201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라.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간 시차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와 동행지수인 건설투자 간에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양자 간의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면 공제회의 각 사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으므로, 그 시차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건설투

자와 건설기성은 둘 다 건설경기 of 동행지수로서 거의 유사한 방향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
 에 비해 <그림 11>에서 보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간에는 시차가 보이는데, 2015년과
 2016년에 보이는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간의 시차는 약 1년 반 수준이다. 즉, 건설수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년 6월경에 최고조에 이르렀다면, 건설투자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
 다가 2017년 1월경에 정점에 이를 것임을 미리 전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0> 건설투자와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이홍일·박철한(2017), 2017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11>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순환 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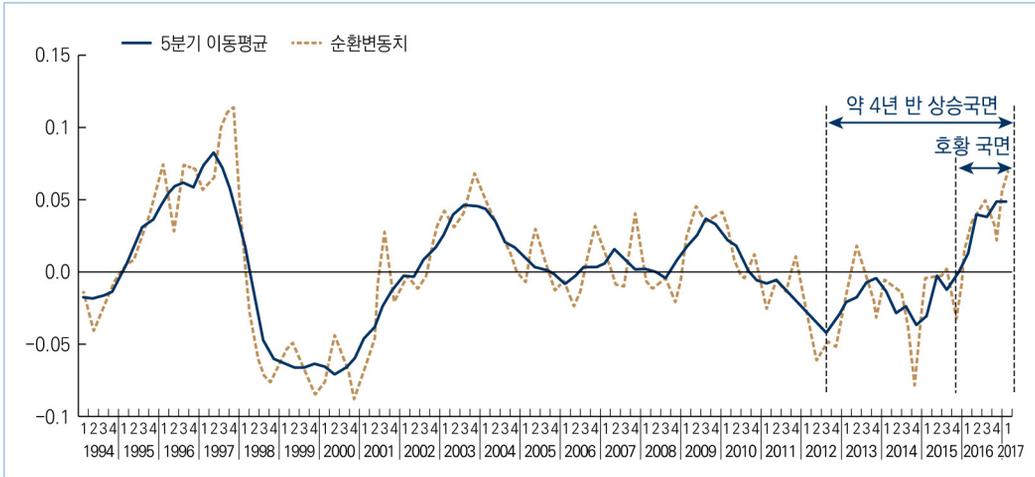
주: 계절 조정된 시계열을 로그화하여 HP 필터로 필터링 수행, 7개월 이동 평균하였으며, 기성과 수주를 함께 보기 위해 기성 변동 폭을 2.5배 확대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이홍일·박철한(2017), 2017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12>와 <그림 13>은 순환 변동치 국면 중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건설투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상승국면에 들어서 2016년 이후 호황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후퇴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는 2016년에 후퇴국
 면에 들어와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되어 향후 2~3년 간 하락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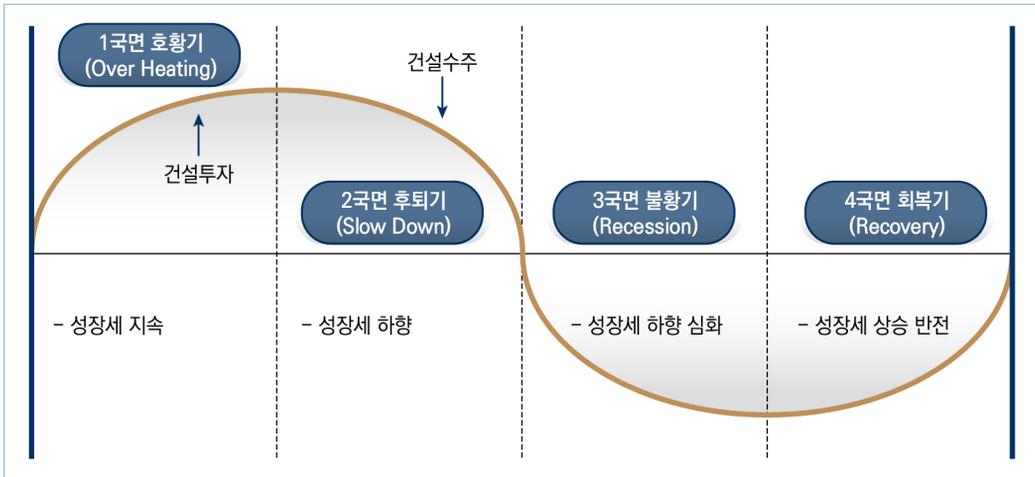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따라오게 될 건설투자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후퇴국면에 진입한 후, 특히 4/4분기에는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중 불황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건설투자 순환 변동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이홍일·박철한(2017), 2017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13〉 건설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의 경기순환주기 중 현재 위치



자료: 이홍일·박철한(2017), 2017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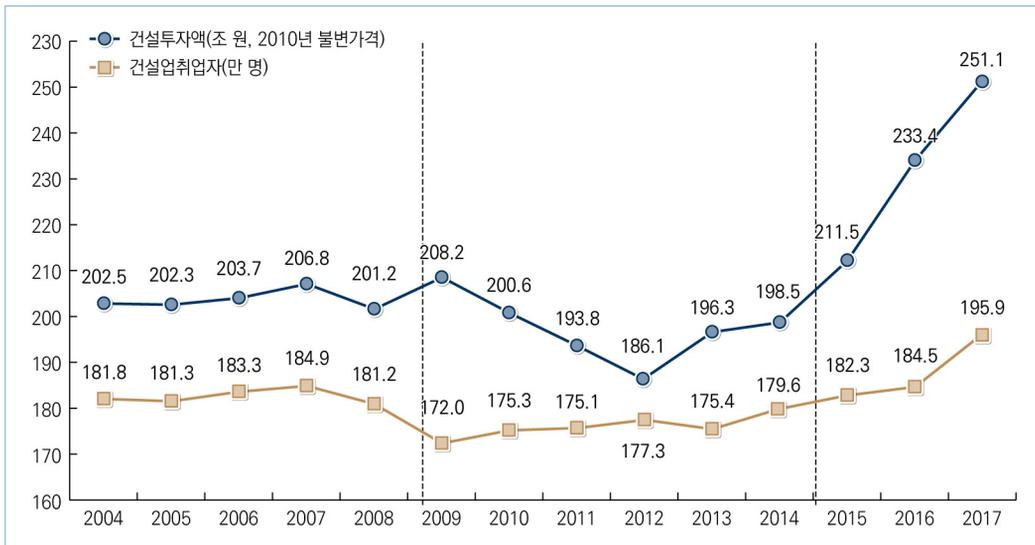
2. 건설노동시장 동향

가. 건설업취업자 동향

건설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자영자 등)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업취업자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9개의 직종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건설업취업자는 건설경기의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와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인다. 양자는 건설업의 생산물 수요와 그 생산물의 파생수요 간의 관계이므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이전과 2014년 이후에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나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양자의 흐름이 괴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설은 없다.

<그림 14>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각각 연간 자료)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인원수 구성비가 높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962,976명, 47.9%), 단순노무종사자(366,990명, 18.2%), 사무종사자(238,632명, 11.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81,943명, 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80,933명, 9.0%) 등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

보면, 총 252,220명이 증가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206,985명), 단순노무종사자(68,942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43,688명)의 순으로 증가 규모가 큰 반면, 관리자(-47,146명)와 사무종사자(-17,889명)의 경우 감소했다. 그에 비해 2017년과 2016년 1년간의 변화만을 살펴보면, 총 79,563명이 증가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44,993명)와 단순노무종사자(41,071명)의 증가 규모가 컸다.

〈표 46〉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최근 10년간

인원 수(명)									
구분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7-'08
관리자	106,203	89,170	80,031	67,880	73,706	71,763	57,077	59,057	-47,1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3,658	175,902	167,810	178,862	172,597	160,955	182,894	180,933	-2,726
사무종사자	256,521	223,887	220,509	234,432	239,624	228,587	241,272	238,632	-17,889
서비스종사자	1,429	1,997	1,497	423	2,256	3,041	1,828	550	-879
판매종사자	10,587	24,247	18,843	15,703	12,564	14,894	20,116	16,817	6,230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8,102	9,421	5,032	7,037	6,462	2,000	1,067	3,116	-4,98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5,991	859,441	823,214	803,063	893,114	926,925	917,983	962,976	206,98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8,255	156,738	177,425	175,315	186,163	183,470	183,296	181,943	43,688
단순노무종사자	298,048	290,880	255,444	272,032	251,376	253,497	325,919	366,990	68,942
계	1,758,795	1,831,683	1,749,804	1,754,747	1,837,863	1,845,132	1,931,452	2,011,015	252,220
구성비(%)									
구분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7-'08
관리자	6.0	4.9	4.6	3.9	4.0	3.9	3.0	2.9	-3.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4	9.6	9.6	10.2	9.4	8.7	9.5	9.0	-1.4
사무종사자	14.6	12.2	12.6	13.4	13.0	12.4	12.5	11.9	-2.7
서비스종사자	0.1	0.1	0.1	0.0	0.1	0.2	0.1	0.0	-0.1
판매종사자	0.6	1.3	1.1	0.9	0.7	0.8	1.0	0.8	0.2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0.5	0.5	0.3	0.4	0.4	0.1	0.1	0.2	-0.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3.0	46.9	47.0	45.8	48.6	50.2	47.5	47.9	4.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9	8.6	10.1	10.0	10.1	9.9	9.5	9.0	1.2
단순노무종사자	16.9	15.9	14.6	15.5	13.7	13.7	16.9	18.2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2008년부터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합쳐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통합되었음. 본 표에서는 과거의 수치 역시 통합된 수치로 작성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나.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건설업취업자의 9개 직종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3개 직종이 대체로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인데, 건설기술인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건설기능인력'으로 불리거나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건설일용근로자'로 불린다. 이들은 대체로 동일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공제회 제반 사업의 정책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본 사업연보에서도 건설업취업자 중 특히 건설기능인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돼 왔다. 인원수는 2000년에 1,219천 명이던 것이 2009년에 1,171천 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1,512천 명으로 증가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정도는 40대 이상 구성비를 전체 취업자와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0년에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58.8%이고 전체 취업자의 경우 그것이 47.5%로 나타나 양자 간의 격차가 11.3%p였는데, 2017년에는 각각 83.5%와 63.8%로 그 격차가 19.7%p로 크게 벌어졌다. 2016년의 21.2%p 격차에 비해 약간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향후 건설현장 숙련인력 확보의 지속 가능성 또는 공제회 제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다.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수행할 내국인 건설근로자가 부족해질 경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훈련, 취업, 복지 등 공제회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15〉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주: 건설기능인력은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3개 직종을 합한 개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제2장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퇴직공제사업은 공제회의 주된 사업인 만큼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하고 각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공제부금 적립일수, 수납액, 퇴직공제금 지급 등에 관한 특성별 분석은 2016년과 2017년 2개 연도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감 정도를 비교했다.

1. 개요

가. 총괄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 2017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해보면, 2017년 현재 퇴직자를 제외한 피공제자 누계는 5,211,640명이고, 퇴직자 누계는 581,946명이며, 퇴직공제금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3조 3,035억 원이다. 2017년도 한 해 동안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는 1,671,289명이고 연간 적립일수는 134,734천일이다. 2017년도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34,763개소이고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6,042억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7,381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액 총계는 4조 5,565억 원이다. 그리고 2017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100,318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2,64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36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급인원은 581,948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 총계는 1조 2,53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53천 원이다.

〈표 47〉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17)

구분		합계(누계) (또는 평균)	1998~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요 항목 누계	피공제자 누계(명) (퇴직자 제외)	5,211,640	3,375,402	3,680,507	4,005,756	4,285,447	4,538,129	4,846,307	5,211,640
	퇴직자 누계(명)	581,946	150,058	195,315	253,283	321,396	395,173	481,630	581,946
	공제부금 누계(억 원) (지급액 제외)(D-F)	33,035	15,656	18,194	21,173	24,071	26,730	29,637	33,035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적립근로자(명)(A)	-	-	1,310,318	1,429,986	1,394,179	1,387,428	1,554,985	1,671,289
	적립일수(천일)(B)	-	-	85,588	104,683	107,139	109,290	126,789	134,734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	납부사업장(개소)(C)	329,956	140,782	30,513	31,031	29,762	30,505	32,600	34,763
	납부액(억 원)(D)	45,565	17,778	3,431	4,220	4,442	4,537	5,114	6,042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 (천 원)(D/C)	13,810	10,689	11,243	13,601	14,926	14,872	15,779	17,381
연도별 퇴직 공제금 지급	지급인원(명)(E)	581,948	150,058	45,257	57,968	68,113	73,775	86,457	100,318
	지급액(억 원)(F)	12,530	2,123	893	1,241	1,544	1,878	2,207	2,644
	1인당 평균 지급액 (천 원)(F/E)	2,153	1,415	1,973	2,141	2,267	2,545	2,553	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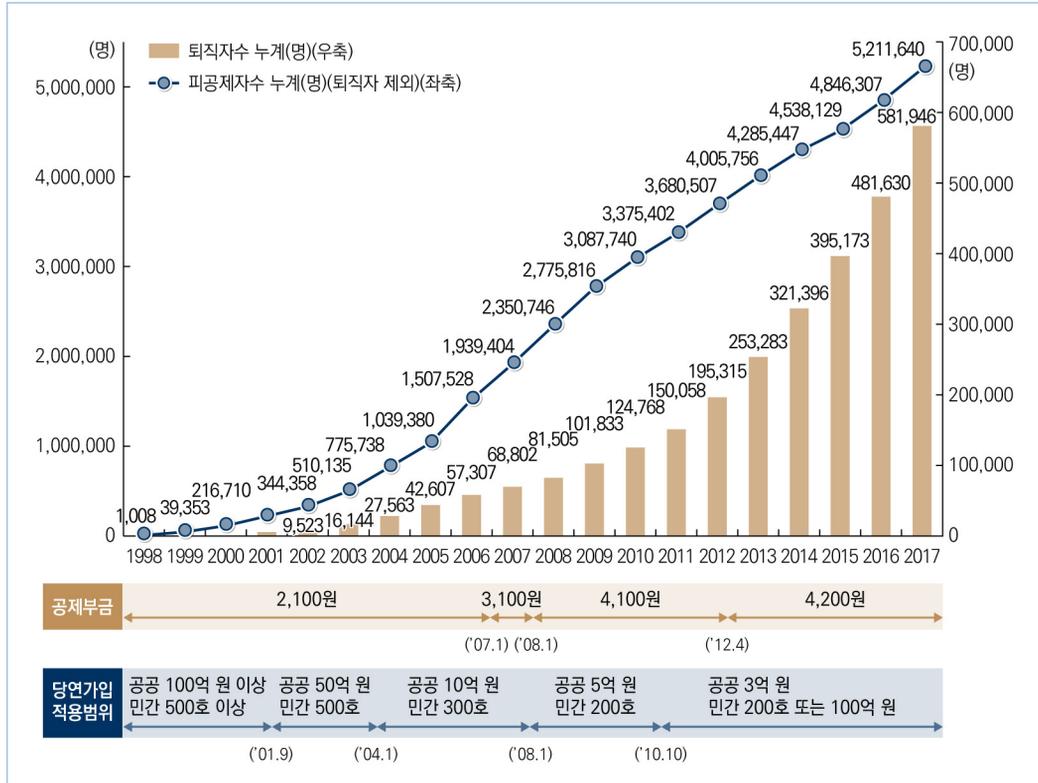
주: 연도별 적립근로자의 경우 동일 근로자가 다른 해에도 중복되므로 일정 기간에 걸친 누계는 실적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생략함.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나.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퇴직공제제도가 시작된 1998년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는 1,008명에 그쳤다. 당시 당연가입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는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그리고 민간공사 500호 이상이었는데 2001년 9월에는 공공공사의 범위가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과 당연가입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퇴직공제제도가 정착하는 데 큰 계기가 된 것은 2002년에 시행된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 것 그리고 2006년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식을 종전의 공제증지 첨부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신고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피공제자 누계가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선 시점은 2005년이었고, 2008년에는 약 235만 명, 2010년에는 약 309만 명, 2013년에는 약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 말에는 약 485만 명에 이르렀다. 그에 비해 퇴직자수는 초기에는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해, 2009년에는 누적 퇴직자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부터는 매우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7년에는 한 해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 말의 누적 퇴직자수는 581,946명에 달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퇴직공제금의 청구 요건과 관련이

있다.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신고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돼야 하고 노후대책이라는 제도의 성격상 퇴직 시 또는 60세 이후여야 하므로, 제도 초기에는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구권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16〉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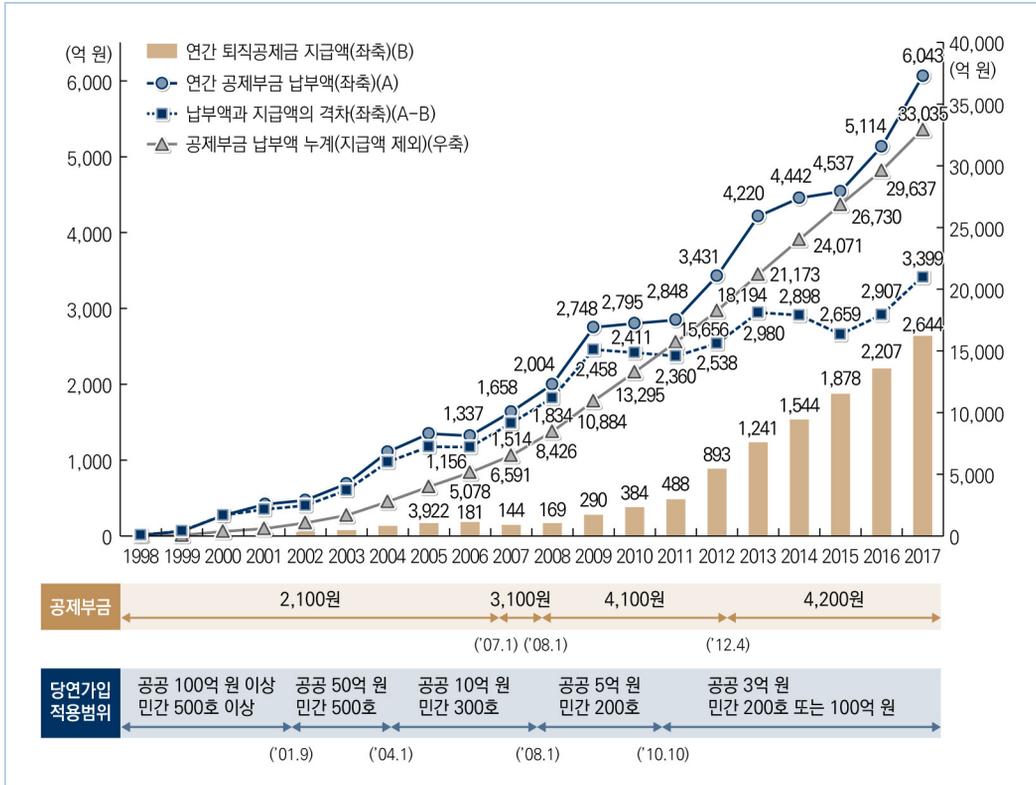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다.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차인 2004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1,115억 원을 기록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는 2,004억 원, 다시 4년 후인 2012년에는 3,431억 원, 이듬해인 2013년에는 4,220억 원, 2017년에는 6,043억 원에 이르렀다. 퇴직공제금 지급액도 2004년에는 128억 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1,241억 원 그리고 2017년에는 2,64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림 17〉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치 추이(1998~2017)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향후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는 공제부금 납부액과 퇴직공제금 지급액 간의 격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클 경우 공제부금 누계치는 계속 증가할 텐데 격차가 클수록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격차가 준다면 증가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반대로 후자가 더 커진다면 그때부터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양자 간의 격차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3,399억 원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현재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는 3조 3,035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상승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 앞으로도 공제부금 적립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252일 미만 적합한 피공제자에게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경우 퇴직공제금의 지급액이 급격히 늘면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공제부금 적립일수

근로자의 근로내역과 관련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시계열 통계는 2005년까지는 연도별로 집계하지 못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실적만을 살펴볼 수 있다. 200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2006년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식을 전산망으로 전환한 후로는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점을 알 수 있지만,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근로일수만큼의 공제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근로자별 증지 매수에 대한 정보만 존재할 뿐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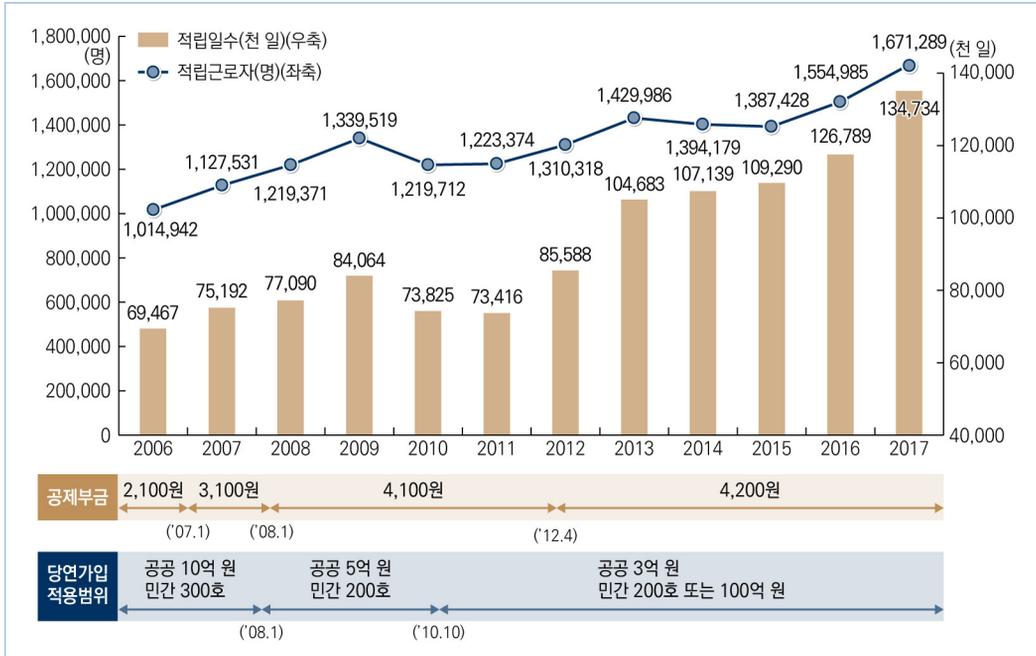
따라서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공제회로 반납해 전산망에 입력할 때 근로자별로 수첩에 첨부된 총 매수만 입력됐고, 2005년까지의 적립근로자 수 또는 적립일수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전산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적립근로자는 2006년에 1,014,942명에서 2017년에는 1,671,289명으로 1.6배 증가했으며, 동 기간 중 적립일수는 69,467천일에서 134,734천일로 1.9배 증가했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증가 배율이 더 큰 이유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로 동일한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014년과 2015년에는 적립근로자는 약간 줄어드는데 반해 적립일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동 기간 중 앞에서 본 건설기성은 2014년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하나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적립일수의 증가 추세가 더 건설노동시장의 실제 흐름과 부합하는 모습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적립일수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동 시기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내 건설기성의 흐름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8〉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7)



주: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표 48〉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7)

연도	적립근로자(명) (A)	적립일수(천일) (B)
평균	1,324,386	93,440
2006	1,014,942	69,467
2007	1,127,531	75,192
2008	1,219,371	77,090
2009	1,339,519	84,064
2010	1,219,712	73,825
2011	1,223,374	73,416
2012	1,310,318	85,588
2013	1,429,986	104,683
2014	1,394,179	107,139
2015	1,387,428	109,290
2016	1,554,985	126,789
2017	1,671,289	134,734

주: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또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와 아래에서 기술하는 월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가. 기본 특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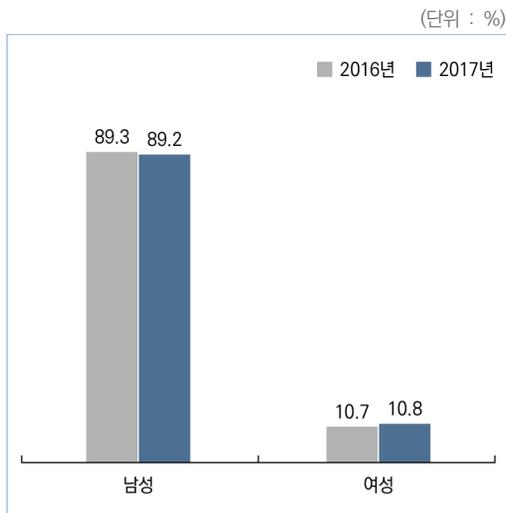
2017년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는 1,671,289명으로서 2016년의 1,554,985명에 비해 7.5%가 증가했고, 적립일수는 134,734,124일로 전년도의 126,788,666일 대비 6.3% 증가했다.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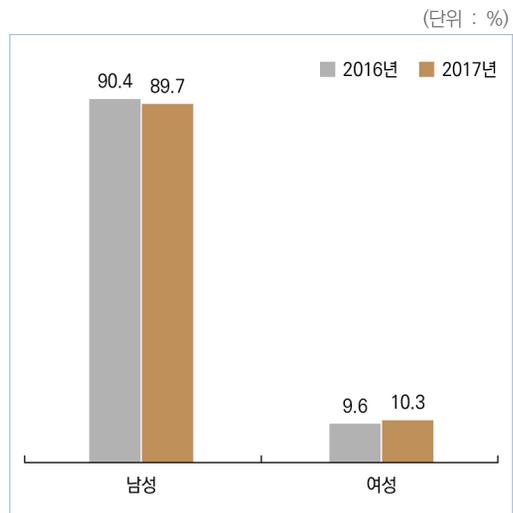
2017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9.2%(1,490,109명), 여성 10.8%(181,180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89.7%(120,856,482일), 여성 10.3%(13,877,642일)로 나타났다. 매년 남성이 차지하는 적립근로자수의 비중에 비해 적립일수의 비중이 미미하나마 더 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의 순으로 남성의 경우 7.3%와 5.5%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9.2%와 13.9% 증가했다.

〈그림 19〉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0〉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49〉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54,985	100.0	1,671,289	100.0	7.5
	적립일수(일, %)	126,788,666	100.0	134,734,124	100.0	6.3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1,389,051	89.3	1,490,109	89.2	7.3
	적립일수(일, %)	114,605,603	90.4	120,856,482	89.7	5.5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165,934	10.7	181,180	10.8	9.2
	적립일수(일, %)	12,183,063	9.6	13,877,642	10.3	13.9

2) 연령별

2017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50대 31.8%(531,223명), 40대 22.9%(382,214명), 60대 16.8%(280,971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에도 역시 50대 36.0%(48,565,845일), 40대 25.0%(33,726,817일), 60대 16.7%(22,450,91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20대 이하(18.8%, 38.6%)와 30대(12.7%, 19.2%) 등의 증가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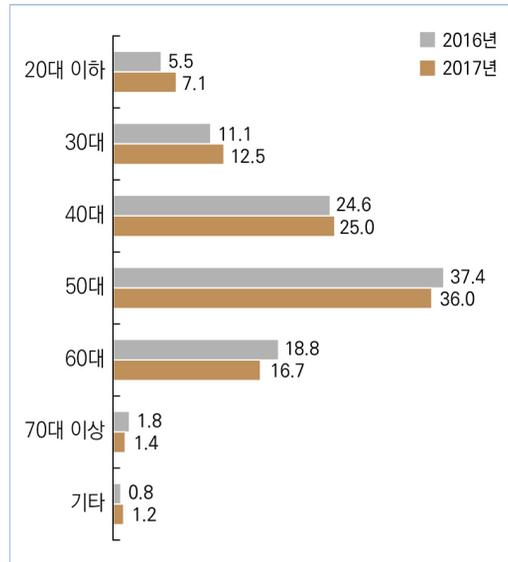
〈그림 21〉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단위 : %)



〈그림 22〉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단위 : %)



〈표 50〉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54,985	100.0	1,671,289	100.0	7.5
	적립일수(일, %)	126,788,666	100.0	134,734,124	100.0	6.3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151,916	9.8	180,404	10.8	18.8
	적립일수(일, %)	6,919,787	5.5	9,593,071	7.1	38.6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182,859	11.8	206,060	12.3	12.7
	적립일수(일, %)	14,107,324	11.1	16,811,203	12.5	19.2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357,157	23.0	382,214	22.9	7.0
	적립일수(일, %)	31,238,350	24.6	33,726,817	25.0	8.0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514,218	33.1	531,223	31.8	3.3
	적립일수(일, %)	47,445,619	37.4	48,565,845	36.0	2.4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289,989	18.6	280,971	16.8	-3.1
	적립일수(일, %)	23,778,588	18.8	22,450,914	16.7	-5.6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41,745	2.7	35,625	2.1	-14.7
	적립일수(일, %)	2,260,486	1.8	1,949,043	1.4	-13.8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17,101	1.1	54,792	3.3	220.4
	적립일수(일, %)	1,038,512	0.8	1,637,231	1.2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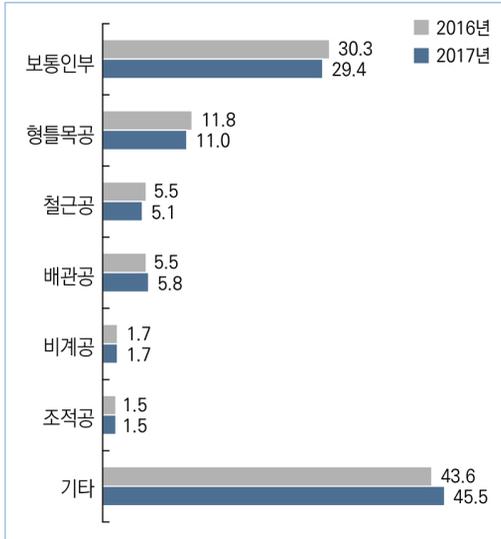
3) 직종별

2017년도 공제부금 적립과 관련해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29.4%(491,944명), 형틀목공 11.0%(183,583명), 배관공 5.8%(96,694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2.2% (29,967,327일), 형틀목공 12.7% (17,143,593일), 배관공 8.3%(11,132,033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배관공(13.7%), 조적공(8.1%), 비계공(4.4%)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배관공(19.0%), 조적공(9.9%), 비계공(5.1%) 순으로 증가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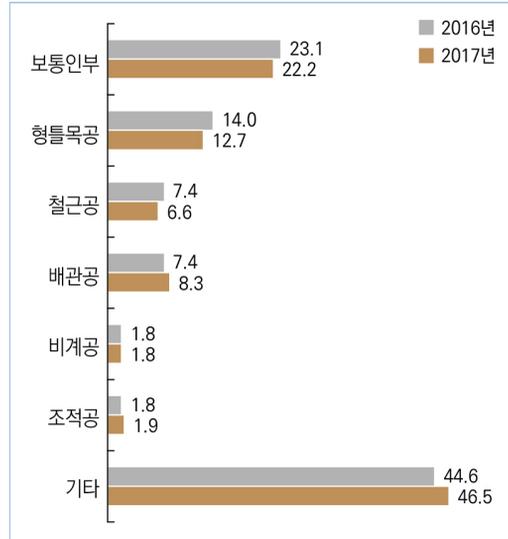
〈그림 23〉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단위 : %)



〈그림 24〉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단위 : %)



주: 공제회DB의 직종 명칭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2016년도 연보와 차이가 있음.

〈표 51〉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54,985	100.0	1,671,289	100.0	7.5
	적립일수(일, %)	126,788,666	100.0	134,734,124	100.0	6.3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471,699	30.3	491,944	29.4	4.3
	적립일수(일, %)	29,230,543	23.1	29,967,327	22.2	2.5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184,155	11.8	183,583	11.0	-0.3
	적립일수(일, %)	17,726,961	14.0	17,143,593	12.7	-3.3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85,747	5.5	84,996	5.1	-0.9
	적립일수(일, %)	9,399,609	7.4	8,931,229	6.6	-5.0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85,061	5.5	96,694	5.8	13.7
	적립일수(일, %)	9,358,277	7.4	11,132,033	8.3	19.0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26,641	1.7	27,804	1.7	4.4
	적립일수(일, %)	2,250,490	1.8	2,364,846	1.8	5.1
조적공	적립근로자수(명, %)	23,646	1.5	25,565	1.5	8.1
	적립일수(일, %)	2,268,711	1.8	2,494,316	1.9	9.9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678,036	43.6	760,703	45.5	12.2
	적립일수(일, %)	56,554,075	44.6	62,700,780	46.5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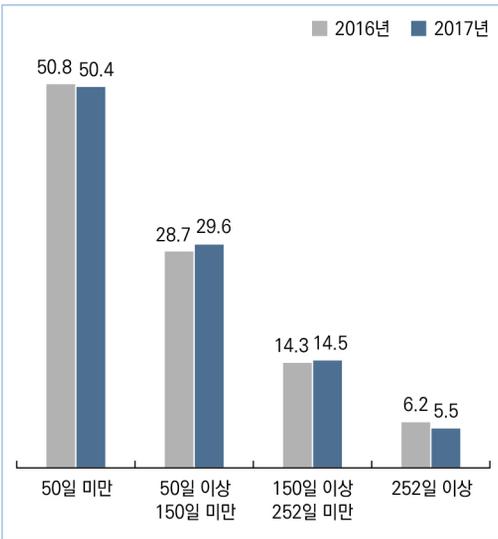
주: 공제회DB의 직종 명칭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2016년도 연보와 차이가 있음.

4) 적립일수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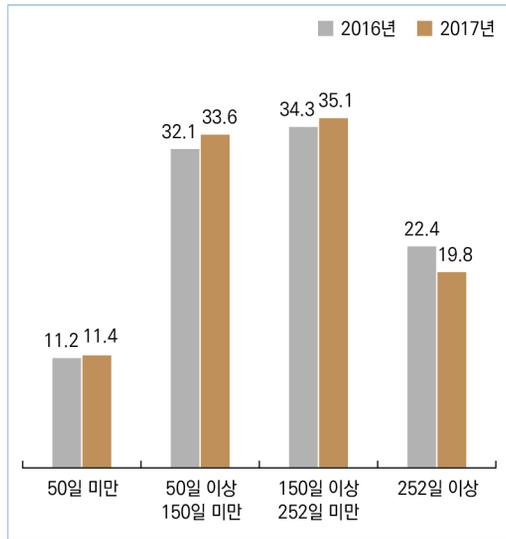
2017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50일 미만 50.4%(842,081명), 50일 이상 150일 미만 29.6%(494,899명), 150일 이상 252일 미만 14.5%(242,678명) 등의 순이고, 2017년 한 해에 퇴직공제금 청구요건 중 하나인 252일 이상을 적립한 근로자는 5.5%(91,631명)다. 각 구간 적립일수 합계의 경우에는 150일 이상 252일 미만 35.1%(47,342,495일), 50일 이상 150일 미만 33.6%(45,316,141일), 252일 이상 19.8%(26,676,181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의 경우 각각 50일 이상 150일 미만(11.0%, 11.4%), 150일 이상 252일 미만(9.3%, 9.0%), 50일 미만(6.5%, 8.0%) 순으로 증가가 큰 반면, 252일 이상(-5.3%, -6.1%)에서는 감소했다.

〈그림 25〉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단위 : %)



〈그림 26〉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단위 : %)



〈표 52〉 적립일수 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54,985	100.0	1,671,289	100.0	
	적립일수(일, %)	126,788,666	100.0	134,734,124	100.0	6.3
50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790,328	50.8	842,081	50.4	6.5
	적립일수(일, %)	14,255,378	11.2	15,399,307	11.4	8.0
50일 이상 150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445,890	28.7	494,899	29.6	11.0
	적립일수(일, %)	40,670,228	32.1	45,316,141	33.6	11.4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150일 이상 252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221,982	14.3	242,678	14.5	9.3
	적립일수(일, %)	43,446,679	34.3	47,342,495	35.1	9.0
252일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96,785	6.2	91,631	5.5	-5.3
	적립일수(일, %)	28,416,381	22.4	26,676,181	19.8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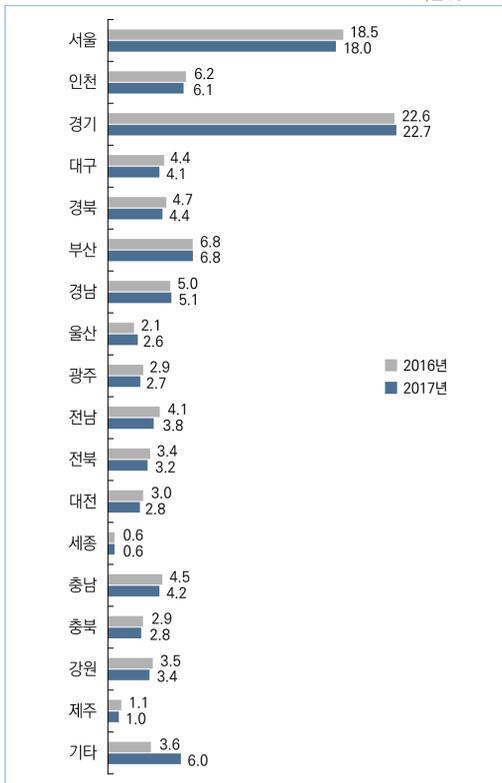
5) 지역별

2017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22.7%(379천 명), 서울 18.0%(300천 명), 부산 6.8%(113천 명), 인천 6.1%(102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경기 24.4%(329십만 일), 서울 20.2%(272십만 일), 부산 6.9%(93십만 일), 인천 6.5%(87십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울산(30.3%), 세종(11.1%), 경남(10.4%)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울산(57.1%), 경남(17.6%), 세종(14.3%)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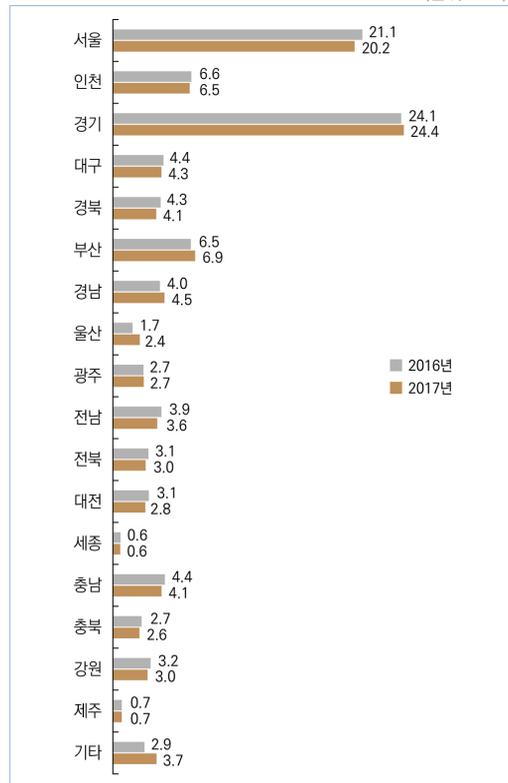
〈그림 27〉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단위 : %)



〈그림 28〉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단위 : %)



〈표 53〉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피공제자수 (천 명,%)		적립일수 (십만 일,%)		적립피공제자수 (천 명,%)		적립일수 (십만 일,%)		적립 피공제 자수 (%)	적립 일수 (%)
계	1,553	100.0	1,268	100.0	1,671	100.0	1,347	100.0	7.6	6.2
서울	287	18.5	268	21.1	300	18.0	272	20.2	4.5	1.5
인천	97	6.2	84	6.6	102	6.1	87	6.5	5.2	3.6
경기	351	22.6	306	24.1	379	22.7	329	24.4	8.0	7.5
대구	69	4.4	56	4.4	69	4.1	58	4.3	0.0	3.6
경북	73	4.7	54	4.3	73	4.4	55	4.1	0.0	1.9
부산	106	6.8	83	6.5	113	6.8	93	6.9	6.6	12.0
경남	77	5.0	51	4.0	85	5.1	60	4.5	10.4	17.6
울산	33	2.1	21	1.7	43	2.6	33	2.4	30.3	57.1
광주	45	2.9	34	2.7	45	2.7	36	2.7	0.0	5.9
전남	64	4.1	50	3.9	63	3.8	49	3.6	-1.6	-2.0
전북	53	3.4	39	3.1	53	3.2	40	3.0	0.0	2.6
대전	47	3.0	39	3.1	46	2.8	38	2.8	-2.1	-2.6
세종	9	0.6	7	0.6	10	0.6	8	0.6	11.1	14.3
충남	70	4.5	56	4.4	70	4.2	55	4.1	0.0	-1.8
충북	45	2.9	34	2.7	46	2.8	35	2.6	2.2	2.9
강원	54	3.5	40	3.2	56	3.4	40	3.0	3.7	0.0
제주	17	1.1	9	0.7	17	1.0	9	0.7	0.0	0.0
기타	56	3.6	37	2.9	101	6.0	50	3.7	80.4	35.1

6) 월별(실제 근로 발생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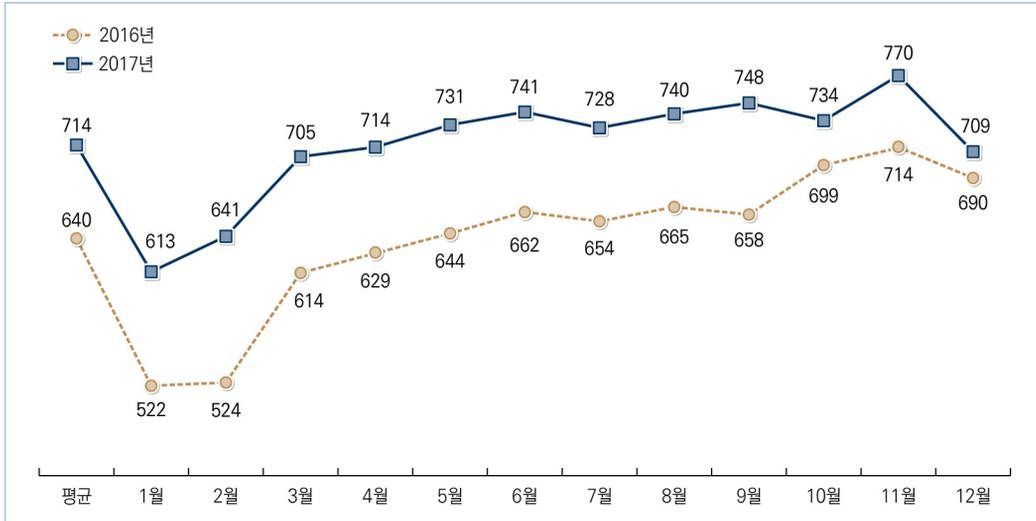
2017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월별 추이(실제 근로 발생일 기준)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월평균 714,469명과 11,923천일인데, 대체로 11월(770,395명과 13,302천일), 9월(748,108명과 12,835천일), 6월(740,532명과 12,541천일)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1월(612,882명과 9,697천일)과 2월(640,995명과 10,547천일)에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옥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매월 일하는 근로자는 동일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1인당 월별 적립일수의 연간 평균은 16.7일인데, 3월 17.6일, 11월 17.3일, 5월과 9월 17.2일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10월 15.4일, 1월 15.8일 등의 순으로 적었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2월 22.4%, 1월 17.4%, 3월 14.7%, 9월 13.7%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2월 39.9%, 9월 26.9%, 3월 18.0% 순으로 증가가 큰 반면, 10월과 12월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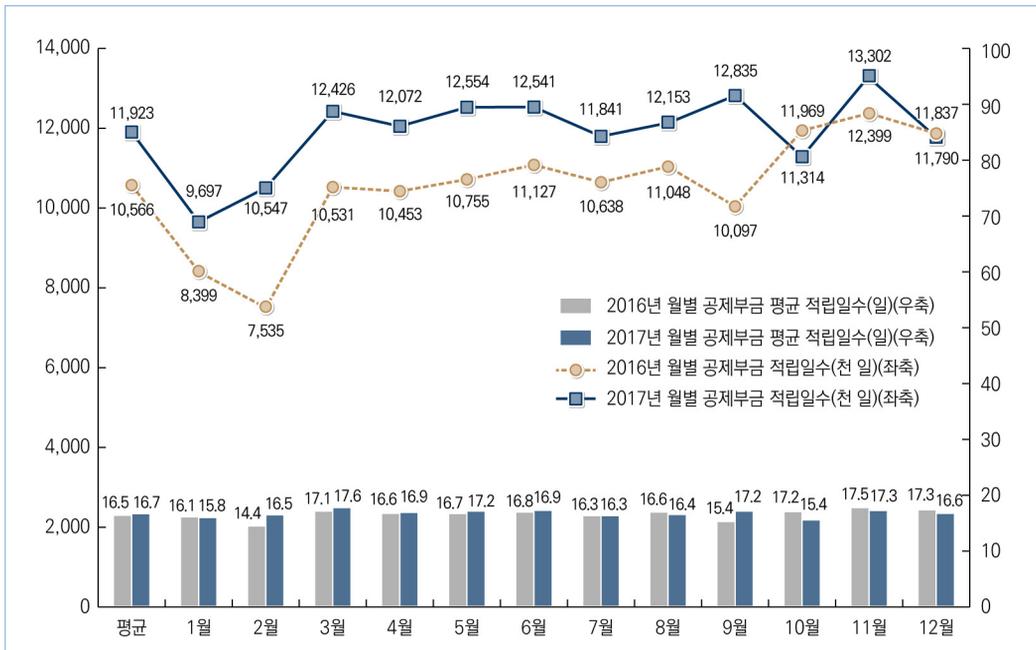
〈그림 29〉 월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단위 : 천 명)



주: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그림 30〉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주: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표 54〉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 (명)	적립일수 (천일)	적립근로자 (명)	적립일수 (천일)	적립근로자 (%)	적립일수 (%)
평균	639,646	10,586	714,469	11,923	11.7	12.6
1월	522,208	8,402	612,882	9,697	17.4	15.4
2월	523,608	7,538	640,995	10,547	22.4	39.9
3월	614,342	10,535	704,556	12,426	14.7	18.0
4월	628,506	10,456	714,083	12,072	13.6	15.4
5월	644,317	10,760	730,897	12,554	13.4	16.7
6월	662,348	11,136	740,532	12,541	11.8	12.6
7월	654,173	10,648	727,501	11,841	11.2	11.2
8월	665,102	11,061	740,238	12,153	11.3	9.9
9월	657,860	10,115	748,108	12,835	13.7	26.9
10월	699,364	12,008	734,210	11,314	5.0	-5.8
11월	714,166	12,467	770,395	13,302	7.9	6.7
12월	689,756	11,902	709,236	11,790	2.8	-0.9

주: 월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와 위에서 기술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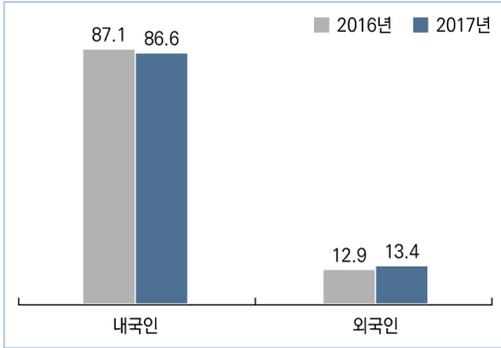
7) 내·외국인별

2017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내·외국인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86.6%(1,447,453명)과 외국인 13.4%(223,836명) 그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내국인 85.2%(114,818,171일)과 외국인 14.8%(19,915,953일)로 나타나, 외국인의 적립일수 비중이 적립근로자수 비중에 비해 더 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외국인은 각각 11.8%와 8.0%, 내국인은 6.8%와 6.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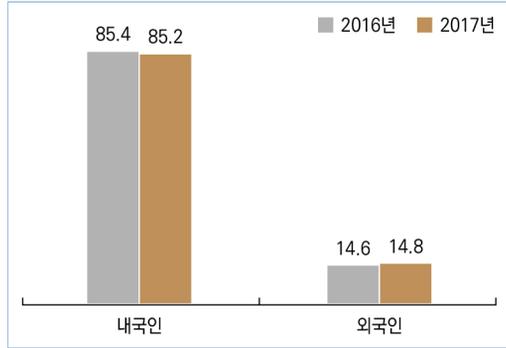
〈그림 31〉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단위 : %)



〈그림 32〉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단위 : %)



〈표 55〉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554,985	100.0	1,671,289	100.0	
	적립일수(일, %)	126,788,666	100.0	134,734,124	100.0	6.3
내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1,354,774	87.1	1,447,453	86.6	6.8
	적립일수(일, %)	108,339,910	85.4	114,818,171	85.2	6.0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200,211	12.9	223,836	13.4	11.8
	적립일수(일, %)	18,448,756	14.6	19,915,953	14.8	8.0

나. 신규 가입 피공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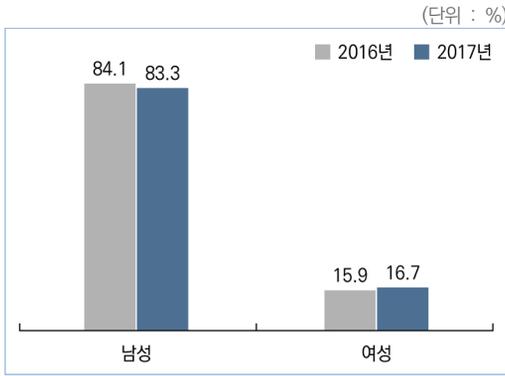
2017년의 신규 가입 적립근로자수는 443,636명으로서 2016년의 376,679명에 비해 17.8%가 증가했고, 적립일수는 23,573,636일로 전년도의 19,802,264일 대비 19.0% 증가했다.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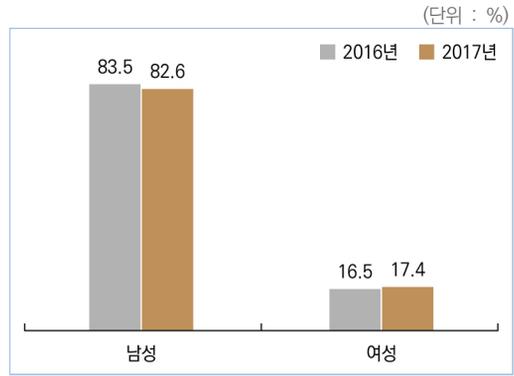
2017년도 신규 가입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3.3%(369,333명), 여성 16.7%(74,303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82.6%(19,465,181일), 여성 17.4%(4,108,455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의 순으로 남성의 경우 16.6%와 17.8%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23.9%와 25.5% 증가했다.

〈그림 33〉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4〉 성별 신규 적립일수



〈표 56〉 신규 가입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76,679	100.0	443,636	100.0	17.8
	적립일수(일, %)	19,802,264	100.0	23,573,636	100.0	19.0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316,721	84.1	369,333	83.3	16.6
	적립일수(일, %)	16,529,217	83.5	19,465,181	82.6	17.8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59,958	15.9	74,303	16.7	23.9
	적립일수(일, %)	3,273,047	16.5	4,108,455	17.4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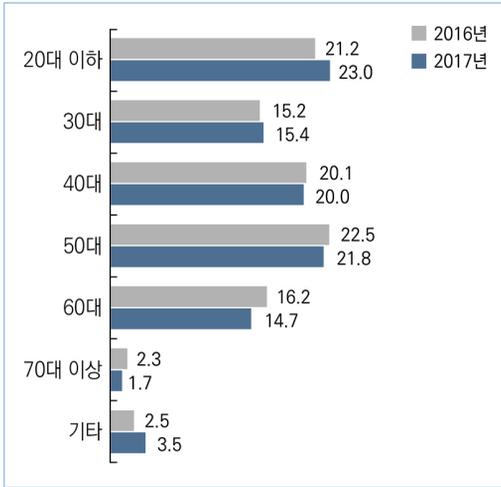
2) 연령별

2017년도 신규 가입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20대 이하 23.0%(101,855명), 50대 21.8%(96,766명), 40대 20.0%(88,741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50대 23.0%(5,433,645일), 40대 21.8%(5,143,139일), 20대 이하 17.5%(4,135,10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20대 이하(27.8%, 36.1%), 30대(19.3%, 22.7%) 그리고 40대(17.5%, 20.4%) 등의 증가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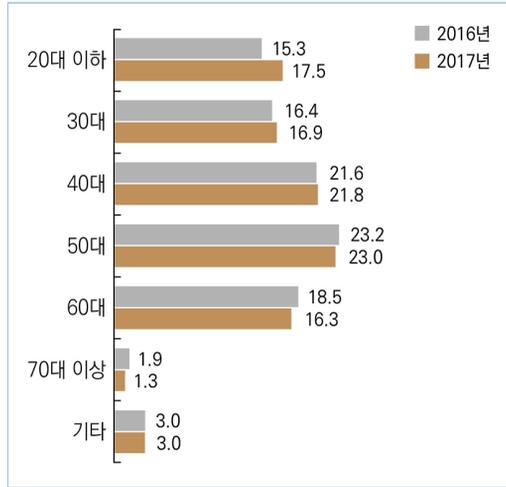
〈그림 35〉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단위 : %)



〈그림 36〉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일수

(단위 : %)



〈표 57〉 신규 가입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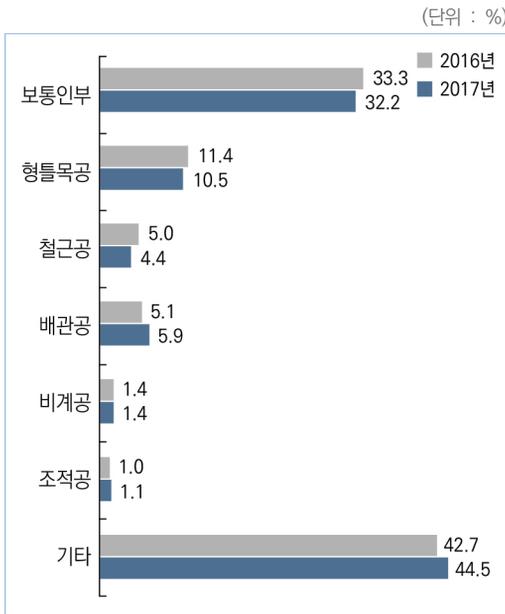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76,679	100.0	443,636	100.0	17.8
	적립일수(일, %)	19,802,264	100.0	23,573,636	100.0	19.0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79,681	21.2	101,855	23.0	27.8
	적립일수(일, %)	3,039,385	15.3	4,135,104	17.5	36.1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57,366	15.2	68,434	15.4	19.3
	적립일수(일, %)	3,245,928	16.4	3,981,982	16.9	22.7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75,528	20.1	88,741	20.0	17.5
	적립일수(일, %)	4,270,866	21.6	5,143,139	21.8	20.4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84,819	22.5	96,766	21.8	14.1
	적립일수(일, %)	4,601,489	23.2	5,433,645	23.0	18.1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61,059	16.2	65,104	14.7	6.6
	적립일수(일, %)	3,665,401	18.5	3,849,596	16.3	5.0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8,757	2.3	7,377	1.7	-15.8
	적립일수(일, %)	376,711	1.9	312,775	1.3	-17.0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9,469	2.5	15,359	3.5	62.2
	적립일수(일, %)	602,484	3.0	717,395	3.0	19.1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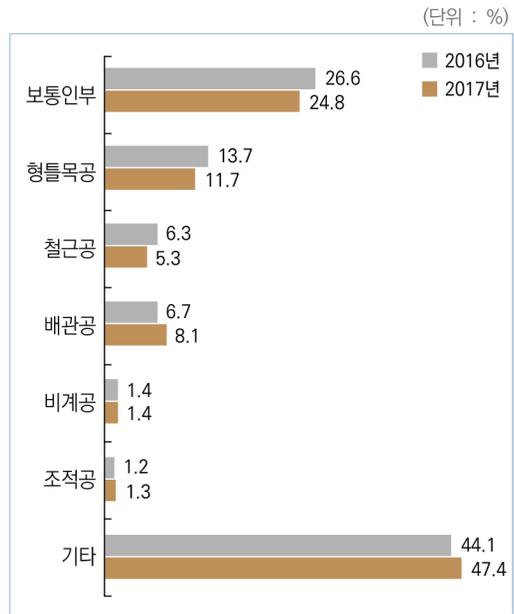
2017년도 신규 가입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32.2%(142,753명), 형틀목공 10.5%(46,768명), 배관공 5.9%(26,116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4.8% (5,840,209일), 형틀목공 11.7%(2,763,307일), 배관공 8.1%(1,916,29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배관공(35.0%), 조적공(22.3%), 비계공(18.3%)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배관공(43.5%), 조적공(25.9%), 비계공(23.4%) 순으로 증가가 컸다.

〈그림 37〉 직종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8〉 직종별 신규 적립일수



〈표 58〉 신규 가입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76,679	100.0	443,636	100.0	17.8
	적립일수(일, %)	19,802,264	100.0	23,573,636	100.0	19.0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125,451	33.3	142,753	32.2	13.8
	적립일수(일, %)	5,269,527	26.6	5,840,209	24.8	10.8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42,998	11.4	46,768	10.5	8.8
	적립일수(일, %)	2,713,647	13.7	2,763,307	11.7	1.8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18,963	5.0	19,703	4.4	3.9
	적립일수(일, %)	1,241,839	6.3	1,247,647	5.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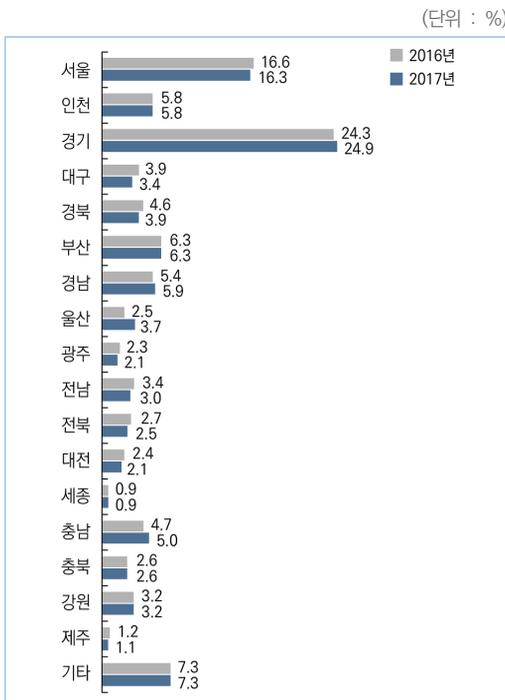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19,345	5.1	26,116	5.9	35.0
	적립일수(일, %)	1,335,534	6.7	1,916,294	8.1	43.5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5,150	1.4	6,092	1.4	18.3
	적립일수(일, %)	272,429	1.4	336,107	1.4	23.4
조적공	적립근로자수(명, %)	3,885	1.0	4,750	1.1	22.3
	적립일수(일, %)	238,171	1.2	299,937	1.3	25.9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160,887	42.7	197,454	44.5	22.7
	적립일수(일, %)	8,731,117	44.1	11,170,135	47.4	27.9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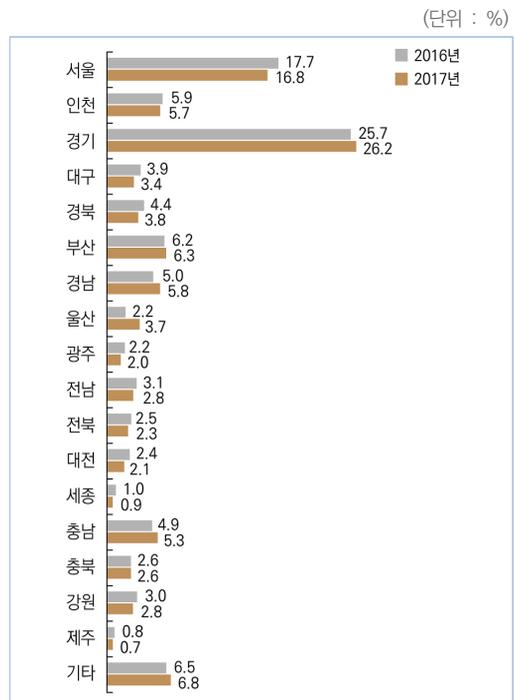
2017년도 신규 가입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24.9%(110,537명), 서울 16.3%(72,169명), 부산 6.3%(27,729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경기 26.2%(618만 일), 서울 16.8%(397만 일), 부산 6.3%(148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 모두 울산(76.1%, 104.7%), 경남(28.8%, 37.4%), 충남(25.9%, 28.9%)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그림 39〉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40〉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표 59〉 신규 가입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근로자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 근로자 (%)	적립 일수 (%)
계	376,679	100.0	1,980	100.0	443,636	100.0	2,357	100.0	17.8	19.0
서울	62,516	16.6	351	17.7	72,169	16.3	397	16.8	15.4	13.1
인천	21,717	5.8	117	5.9	25,511	5.8	134	5.7	17.5	14.5
경기	91,432	24.3	508	25.7	110,537	24.9	618	26.2	20.9	21.7
대구	14,538	3.9	77	3.9	14,894	3.4	79	3.4	2.4	2.6
경북	17,166	4.6	88	4.4	17,424	3.9	89	3.8	1.5	1.1
부산	23,812	6.3	122	6.2	27,729	6.3	148	6.3	16.4	21.3
경남	20,397	5.4	99	5.0	26,274	5.9	136	5.8	28.8	37.4
울산	9,316	2.5	43	2.2	16,410	3.7	88	3.7	76.1	104.7
광주	8,769	2.3	44	2.2	9,324	2.1	48	2.0	6.3	9.1
전남	2,700	3.4	61	3.1	13,367	3.0	66	2.8	5.3	8.2
전북	9,997	2.7	50	2.5	11,159	2.5	55	2.3	11.6	10.0
대전	9,012	2.4	48	2.4	9,531	2.1	49	2.1	5.8	2.1
세종	3,514	0.9	19	1.0	4,030	0.9	22	0.9	14.7	15.8
충남	17,791	4.7	97	4.9	22,398	5.0	125	5.3	25.9	28.9
충북	9,881	2.6	52	2.6	11,733	2.6	61	2.6	18.7	17.3
강원	11,940	3.2	59	3.0	14,098	3.2	65	2.8	18.1	10.2
제주	4,540	1.2	16	0.8	4,805	1.1	17	0.7	5.8	6.3
기타	27,641	7.3	129	6.5	32,243	7.3	160	6.8	16.6	24.0

다. 외국인 피공제자

2017년의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는 223,836명으로서 2016년의 200,211명에 비해 11.8%가 증가했고, 적립일수는 19,915,953일로 전년도의 18,448,756일 대비 8.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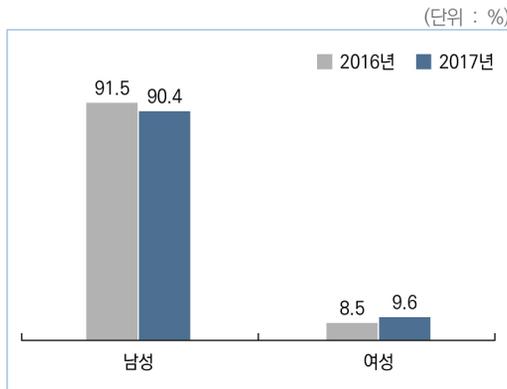
1) 성별

2017년도 외국인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90.4%(202,304명), 여성 9.6%(21,532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91.2%(18,159,861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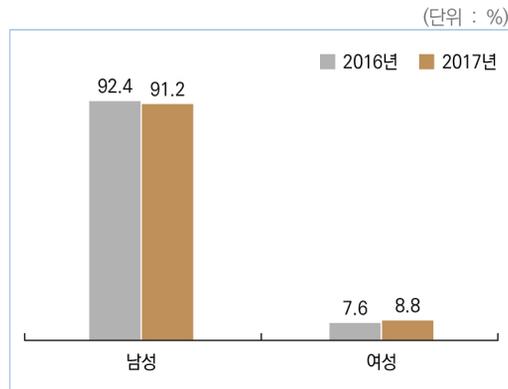
8.8%(1,756,092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적립근로자수의 비중에 비해 적립일수의 비중이 미미하나마 더 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10.5%와 여성 25.9% 증가했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6.5%와 여성 25.2% 증가했다.

〈그림 41〉 성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2〉 성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60〉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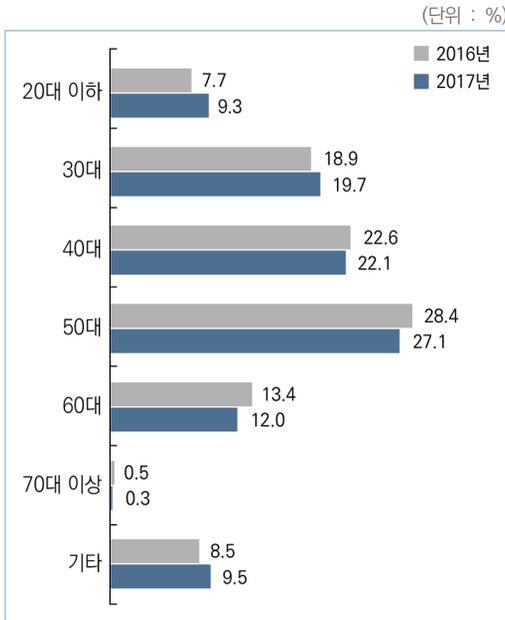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200,211	100	223,836	100	11.8
	적립일수(일, %)	18,448,756	100	19,915,953	100	8.0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183,109	91.5	202,304	90.4	10.5
	적립일수(일, %)	17,045,869	92.4	18,159,861	91.2	6.5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17,102	8.5	21,532	9.6	25.9
	적립일수(일, %)	1,402,887	7.6	1,756,092	8.8	25.2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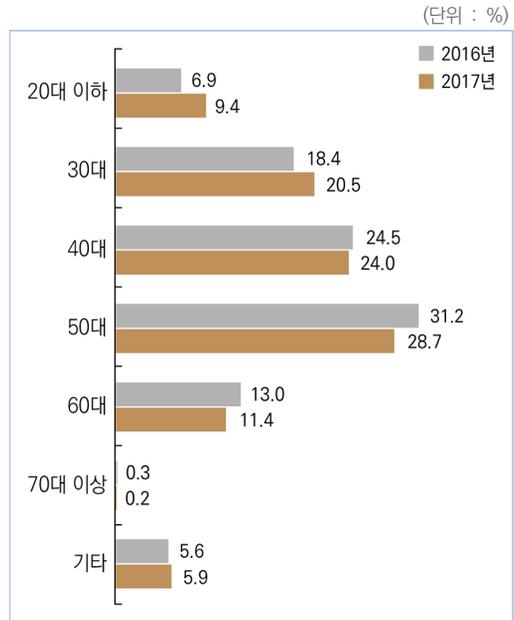
2017년도 외국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50대 27.1%(60,593명), 40대 22.1%(49,545명), 30대 19.7%(44,002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에도 역시 50대 28.7%(5,712,427일), 40대 24.0%(4,777,005일), 30대 20.5%(4,074,01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 60대가 아닌 30대가 위치한다는 점이 내국인과 다른 점이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20대 이하(35.0%, 45.6%), 30대(16.4%, 19.9%) 그리고 40대(9.3%, 5.5%) 등의 증가가 컸다.

〈그림 43〉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4〉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61〉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200,211	100.0	223,836	100.0	11.8
	적립일수(일, %)	18,448,756	100.0	19,915,953	100.0	8.0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15,407	7.7	20,794	9.3	35.0
	적립일수(일, %)	1,278,995	6.9	1,862,433	9.4	45.6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37,814	18.9	44,002	19.7	16.4
	적립일수(일, %)	3,398,569	18.4	4,074,014	20.5	19.9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45,319	22.6	49,545	22.1	9.3
	적립일수(일, %)	4,526,838	24.5	4,777,005	24.0	5.5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56,802	28.4	60,593	27.1	6.7
	적립일수(일, %)	5,752,319	31.2	5,712,427	28.7	-0.7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26,891	13.4	26,866	12.0	-0.1
	적립일수(일, %)	2,404,236	13.0	2,276,239	11.4	-5.3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979	0.5	769	0.3	-21.5
	적립일수(일, %)	54,831	0.3	44,786	0.2	-18.3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16,999	8.5	21,267	9.5	25.1
	적립일수(일, %)	1,032,968	5.6	1,169,049	5.9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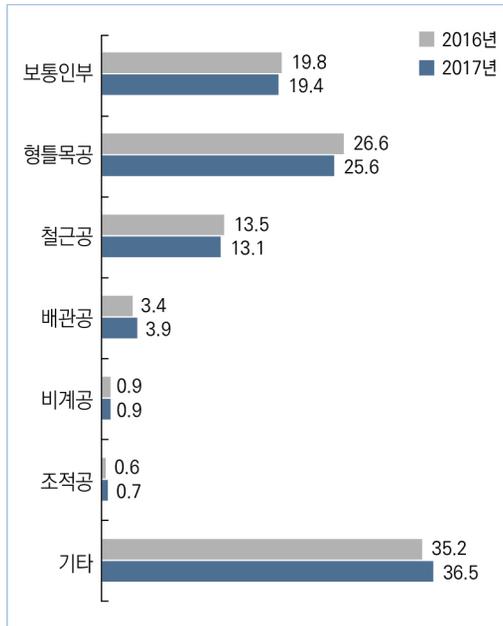
3) 직종별

2017년도 외국인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형틀목공 25.6%(57,308명), 보통인부 19.4%(43,489명), 철근공 13.1%(29,232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형틀목공 25.5% (5,070,520일), 철근공 16.1%(3,214,863일), 보통인부 15.9%(3,164,792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조적공(34.8%), 배관공(25.9%), 보통인부(9.9%)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조적공(31.4%), 배관공(24.5%), 보통인부(8.8%) 순으로 증가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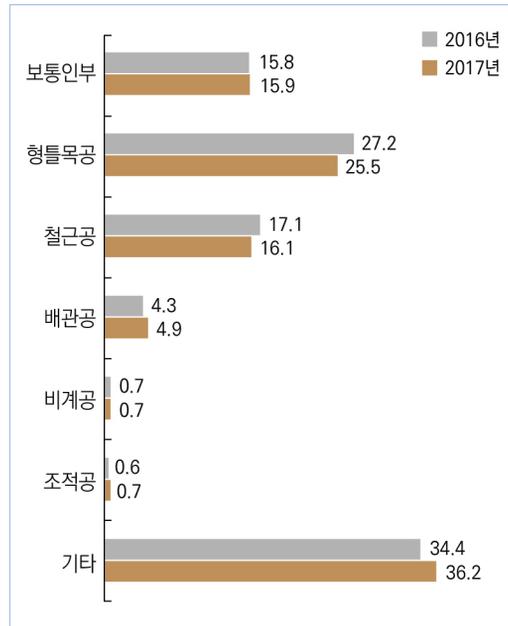
〈그림 45〉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단위 : %)



〈그림 46〉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단위 : %)



〈표 62〉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200,211	100.0	223,836	100.0	11.8
	적립일수(일, %)	18,448,756	100.0	19,915,953	100.0	8.0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39,554	19.8	43,489	19.4	9.9
	적립일수(일, %)	2,909,614	15.8	3,164,792	15.9	8.8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53,338	26.6	57,308	25.6	7.4
	적립일수(일, %)	5,017,973	27.2	5,070,520	25.5	1.0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27,032	13.5	29,232	13.1	8.1
	적립일수(일, %)	3,151,854	17.1	3,214,863	16.1	2.0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6,897	3.4	8,686	3.9	25.9
	적립일수(일, %)	791,242	4.3	984,713	4.9	24.5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1,749	0.9	1,914	0.9	9.4
	적립일수(일, %)	130,784	0.7	130,649	0.7	-0.1
조적공	적립근로자수(명, %)	1,184	0.6	1,596	0.7	34.8
	적립일수(일, %)	109,382	0.6	143,690	0.7	31.4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70,457	35.2	81,611	36.5	15.8
	적립일수(일, %)	6,337,907	34.4	7,206,726	36.2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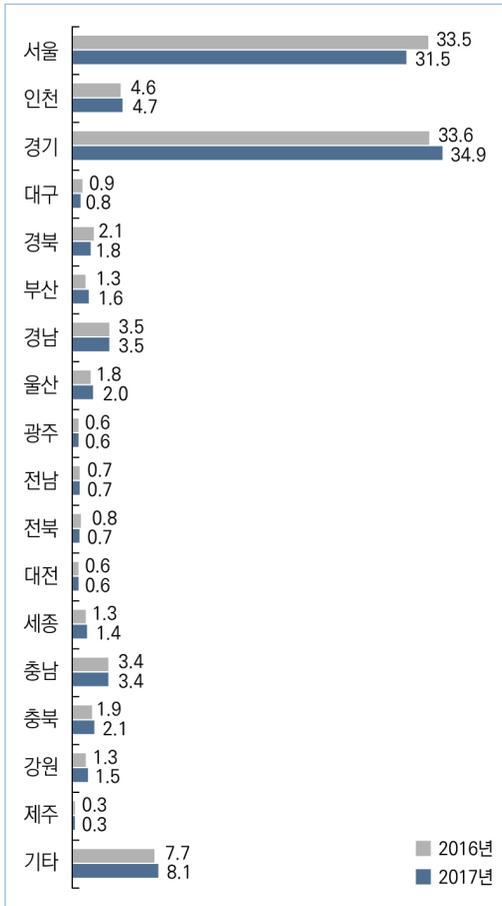
4) 지역별

2017년도 외국인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34.9%(78,047명), 서울 31.5%(70,435명), 인천 4.7%(10,492명), 경남 3.5%(7,7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서울 35.2%(701만일), 경기 33.9%(675만일), 인천 4.9%(98만일), 경남 3.3%(65만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강원(35.4%), 부산(28.7%), 충북(22.9%)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강원(27.3%), 울산(25.9%), 경남(25.0%), 제주(25.0%)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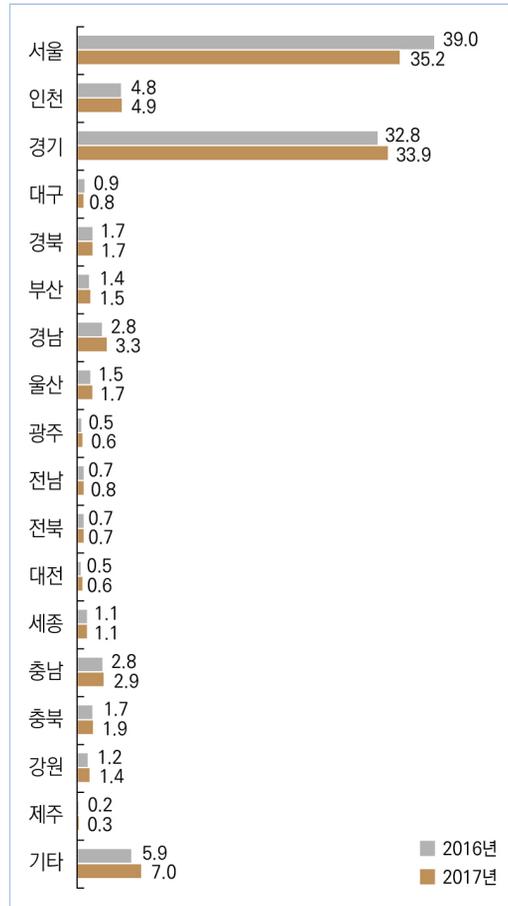
〈그림 47〉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단위 : %)



〈그림 48〉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단위 : %)



〈표 63〉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 일수 (%)				
계	200,211	100.0	1,845	100.0	223,836	100.0	1,992	100.0	11.8	8.0
서울	66,991	33.5	719	39.0	70,435	31.5	701	35.2	5.1	-2.5
인천	9,182	4.6	88	4.8	10,492	4.7	98	4.9	14.3	11.4
경기	67,347	33.6	605	32.8	78,047	34.9	675	33.9	15.9	11.6
대구	1,839	0.9	16	0.9	1,680	0.8	15	0.8	-8.6	-6.3
경북	4,131	2.1	32	1.7	3,961	1.8	34	1.7	-4.1	6.3
부산	2,699	1.3	25	1.4	3,473	1.6	30	1.5	28.7	20.0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 일수 (%)
경남	7,030	3.5	52	2.8	7,741	3.5	65	3.3	10.1	25.0
울산	3,644	1.8	27	1.5	4,415	2.0	34	1.7	21.2	25.9
광주	1,160	0.6	9	0.5	1,375	0.6	11	0.6	18.5	22.2
전남	1,397	0.7	13	0.7	1,673	0.7	15	0.8	19.8	15.4
전북	1,537	0.8	12	0.7	1,577	0.7	14	0.7	2.6	16.7
대전	1,250	0.6	10	0.5	1,340	0.6	11	0.6	7.2	10.0
세종	2,685	1.3	20	1.1	3,140	1.4	22	1.1	16.9	10.0
충남	6,896	3.4	51	2.8	7,550	3.4	57	2.9	9.5	11.8
충북	3,903	1.9	31	1.7	4,798	2.1	38	1.9	22.9	22.6
강원	2,535	1.3	22	1.2	3,432	1.5	28	1.4	35.4	27.3
제주	621	0.3	4	0.2	591	0.3	5	0.3	-4.8	25.0
기타	15,364	7.7	109	5.9	18,116	8.1	139	7.0	17.9	27.5

3. 공제부금 납부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납부사업장 수와 납부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는 시점이 2009년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공제부금의 인상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 16,784개소이던 사업장 수가 2009년에는 24,497개소로 전년 대비 46.0%가 증가했고, 동 시기에 납부액은 2,004억 원에서 2,748억 원으로 37.1%가 급증했다. 2013년 이후에는 건설기성의 증가에 따라 납부사업장과 납부액이 동반 증가했고 2017년에는 각각 34,763개소와 6,042억 원에 이르렀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누계는 각각 329,956개소와 4조 5,565억 원이고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380만원이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998년의 310만원에서 시작해 2000년에는 2,480만원까지 상승했으나,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소규모 현장으로까지 당연가입 적용범위의 확대와 경기부진의 여파 등이 겹치면서 2011년에는 1,070만원까지 감소했고, 다시 제도의 정착과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1,740만원에 이르렀다.

〈그림 49〉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7)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표 64〉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7)

연도	납부사업장(개소) (A)	납부액(억 원) (B)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B/A)
총합계	329,956	45,565	13.8
1998	32	1	3.1
1999	443	72	16.3
2000	1,074	266	24.8
2001	1,661	409	24.6
2002	2,352	470	20.0
2003	3,296	694	21.0
2004	5,808	1,115	19.2
2005	10,035	1,362	13.6
2006	11,192	1,337	11.9
2007	13,113	1,658	12.6
2008	16,784	2,004	11.9
2009	24,497	2,748	11.2
2010	23,854	2,795	11.7
2011	26,641	2,848	10.7
2012	30,513	3,431	11.2
2013	31,031	4,220	13.6
2014	29,762	4,442	14.9
2015	30,505	4,537	14.9
2016	32,600	5,114	15.7
2017	34,763	6,042	17.4

기본 특성별 분포

2017년의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34,763개소로서 2016년의 32,600개소에 비해 6.6%가 증가했고, 납부액은 6,042억 원으로 전년도의 5,114억 원 대비 18.1% 증가했으며,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7.4억 원으로 전년도의 15.7억 원 대비 10.8% 증가했다.

1) 공사유형별(공공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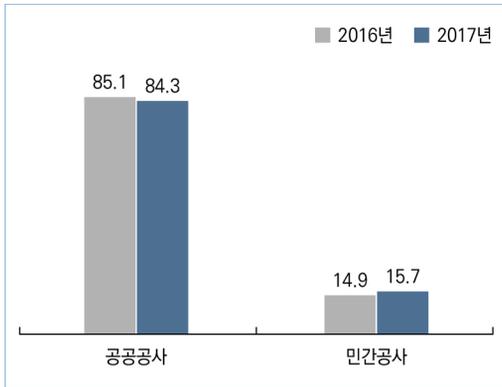
2017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공공공사 84.3%(29,296개소), 민간공사 15.7%(5,467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민간공사 71.8%(4,340억 원), 공공공사 28.2%(1,702억 원)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의 경우 납부사업장은 많으나 납부액이 적은 것은 당연가입 적용범위 공사의 규모가 3억 원 이상으로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에 비해 소규모 현장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공공공사의 경우 580만 원인데 비해, 민간공사의 경우 7,940만 원으로 후자가 10배 이상 많았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납부사업장과 납부액이 민간공사의 경우 각각 12.7%와 29.7%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공사의 경우 사업장은 5.6% 증가했지만 납부액은 3.7% 감소했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 역시 민간공사의 경우 15.0% 증가한 반면, 공공공사의 경우 8.8%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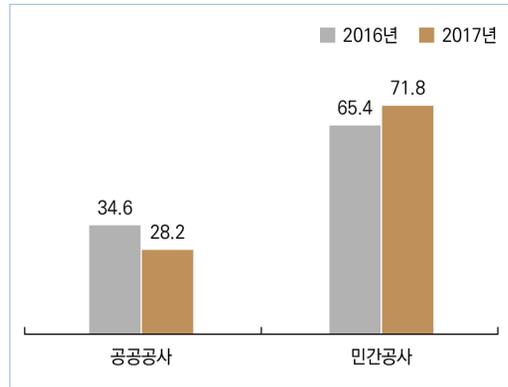
〈그림 50〉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단위 : %)



〈그림 51〉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액

(단위 : %)



〈표 65〉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32,600	100.0	34,763	100.0	6.6
	납부액(억 원, %)	5,114	100.0	6,042	100.0	18.1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5.7		17.4		10.8
공공공사	납부사업장(개소, %)	27,751	85.1	29,296	84.3	5.6
	납부액(억 원, %)	1,768	34.6	1,702	28.2	-3.7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6.4		5.8		-8.8
민간공사	납부사업장(개소, %)	4,849	14.9	5,467	15.7	12.7
	납부액(억 원, %)	3,346	65.4	4,340	71.8	29.7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69.0		79.4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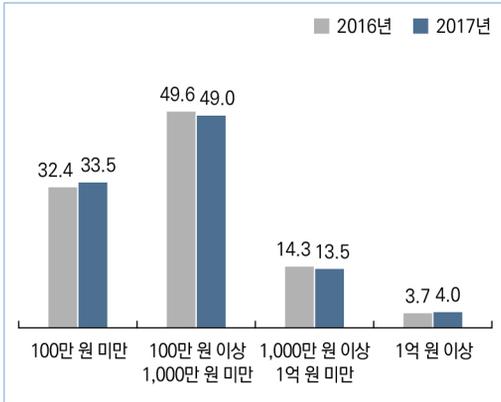
2) 납부액 규모별

2017년도 퇴직공제부금의 납부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9.0%(17,034개소), 100만 원 미만 33.5%(11,647개소),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3.5%(4,684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1억 원 이상 64.7%(3,910억 원),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5.2%(1,525억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9.2%(553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억 원 이상 2억 7,950만 원,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260만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2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납부사업장의 경우 1억 원 이상(16.3%), 100만 원 미만(10.2%),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5.4%)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전체 납부액의 경우 1억 원 이상(29.3%), 100만 원 미만(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5.7%) 등에서 증가했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1억 원 이상(11.2%)에서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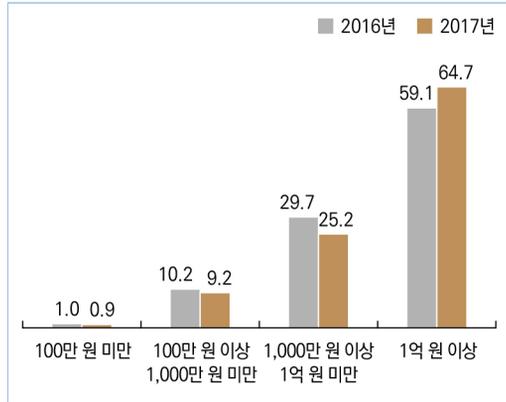
〈그림 52〉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단위 : %)



〈그림 53〉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단위 : %)



〈표 66〉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32,600	100.0	34,764	100.0	6.6
	납부액(억 원, %)	5,114	100.0	6,042	100.0	18.1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5.7		17.4		10.8
100만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0,572	32.4	11,647	33.5	10.2
	납부액(억 원, %)	50	1.0	54	0.9	8.0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0.5		0.5		-2.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6,168	49.6	17,034	49.0	5.4
	납부액(억 원, %)	523	10.2	553	9.2	5.7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2		3.2		0.4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4,657	14.3	4,684	13.5	0.6
	납부액(억 원, %)	1,518	29.7	1,525	25.2	0.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2.6		32.6		-0.1
1억 원 이상	납부사업장(개소, %)	1,203	3.7	1,399	4.0	16.3
	납부액(억 원, %)	3,023	59.1	3,910	64.7	29.3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51.3		279.5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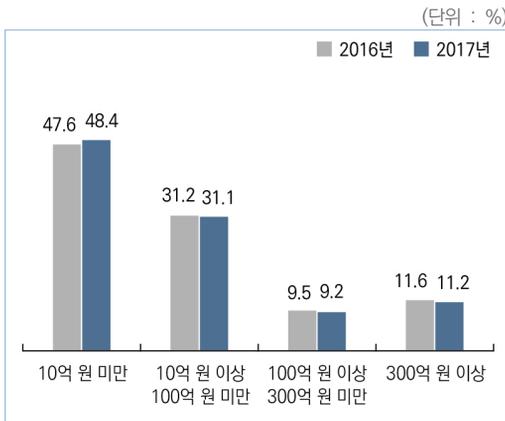
3) 공사규모별

2017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억 원 미만 48.4%(16,841개소),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31.1%(10,823개소), 300억 원 이상 11.2%(3,885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300억 원 이상 75.7%(4,575억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1.6%(703억 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8.9%(535억 원)로 나타났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개수는 많으나 납부액은 적다. 이것은 사업장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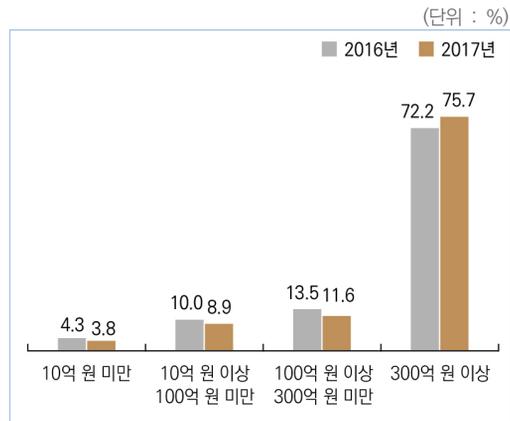
평균 납부액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300억 원 이상 1억 1,780만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190만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90만원 등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억 원 미만(8.5%),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6.3%),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3.4%)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전체 납부액의 경우 300억 원 이상(23.9%), 10억 원 미만(5.0%),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4.7%)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의 경우 증가했으나, 그 이외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그림 54〉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5〉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7〉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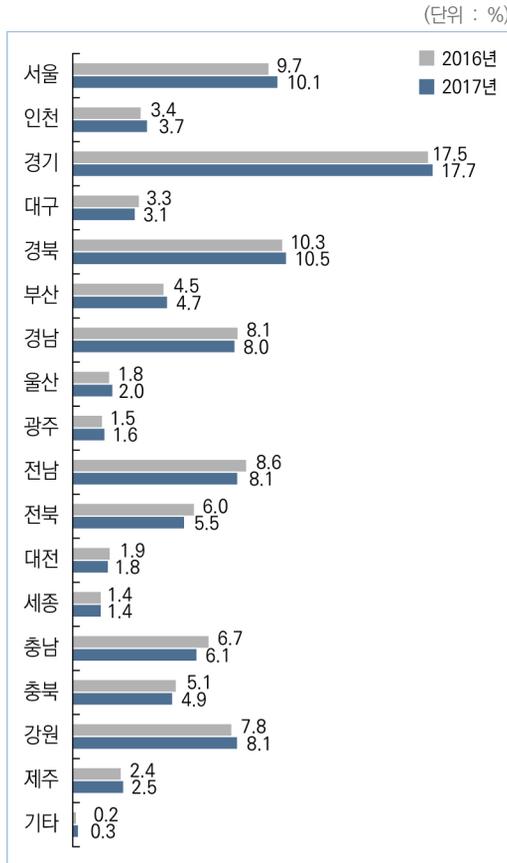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32,600	100.0	34,763	100.0	6.6
	납부액(억 원, %)	5,114	100.0	6,043	100.0	18.2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5.7		17.4		10.8
1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5,523	47.6	16,841	48.4	8.5
	납부액(억 원, %)	219	4.3	230	3.8	5.0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4		1.4		-3.2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0,178	31.2	10,823	31.1	6.3
	납부액(억 원, %)	511	10.0	535	8.9	4.7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5.0		4.9		-1.5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3,108	9.5	3,214	9.2	3.4
	납부액(억 원, %)	692	13.5	703	11.6	1.6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2.3		21.9		-1.8
300억 원 이상	납부사업장(개소, %)	3,791	11.6	3,885	11.2	2.5
	납부액(억 원, %)	3,692	72.2	4,575	75.7	23.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97.4		117.8		20.9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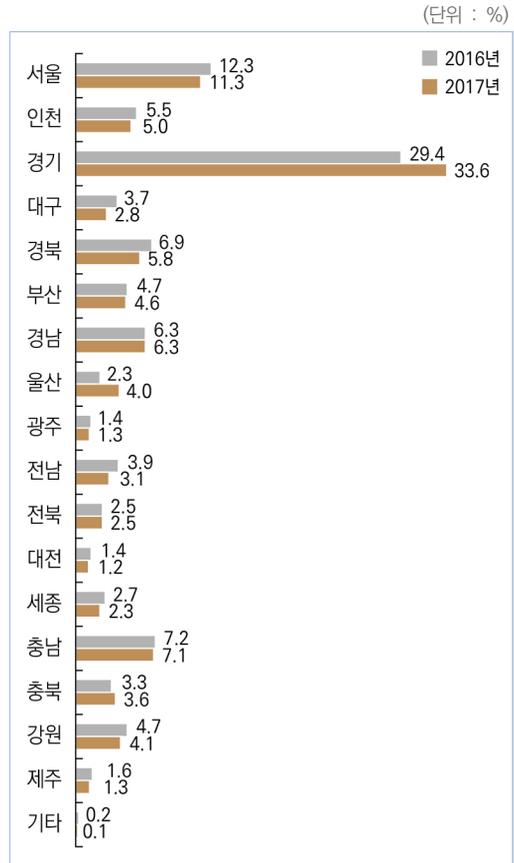
2017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경기 17.7%(6,138개소), 경북 10.5%(3,634개소), 서울 10.1%(3,506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경기 33.6%(2,030억 원), 서울 11.3%(680억 원), 충남 7.1%(43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순위는 달라지는데, 울산 3,380만 원, 경기 3,310만 원, 세종 2,79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울산(20.1%), 인천(17.1%), 광주(13.7%)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납부액의 경우 울산(100.0%), 경기(35.3%), 충북(29.4%)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울산(66.5%), 경기(25.5%), 충북(24.7%)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그림 56〉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7〉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8〉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 (개소, %)		납부액 (십억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사업장 (개소, %)		납부액 (십억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 사업장 (%)	납부액 (%)	평균 납부액 (%)
계	32,600	100.0	511	100.0	15.7	34,764	100.0	604	100.0	17.4	6.6	18.3	11.0
서울	3,178	9.7	63	12.3	19.8	3,506	10.1	68	11.3	19.4	10.3	7.9	-2.2
인천	1,113	3.4	28	5.5	25.2	1,303	3.7	30	5.0	23.0	17.1	7.1	-8.5
경기	5,693	17.5	150	29.4	26.3	6,138	17.7	203	33.6	33.1	7.8	35.3	25.5
대구	1,062	3.3	19	3.7	17.9	1,078	3.1	17	2.8	15.8	1.5	-10.5	-11.9
경북	3,343	10.3	35	6.9	10.5	3,634	10.5	35	5.8	9.6	8.7	0.0	-8.0
부산	1,480	4.5	24	4.7	16.2	1,620	4.7	28	4.6	17.3	9.5	16.7	6.6
경남	2,627	8.1	32	6.3	12.2	2,773	8.0	38	6.3	13.7	5.6	18.8	12.5
울산	592	1.8	12	2.3	20.3	711	2.0	24	4.0	33.8	20.1	100.0	66.5
광주	481	1.5	7	1.4	14.6	547	1.6	8	1.3	14.6	13.7	14.3	0.5
전남	2,797	8.6	20	3.9	7.2	2,812	8.1	19	3.1	6.8	0.5	-5.0	-5.5
전북	1,971	6.0	13	2.5	6.6	1,919	5.5	15	2.5	7.8	-2.6	15.4	18.5
대전	610	1.9	7	1.4	11.5	643	1.8	7	1.2	10.9	5.4	0.0	-5.1
세종	465	1.4	14	2.7	30.1	501	1.4	14	2.3	27.9	7.7	0.0	-7.2
충남	2,168	6.7	37	7.2	17.1	2,109	6.1	43	7.1	20.4	-2.7	16.2	19.5
충북	1,656	5.1	17	3.3	10.3	1,718	4.9	22	3.6	12.8	3.7	29.4	24.7
강원	2,537	7.8	24	4.7	9.5	2,803	8.1	25	4.1	8.9	10.5	4.2	-5.7
제주	776	2.4	8	1.6	10.3	855	2.5	8	1.3	9.4	10.2	0.0	-9.2
기타	51	0.2	0.8	0.2	15.7	94	0.3	0.4	0.1	4.3	84.3	-50.0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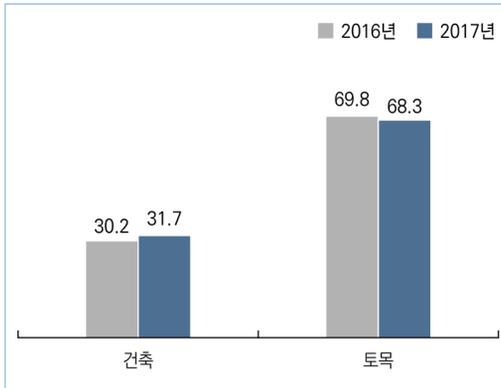
5) 공사종류별

2017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토목 68.3%(23,754개소), 건축 31.7%(11,009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건축 74.2% (4,486억 원), 토목 25.8%(1,557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건축 4,070만 원, 토목 660만 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이것은 양자 간의 퇴직공제제도 적용 범위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건축공사의 경우 당연가입 적용범위가 100억 원 이상인 민간공사가 많고, 토목공사의 경우 대개 적용범위가 3억 원 이상인 공공공사이기 때문이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과 납부액 모두 건축공사의 증가 (11.8%, 22.8%)가 컸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 역시 건축의 경우 9.9%, 토목의 경우 2.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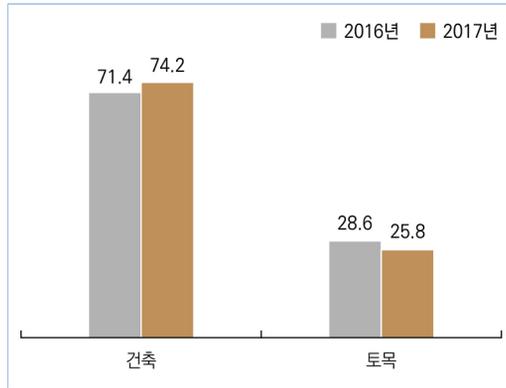
〈그림 58〉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단위 : %)



〈그림 5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단위 : %)



〈표 6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32,600	100.0	34,763	100.0	6.6
	납부액(억 원, %)	5,114	100.0	6,043	100.0	18.2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5.7		17.4		10.8
건축	납부사업장(개소, %)	9,851	30.2	11,009	31.7	11.8
	납부액(억 원, %)	3,652	71.4	4,486	74.2	22.8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7.1		40.7		9.9
토목	납부사업장(개소, %)	22,749	69.8	23,754	68.3	4.4
	납부액(억 원, %)	1,462	28.6	1,557	25.8	6.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6.4		6.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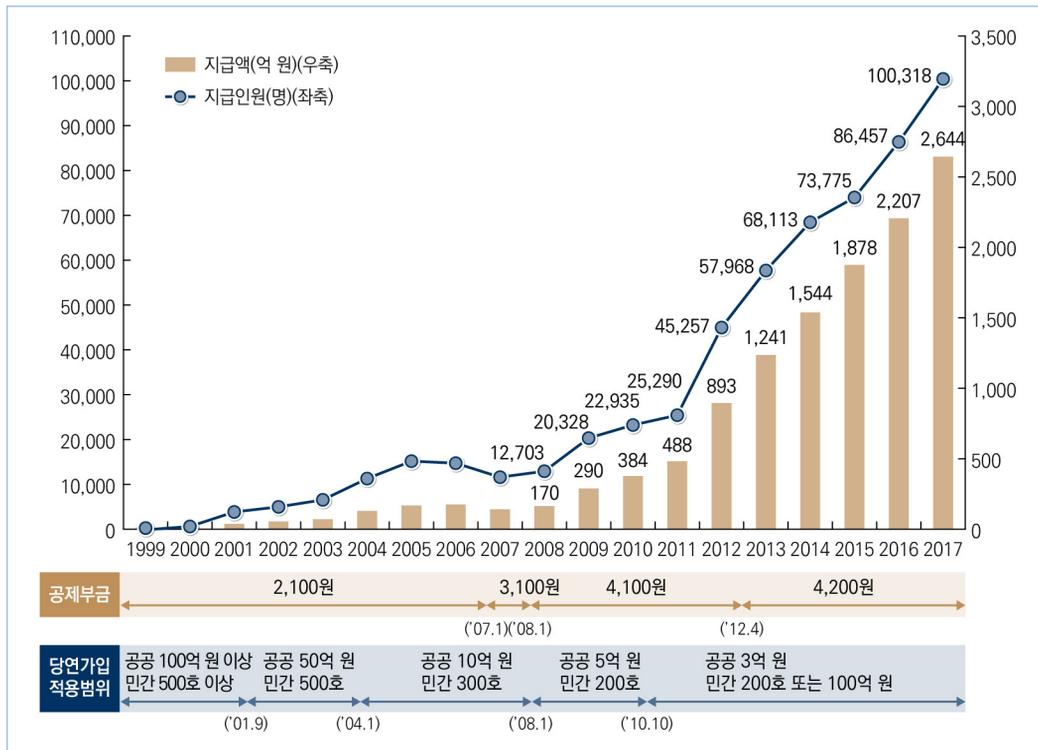
4. 퇴직공제금 지급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지급인원 수와 지급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는 시점이 2012년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로 근로내역 신고일수의 적립이 촉진된 것과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등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 25,290명이던 지급인원 수가 2012년에는 45,257명으로 전년 대비 79.0%가 증가했고, 동 시기에 지급액은 488억 원에서 893억 원으로 83.1%

가 급증했다. 2013년 이후에는 양자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2017년에는 각각 100,318명과 2,644억 원에 달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누계는 각각 581,946명과 1조 2,529억 원이고 퇴직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53천 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999년의 558천 원으로 시작해 2002년에는 1,045천 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2,141천 원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으며, 2017년에는 2,636천 원으로 상승했다.

〈그림 60〉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7)



〈표 70〉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7)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 원)	평균 지급액(천 원)
총합계	581,946	1,252,928	2,153
1999	3	2	558
2000	638	513	803
2001	3,836	3,600	938
2002	5,046	5,271	1,045
2003	6,621	7,332	1,107
2004	11,419	12,828	1,123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 원)	평균 지급액(천 원)
2005	15,044	17,177	1,142
2006	14,700	18,109	1,232
2007	11,495	14,395	1,252
2008	12,703	16,932	1,333
2009	20,328	28,997	1,426
2010	22,935	38,374	1,673
2011	25,290	48,753	1,928
2012	45,257	89,271	1,973
2013	57,968	124,087	2,141
2014	68,113	154,417	2,267
2015	73,775	187,767	2,545
2016	86,457	220,709	2,553
2017	100,318	264,394	2,636

특성별 분포

2017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100,318명으로서 2016년의 86,457명에 비해 16.0%가 증가했고, 지급액은 264,394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220,709백만 원 대비 19.8%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36천 원으로 전년도의 2,553천 원 대비 3.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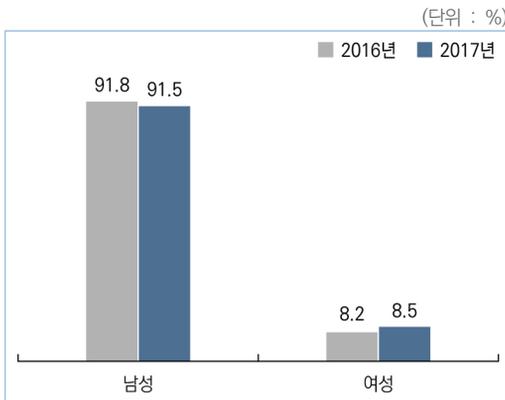
1) 성별

2017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남성 91.5%(91,840명), 여성 8.5%(8,478명)로 나타났고, 지급액의 경우 남성 92.9%(245,580백만 원), 여성 7.1%(18,814백만 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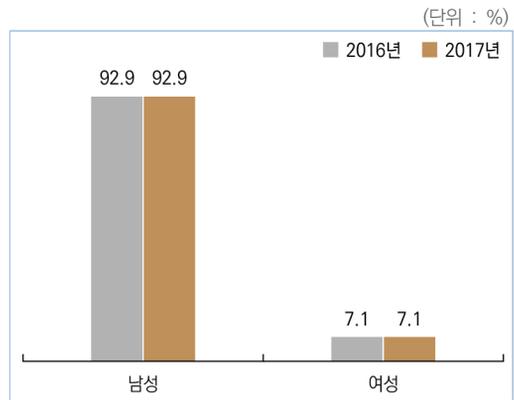
대체로 매년 남성이 차지하는 지급인원의 비중에 비해 지급액의 비중이 더 큰데, 이것은 남성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이 2,674천 원으로서 여성의 2,219천 원에 비해 455천 원 더 많은 데 기인한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남성의 경우(15.7%, 19.8%)보다 여성의 경우(19.6%, 20.3%) 증가율이 더 컸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증가율은 남성의 경우 3.5%로 여성의 경우 0.6%에 비해 더 컸다.

〈그림 61〉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2〉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1〉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86,457	100.0	100,318	100.0	16.0
	지급액(백만 원, %)	220,709	100.0	264,394	100.0	19.8
	평균 지급액(천 원)	2,553		2,636		3.2
남성	지급인원(명, %)	79,369	91.8	91,840	91.5	15.7
	지급액(백만 원, %)	205,068	92.9	245,580	92.9	19.8
	평균 지급액(천 원)	2,584		2,674		3.5
여성	지급인원(명, %)	7,088	8.2	8,478	8.5	19.6
	지급액(백만 원, %)	15,641	7.1	18,814	7.1	20.3
	평균 지급액(천 원)	2,207		2,219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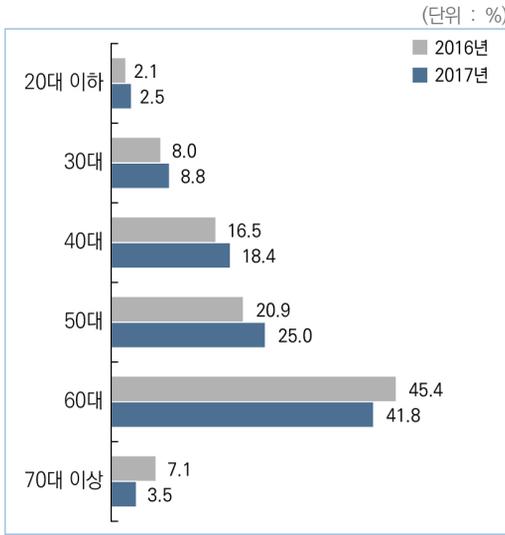
주: 2017년도의 경우 지급인원 1명, 지급액 2.8백만 원이 누락되었음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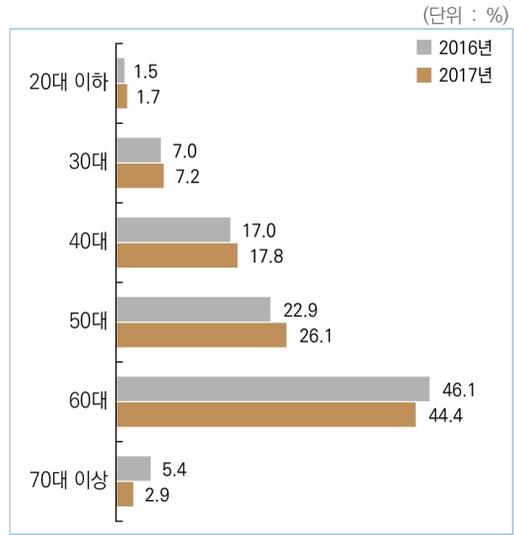
2017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60대 41.8% (41,916명), 50대 25.0%(25,062명), 40대 18.4%(18,414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에도 역시 60대 44.4%(117,429백만 원), 50대 26.1%(68,929백만 원), 40대 17.8% (46,964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달리, 연령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 역시 60대 2,802천 원, 50대 2,750천 원, 40대 2,550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20대 이하(40.3%, 37.0%)와 50대(38.7%, 36.1%)의 증가가 큰 반면, 70대 이상(-42.7%, -36.2%)은 줄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60대 이상에서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감소했다.

〈그림 63〉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4〉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2〉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86,457	100.0	100,318	100.0	16.0
	지급액(백만 원, %)	220,709	100.0	264,394	100.0	19.8
	평균 지급액(천 원)	2,553		2,636		3.2
20대	지급인원(명, %)	1,809	2.1	2,538	2.5	40.3
	지급액(백만 원, %)	3,284	1.5	4,499	1.7	37.0
	평균 지급액(천 원)	1,815		1,773		-2.4
30대	지급인원(명, %)	6,892	8.0	8,870	8.8	28.7
	지급액(백만 원, %)	15,445	7.0	18,975	7.2	22.9
	평균 지급액(천 원)	2,241		2,139		-4.5
40대	지급인원(명, %)	14,302	16.5	18,414	18.4	28.8
	지급액(백만 원, %)	37,627	17.0	46,964	17.8	24.8
	평균 지급액(천 원)	2,631		2,550		-3.1
50대	지급인원(명, %)	18,067	20.9	25,062	25.0	38.7
	지급액(백만 원, %)	50,638	22.9	68,929	26.1	36.1
	평균 지급액(천 원)	2,803		2,750		-1.9
60대	지급인원(명, %)	39,252	45.4	41,916	41.8	6.8
	지급액(백만 원, %)	101,799	46.1	117,429	44.4	15.4
	평균 지급액(천 원)	2,593		2,802		8.0
70대	지급인원(명, %)	6,135	7.1	3,518	3.5	-42.7
	지급액(백만 원, %)	11,916	5.4	7,598	2.9	-36.2
	평균 지급액(천 원)	1,942		2,160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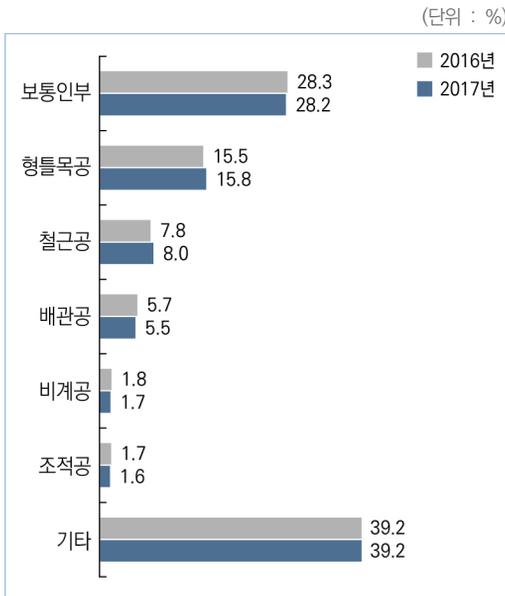
주: 2017년도의 경우 지급인원 1명, 지급액 2.8백만 원이 누락되었음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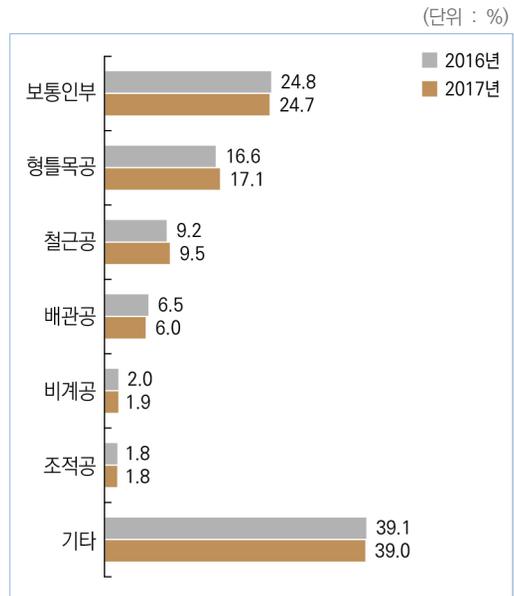
2017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상위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보통인부 28.2%(28,248명), 형틀목공 15.8%(15,879명), 철근공 8.0%(8,041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4.7%(65,365백만 원), 형틀목공 17.1%(45,190백만 원), 철근공 9.5%(25,189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직종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철근공 3,133천 원, 비계공 2,917천 원, 배관공 2,898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철근공(19.6%, 24.2%)과 형틀목공(18.2%, 23.6%) 그리고 보통인부(15.6%, 19.7%) 등의 증가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배관공(-0.4%)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서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림 65〉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6〉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3〉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86,457	100.0	100,318	100.0	16.0
	지급액(백만 원, %)	220,709	100.0	264,394	100.0	19.8
	평균 지급액(천 원)	2,553		2,636		3.2
보통인부	지급인원(명, %)	24,444	28.3	28,248	28.2	15.6
	지급액(백만 원, %)	54,627	24.8	65,365	24.7	19.7
	평균 지급액(천 원)	2,235		2,314		3.5
형틀목공	지급인원(명, %)	13,431	15.5	15,879	15.8	18.2
	지급액(백만 원, %)	36,573	16.6	45,190	17.1	23.6
	평균 지급액(천 원)	2,723		2,846		4.5
철근공	지급인원(명, %)	6,724	7.8	8,041	8.0	19.6
	지급액(백만 원, %)	20,276	9.2	25,189	9.5	24.2
	평균 지급액(천 원)	3,015		3,133		3.9
배관공	지급인원(명, %)	4,910	5.7	5,498	5.5	12.0
	지급액(백만 원, %)	14,290	6.5	15,935	6.0	11.5
	평균 지급액(천 원)	2,910		2,898		-0.4
비계공	지급인원(명, %)	1,578	1.8	1,722	1.7	9.1
	지급액(백만 원, %)	4,513	2.0	5,023	1.9	11.3
	평균 지급액(천 원)	2,860		2,917		2.0
조적공	지급인원(명, %)	1,440	1.7	1,634	1.6	13.5
	지급액(백만 원, %)	4,051	1.8	4,667	1.8	15.2
	평균 지급액(천 원)	2,813		2,856		1.5
기타	지급인원(명, %)	33,930	39.2	39,296	39.2	15.8
	지급액(백만 원, %)	86,379	39.1	103,025	39.0	19.3
	평균 지급액(천 원)	2,546		2,622		3.0

주: 2017년도의 경우 지급인원 1명, 지급액 2.8백만 원이 누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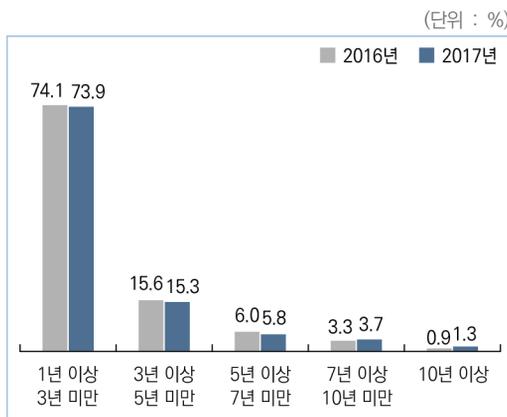
4) 적립일수 규모별

2017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 73.9%(74,112명), 3년 이상 5년 미만 15.3%(15,396명), 5년 이상 7년 미만 5.8%(5,832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역시 1년 이상 3년 미만 47.8%(126,456백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 22.6%(59,673백만 원), 5년 이상 7년 미만 13.0%(34,298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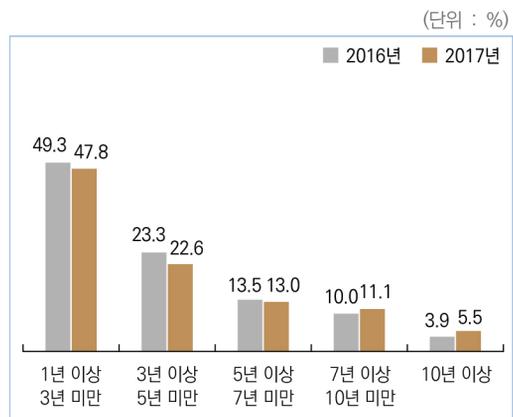
퇴직공제제도가 건설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이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적립일수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적립일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10년 이상 11,087천 원, 7년 이상 10년 미만 8,026천 원, 5년 이상 7년 미만 5,881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10년 이상(61.9%, 67.7%)과 7년 이상 10년 미만(27.9%, 33.1%) 그리고 1년 이상 3년 미만(15.7%, 16.3%) 등의 증가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지급액의 증가가 지급인원의 증가보다 더 큰 5년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더 컸다.

〈그림 67〉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8〉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4〉 적립일수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86,457	100.0	100,318	100.0	16.0
	지급액(백만 원, %)	220,709	100.0	264,394	100.0	19.8
	평균 지급액(천 원)	2,553		2,636		3.2
1년 이상 3년 미만	지급인원(명, %)	64,071	74.1	74,112	73.9	15.7
	지급액(백만 원, %)	108,709	49.3	126,456	47.8	16.3
	평균 지급액(천 원)	1,697		1,706		0.6
3년 이상 5년 미만	지급인원(명, %)	13,494	15.6	15,396	15.3	14.1
	지급액(백만 원, %)	51,458	23.3	59,673	22.6	16.0
	평균 지급액(천 원)	3,813		3,876		1.6
5년 이상 7년 미만	지급인원(명, %)	5,216	6.0	5,832	5.8	11.8
	지급액(백만 원, %)	29,760	13.5	34,298	13.0	15.2
	평균 지급액(천 원)	5,706		5,881		3.1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7년 이상 10년 미만	지급인원(명, %)	2,866	3.3	3,667	3.7	27.9
	지급액(백만 원, %)	22,117	10.0	29,432	11.1	33.1
	평균 지급액(천 원)	7,717		8,026		4.0
10년 이상	지급인원(명, %)	810	0.9	1,311	1.3	61.9
	지급액(백만 원, %)	8,665	3.9	14,535	5.5	67.7
	평균 지급액(천 원)	10,698		11,087		3.6

주: 2017년도의 경우 지급인원 1명, 지급액 2.8백만 원이 누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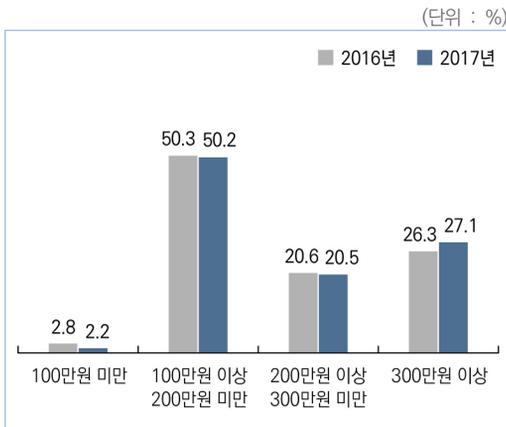
5) 지급액 규모별

2017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0.2%(50,339명), 300만 원 이상 27.1%(27,149명),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0.5%(20,614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3.4%(141,153백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6.8%(70,952백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9.0%(50,304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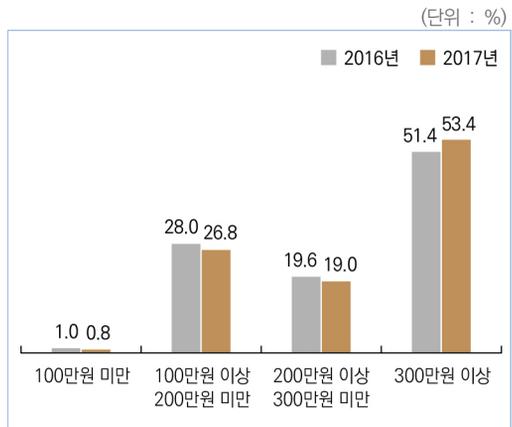
지급액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지급액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300만 원 이상 5,199천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440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409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300만 원 이상(19.5%, 24.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5.9%, 16.0%),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5.7%, 14.9%)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100만 원 미만(-9.3%, -9.6%)에서는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200만 원 이상에서는 증가했고, 200만 원 미만에서는 감소했다.

〈그림 69〉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70〉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5〉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86,457	100.0	100,318	100.0	16.0
	지급액(백만 원, %)	220,709	100.0	264,394	100.0	19.8
	평균 지급액(천 원)	2,553		2,636		3.2
1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2,442	2.8	2,216	2.2	-9.3
	지급액(백만 원, %)	2,195	1.0	1,985	0.8	-9.6
	평균 지급액(천 원)	899		896		-0.3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43,523	50.3	50,339	50.2	15.7
	지급액(백만 원, %)	61,741	28.0	70,952	26.8	14.9
	평균 지급액(천 원)	1,419		1,409		-0.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17,781	20.6	20,614	20.5	15.9
	지급액(백만 원, %)	43,348	19.6	50,304	19.0	16.0
	평균 지급액(천 원)	2,438		2,440		0.1
300만 원 이상	지급인원(명, %)	22,711	26.3	27,149	27.1	19.5
	지급액(백만 원, %)	113,425	51.4	141,153	53.4	24.4
	평균 지급액(천 원)	4,994		5,199		4.1

주: 2017년도의 경우 지급인원 1명, 지급액 2.8백만 원이 누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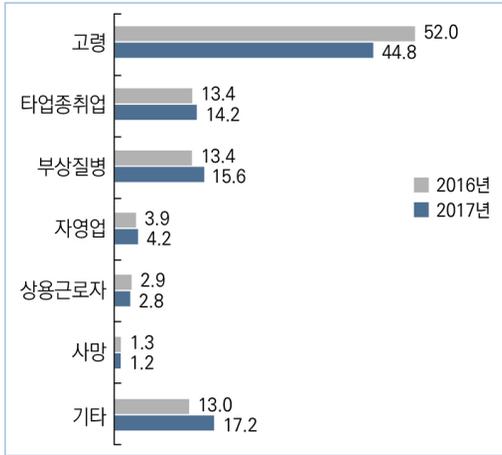
6) 지급사유별

2017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사유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고령 44.8%(44,990명), 부상·질병 15.6%(15,684명), 타 업종 취업 14.2%(14,238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고령 46.9%(123,912백만 원), 부상·질병 16.1%(42,603백만 원), 타 업종 취업 13.4%(35,418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사유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위와 다른데, 상용근로자 3,152천 원, 사망 2,834천 원, 고령 2,754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6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의 경우 부상·질병(35.0%), 자영업(23.7%), 타 업종 취업(22.7%)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전체 지급액의 경우 부상·질병(32.6%), 타 업종 취업(19.0%), 자영업(18.3%)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고령, 사망, 상용근로자 등에서는 증가했고, 여타 사유에서는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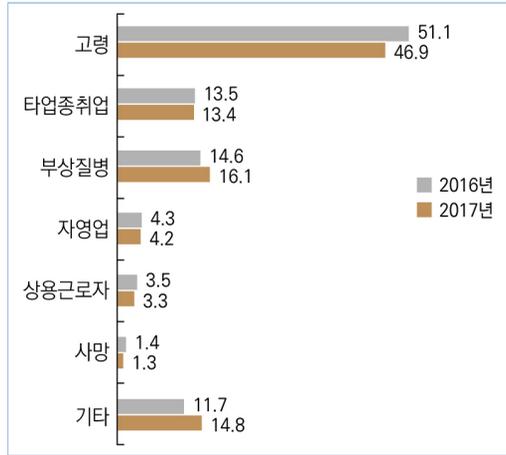
〈그림 71〉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 %)



〈그림 72〉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단위 : %)



〈표 76〉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86,457	100.0	100,318	100.0	16.0
	지급액(백만 원, %)	220,709	100.0	264,394	100.0	19.8
	평균 지급액(천 원)	2,553		2,636		3.2
고령	지급인원(명, %)	44,917	52.0	44,990	44.8	0.2
	지급액(백만 원, %)	112,676	51.1	123,912	46.9	10.0
	평균 지급액(천 원)	2,509		2,754		9.8
타업종취업	지급인원(명, %)	11,606	13.4	14,238	14.2	22.7
	지급액(백만 원, %)	29,760	13.5	35,418	13.4	19.0
	평균 지급액(천 원)	2,564		2,488		-3.0
부상질병	지급인원(명, %)	11,615	13.4	15,684	15.6	35.0
	지급액(백만 원, %)	32,139	14.6	42,603	16.1	32.6
	평균 지급액(천 원)	2,767		2,716		-1.8
자영업	지급인원(명, %)	3,407	3.9	4,215	4.2	23.7
	지급액(백만 원, %)	9,488	4.3	11,220	4.2	18.3
	평균 지급액(천 원)	2,785		2,662		-4.4
상용근로자	지급인원(명, %)	2,489	2.9	2,775	2.8	11.5
	지급액(백만 원, %)	7,711	3.5	8,748	3.3	13.4
	평균 지급액(천 원)	3,098		3,152		1.8
사망	지급인원(명, %)	1,165	1.3	1,205	1.2	3.4
	지급액(백만 원, %)	3,128	1.4	3,415	1.3	9.2
	평균 지급액(천 원)	2,685		2,834		5.6
기타	지급인원(명, %)	11,258	13.0	17,211	17.2	52.9
	지급액(백만 원, %)	25,807	11.7	39,078	14.8	51.4
	평균 지급액(천 원)	2,292		2,271		-1.0



PART

04

부록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

일러두기

본 부록 통계의 경우 「공제회 통계포털」 전산망을 활용하여 유형별로 통계를 추출함에 따라 제3편 퇴직공제사업 통계와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표 1〉 연도별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퇴직자
합계	5,793,219	582,170
1998년	1,008	-
1999년	38,348	3
2000년	83,552	638
2001년	98,277	3,836
2002년	132,694	5,046
2003년	172,398	6,621
2004년	277,018	11,419
2005년	278,682	15,044
2006년	482,794	14,700
2007년	443,319	11,495
2008년	424,001	12,703
2009년	445,356	20,328
2010년	334,824	22,935
2011년	312,904	25,290
2012년	350,273	45,257
2013년	383,122	57,968
2014년	347,591	68,113
2015년	325,936	73,775
2016년	393,566	86,457
2017년	467,556	100,542

〈부표 2〉 연도별 연령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5,793,219	39,910	146,275	316,485	352,582	445,864	471,338
1998년	1,008	-	-	-	-	12	40
1999년	38,348	-	2	1	2	682	2,060
2000년	83,552	-	2	-	6	1,735	4,840
2001년	98,277	-	-	-	68	3,001	6,268
2002년	132,694	-	-	1	549	6,484	8,892
2003년	172,398	-	-	1	1,768	10,333	12,665
2004년	277,018	-	-	2	4,611	18,656	22,028
2005년	278,682	1	-	24	5,520	20,159	22,461
2006년	482,794	129	5	340	18,177	39,562	38,923
2007년	443,319	158	10	2,164	32,094	40,935	36,817
2008년	424,001	161	18	9,721	33,265	36,391	35,518
2009년	445,356	219	15	15,104	37,247	37,477	37,573
2010년	334,824	73	76	19,221	31,420	26,952	28,124
2011년	312,904	254	402	27,677	26,201	24,036	25,625
2012년	350,273	1,025	2,594	40,207	26,603	27,262	29,593
2013년	383,122	1,833	13,422	43,357	27,113	29,993	32,447
2014년	347,591	2,879	17,438	38,124	24,964	27,356	29,451
2015년	325,936	4,463	19,904	35,062	21,823	25,066	26,809
2016년	393,566	10,103	36,833	40,829	28,133	31,419	32,290
2017년	467,556	18,612	55,554	44,650	33,018	38,353	38,914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기타
합계	663,355	742,184	827,514	730,344	108,665	383,605	562,873	2,225
1998년	90	127	168	179	25	120	246	1
1999년	3,930	4,901	6,656	6,586	971	3,986	8,502	69
2000년	7,276	10,083	13,918	14,303	2,200	9,081	20,092	16
2001년	9,216	11,783	16,090	15,875	2,420	10,435	23,121	-
2002년	12,154	15,531	20,330	20,339	3,241	13,284	31,889	-
2003년	17,763	21,298	27,258	26,307	4,060	16,126	34,819	-
2004년	32,264	38,155	45,302	41,150	6,056	23,737	45,057	-
2005년	34,127	39,799	46,771	41,045	6,054	22,575	40,146	-
2006년	58,367	68,303	78,929	68,839	9,746	36,489	64,350	635
2007년	53,231	60,843	68,331	58,179	8,300	30,332	51,722	203
2008년	51,713	57,330	64,426	54,595	7,825	28,165	44,713	160
2009년	54,526	61,025	67,722	56,231	8,120	28,413	41,531	153
2010년	39,047	43,231	47,784	40,041	5,746	21,487	31,588	34
2011년	35,995	39,312	43,944	36,587	5,227	20,031	27,562	51
2012년	40,217	43,402	47,417	38,657	5,497	22,897	24,811	91
2013년	43,471	47,155	50,193	39,567	7,733	24,873	21,841	124
2014년	40,311	43,026	44,304	36,520	7,518	19,597	15,996	107
2015년	36,371	39,137	41,277	39,333	6,005	17,926	12,648	112
2016년	43,115	45,132	45,336	44,983	5,804	17,368	11,987	234
2017년	50,171	52,611	51,358	51,028	6,117	16,683	10,252	235

〈부표 3〉 연도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793,219	968,723	345,363	1,195,472	276,086	312,442	325,426	402,603	122,505
1998년	1,008	228	57	233	47	23	14	13	3
1999년	38,348	7,987	2,775	7,721	1,994	1,438	950	1,689	561
2000년	83,552	13,124	4,697	14,354	4,548	5,011	3,928	5,042	1,501
2001년	98,277	14,022	5,548	16,766	4,974	6,268	4,760	6,766	1,506
2002년	132,694	17,313	6,226	21,139	7,148	9,842	8,730	9,888	2,358
2003년	172,398	25,013	8,796	30,077	12,654	10,673	8,666	16,930	2,861
2004년	277,018	44,149	16,985	53,939	14,077	15,829	15,574	24,397	5,141
2005년	278,682	45,722	18,766	56,171	13,195	13,722	15,274	20,887	4,147
2006년	482,794	85,969	29,161	91,869	26,756	28,236	26,405	34,872	8,122
2007년	443,319	76,516	25,909	82,229	26,753	25,177	26,201	31,766	7,898
2008년	424,001	76,340	23,461	84,869	22,860	23,698	23,464	28,215	6,486
2009년	445,356	76,775	28,128	91,182	21,943	24,553	23,694	27,840	7,742
2010년	334,824	54,615	22,123	64,329	16,571	19,842	19,417	22,554	5,861
2011년	312,904	49,280	19,716	59,874	14,099	19,370	18,224	22,161	6,964
2012년	350,273	57,064	20,958	71,971	14,339	20,020	20,984	25,726	9,141
2013년	383,122	64,965	23,184	80,798	15,860	19,822	23,373	27,143	10,808
2014년	347,591	62,668	20,504	82,079	13,570	16,545	18,660	21,736	7,687
2015년	325,936	56,002	18,877	74,802	13,764	15,939	17,840	21,212	7,004
2016년	393,566	65,284	22,724	94,722	15,202	18,008	21,411	24,868	9,738
2017년	467,556	75,687	26,768	116,348	15,732	18,426	27,857	28,898	16,976

(단위: 명)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84,491	290,884	244,042	171,505	256,130	184,787	228,528	71,996	212,236
1998년	23	51	86	104	18	15	82	2	9
1999년	1,487	1,902	1,644	2,252	1,430	1,571	1,459	406	1,082
2000년	2,600	5,168	4,200	4,584	4,524	4,504	3,747	456	1,564
2001년	3,371	5,915	6,116	4,293	4,876	4,461	5,245	1,333	2,057
2002년	5,092	9,039	7,517	4,987	7,505	5,610	6,335	1,281	2,684
2003년	6,306	10,338	8,865	6,259	8,277	6,142	6,030	1,420	3,091
2004년	9,054	15,338	12,935	9,710	10,776	9,427	10,780	3,075	5,832
2005년	8,663	15,235	12,979	9,381	10,853	9,824	13,213	4,428	6,222
2006년	15,740	24,562	21,865	14,686	17,755	16,448	22,050	4,780	13,518
2007년	16,230	23,414	19,526	12,262	17,625	14,159	20,049	4,821	12,784
2008년	16,266	22,322	18,918	11,764	17,297	13,607	17,381	5,311	11,742
2009년	15,205	23,938	20,449	13,821	18,981	14,616	17,647	6,326	12,516
2010년	11,541	18,650	15,633	10,534	14,127	11,566	13,261	4,847	9,353
2011년	10,700	18,962	14,913	9,443	13,809	10,066	12,975	4,147	8,201
2012년	11,375	20,700	16,106	9,165	17,178	10,173	13,451	4,759	7,163
2013년	12,619	19,810	16,448	10,899	17,163	11,043	13,498	5,505	10,184
2014년	10,605	15,771	13,082	9,198	15,757	9,768	12,499	4,919	12,543
2015년	8,680	12,387	10,553	8,632	15,348	9,053	11,553	4,373	19,917
2016년	9,141	13,366	10,493	9,435	18,609	10,336	12,403	4,739	33,087
2017년	9,793	14,016	11,714	10,096	24,222	12,398	14,870	5,068	38,687

〈부표 4〉 연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5,793,219	3,657,879	744,381	660,474	247,884	125,308
1998년	1,008	200	168	160	76	51
1999년	38,348	7,479	6,296	6,160	2,983	1,900
2000년	83,552	17,262	14,081	13,929	6,744	4,397
2001년	98,277	22,673	16,845	16,746	7,973	4,820
2002년	132,694	39,110	21,525	20,871	9,845	5,749
2003년	172,398	54,462	26,946	26,741	12,353	7,586
2004년	277,018	97,869	42,548	41,629	18,911	11,721
2005년	278,682	113,703	43,833	40,910	18,371	10,997
2006년	482,794	292,764	65,900	57,679	25,011	14,075
2007년	443,319	299,991	53,416	45,677	18,439	9,891
2008년	424,001	294,194	49,809	43,529	16,480	8,273
2009년	445,356	318,263	50,637	43,381	15,469	7,700
2010년	334,824	241,043	37,581	32,763	11,340	5,477
2011년	312,904	217,947	35,141	34,084	12,718	6,354
2012년	350,273	240,767	39,409	40,039	15,103	8,011
2013년	383,122	260,278	44,242	46,880	17,941	8,731
2014년	347,591	232,901	42,142	45,108	18,563	7,240
2015년	325,936	218,444	42,911	46,467	15,764	2,243
2016년	393,566	280,807	60,520	48,472	3,666	78
2017년	467,556	407,722	50,431	9,249	134	14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합계	73,320	47,175	31,658	21,631	32,259	151,250
1998년	28	25	21	17	28	234
1999년	1,404	1,092	822	658	1,263	8,291
2000년	3,017	2,364	1,804	1,432	3,168	15,354
2001년	3,469	2,738	2,118	1,590	3,245	16,060
2002년	4,002	2,941	2,339	1,806	3,257	21,249
2003년	5,313	3,948	3,105	2,425	4,428	25,091
2004년	8,040	5,923	4,522	3,487	5,979	36,389
2005년	7,392	5,265	3,903	2,950	4,188	27,170
2006년	9,043	6,294	4,306	2,877	3,477	1,368
2007년	6,117	3,963	2,629	1,556	1,598	42
2008년	4,732	3,124	1,900	1,140	819	1
2009년	4,347	2,611	1,555	873	520	-
2010년	3,134	1,836	1,010	429	211	-
2011년	3,518	1,898	897	283	63	1
2012년	4,233	1,995	611	94	11	-
2013년	3,909	1,028	105	7	1	-
2014년	1,500	121	7	7	2	-
2015년	99	7	1	-	-	-
2016년	18	1	3	-	1	-
2017년	5	1	-	-	-	-

〈부표 5〉 연도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5,793,219	4,203,280	735,878	289,389	148,957	87,633
1998년	1,008	257	172	104	72	43
1999년	38,348	9,410	6,853	3,933	2,502	1,778
2000년	83,552	21,334	15,216	8,730	5,582	4,216
2001년	98,277	27,767	17,796	10,716	6,699	4,779
2002년	132,694	45,830	22,999	13,157	8,254	5,734
2003년	172,398	61,814	31,559	16,430	10,540	7,087
2004년	277,018	111,208	50,848	25,223	15,469	10,439
2005년	278,682	129,677	51,829	24,307	14,448	9,246
2006년	482,794	322,666	75,207	32,701	17,723	11,001
2007년	443,319	330,747	58,590	22,977	11,921	7,034
2008년	424,001	330,569	51,730	19,064	9,311	5,371
2009년	445,356	362,581	47,408	16,691	8,141	4,562
2010년	334,824	276,399	34,273	11,707	5,671	3,178
2011년	312,904	252,136	34,797	12,835	6,461	3,518
2012년	350,273	279,697	40,461	15,184	8,023	4,228
2013년	383,122	304,227	47,263	17,928	8,730	3,861
2014년	347,591	275,063	45,230	18,548	7,177	1,448
2015년	325,936	261,532	46,626	15,531	2,150	90
2016년	393,566	341,889	48,091	3,494	69	15
2017년	467,556	458,477	8,930	129	14	5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합계	55,777	37,898	26,592	18,891	37,674	151,250
1998년	24	24	21	17	40	234
1999년	1,325	1,081	838	691	1,646	8,291
2000년	3,064	2,419	1,868	1,431	4,338	15,354
2001년	3,520	2,700	2,180	1,623	4,437	16,060
2002년	3,920	3,069	2,350	1,732	4,400	21,249
2003년	5,107	3,848	2,998	2,332	5,592	25,091
2004년	7,422	5,482	4,131	3,309	7,098	36,389
2005년	6,488	4,589	3,542	2,727	4,659	27,170
2006년	7,340	5,230	3,682	2,417	3,459	1,368
2007년	4,549	3,051	1,882	1,262	1,264	42
2008년	3,387	2,119	1,305	653	491	1
2009년	2,733	1,659	943	447	191	-
2010년	1,873	1,013	485	178	47	-
2011년	1,925	890	270	62	9	1
2012년	1,970	618	84	7	1	-
2013년	1,010	95	7	1	-	-
2014년	109	7	6	2	1	-
2015년	6	1	-	-	-	-
2016년	4	3	-	-	1	-
2017년	1	-	-	-	-	-

〈부표 6〉 연도별 성별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5,793,219	4,942,037	851,182
1998년	1,008	938	70
1999년	38,348	36,361	1,987
2000년	83,552	78,045	5,507
2001년	98,277	89,621	8,656
2002년	132,694	120,261	12,433
2003년	172,398	154,695	17,703
2004년	277,018	249,341	27,677
2005년	278,682	249,070	29,612
2006년	482,794	430,773	52,021
2007년	443,319	386,714	56,605
2008년	424,001	360,901	63,100
2009년	445,356	370,923	74,433
2010년	334,824	272,891	61,933
2011년	312,904	256,648	56,256
2012년	350,273	290,837	59,436
2013년	383,122	318,359	64,763
2014년	347,591	285,446	62,145
2015년	325,936	270,615	55,321
2016년	393,566	330,614	62,952
2017년	467,556	388,984	78,572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내국인	외국인
합계	5,793,219	5,229,503	563,716
1998년	1,008	1,008	-
1999년	38,348	38,348	-
2000년	83,552	83,552	-
2001년	98,277	98,277	-
2002년	132,694	132,690	4
2003년	172,398	172,397	1
2004년	277,018	273,013	4,005
2005년	278,682	275,848	2,834
2006년	482,794	459,102	23,692
2007년	443,319	411,108	32,211
2008년	424,001	375,371	48,630
2009년	445,356	404,836	40,520
2010년	334,824	311,458	23,366
2011년	312,904	284,499	28,405
2012년	350,273	315,795	34,478
2013년	383,122	338,799	44,323
2014년	347,591	294,543	53,048
2015년	325,936	271,471	54,465
2016년	393,566	316,837	76,729
2017년	467,556	370,551	97,005

〈부표 8〉 연도별 연령별 신고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2013년	1,443,527	80,703	137,465	293,289
2014년	1,422,223	88,270	141,432	297,857
2015년	1,393,410	96,804	142,223	296,164
2016년	1,535,625	142,512	170,334	327,460
2017년	1,728,220	203,695	208,683	372,301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기타
2013년	485,308	354,157	87,145	5,317	143
2014년	482,846	336,397	71,599	3,701	121
2015년	476,736	320,118	58,647	2,596	122
2016년	510,443	328,558	54,010	2,044	264
2017년	555,981	336,915	48,682	1,666	297

〈부표 9〉 연도별 시도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3년	1,443,527	263,520	91,409	293,373	67,190	74,455	74,167	105,159	31,214
2014년	1,422,223	268,502	90,458	304,169	64,584	69,447	69,551	99,057	28,772
2015년	1,393,410	263,728	86,868	302,819	64,245	68,152	67,373	96,456	25,865
2016년	1,535,625	285,171	95,875	344,539	68,162	72,873	75,227	105,536	31,482
2017년	1,728,220	316,124	107,205	399,392	72,969	77,471	89,997	117,878	44,928

〈부표 10〉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3년	1,443,527	495,991	214,136	288,644	152,483	97,331
2014년	1,422,223	459,836	214,145	294,849	159,474	100,281
2015년	1,393,410	436,159	214,922	298,888	161,388	95,439
2016년	1,535,625	541,674	257,276	319,570	152,237	88,004
2017년	1,728,220	761,166	294,960	291,811	135,329	79,654

〈부표 11〉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3년	1,443,527	675,079	288,320	152,738	99,005	67,949
2014년	1,422,223	646,299	294,361	158,675	100,463	66,170
2015년	1,393,410	629,329	298,321	160,133	94,765	61,506
2016년	1,535,625	780,198	319,092	150,971	87,635	56,806
2017년	1,728,220	1,038,277	292,202	134,731	79,249	52,049

(단위: 명)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2013년	48,953	75,207	63,048	46,980	60,621	43,556	54,266	18,244	32,165
2014년	46,869	69,719	58,325	45,964	59,492	42,539	53,217	18,114	33,444
2015년	43,607	63,396	53,023	44,506	61,023	40,649	51,940	16,648	43,112
2016년	44,798	64,422	53,282	46,825	66,826	44,353	54,272	17,082	64,900
2017년	46,375	66,458	55,994	48,801	76,360	48,696	59,019	18,142	82,411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3년	65,597	45,023	30,908	21,321	32,070	23
2014년	65,385	44,347	30,640	21,221	32,032	13
2015년	61,636	42,533	29,782	20,850	31,805	8
2016년	57,131	39,875	28,274	20,138	31,438	8
2017년	52,327	36,836	26,477	19,173	30,451	36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3년	47,236	33,801	24,644	17,926	36,806	23
2014년	45,512	32,687	24,006	17,603	36,434	13
2015년	42,689	30,973	22,960	17,009	35,717	8
2016년	39,611	28,860	21,559	16,198	34,687	8
2017년	36,353	26,792	20,061	15,217	33,253	36

〈부표 12〉 연도별 성별 신고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13년	1,443,527	1,292,299	151,228
2014년	1,422,223	1,268,729	153,494
2015년	1,393,410	1,245,034	148,376
2016년	1,535,625	1,373,127	162,498
2017년	1,728,220	1,535,463	192,757

〈부표 13〉 연도별 직종별 신고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443,527	1,422,223	1,393,410	1,535,625	1,728,220
보통인부	460,105	433,993	423,604	468,926	520,760
형틀목공	115,540	114,319	116,164	131,447	142,801
철근공	80,446	77,364	77,607	86,059	89,479
목공	59,335	54,694	50,765	51,207	51,139
배관공	73,094	75,906	73,303	82,895	101,537
조경공	29,042	26,795	24,650	24,637	26,086
석공	27,216	26,836	25,781	27,300	31,295
미장공	24,436	23,888	22,479	23,183	24,893
전공	32,074	34,641	34,744	39,876	46,386
조적공	23,190	22,875	22,001	23,341	26,209
전기공	27,947	29,833	29,218	33,783	41,749
비계공	24,249	24,164	24,096	26,217	29,407
도장공	21,417	22,085	21,693	22,312	25,717
건축목공	17,598	17,073	16,684	18,293	19,456
특별인부	16,861	16,755	16,705	17,896	19,699
타일공	15,657	16,924	17,067	18,144	21,627
콘크리트공	19,389	19,762	20,294	22,860	25,514
방수공	17,246	17,828	17,056	18,197	20,800
내장공	17,745	20,492	19,480	22,023	28,536
조력공	18,709	17,741	17,513	20,185	23,950
내선전공	14,731	15,731	15,018	16,464	21,965
철거공	12,459	12,164	12,775	15,005	16,155
기계설치공	12,012	12,531	12,213	13,561	15,980
용접공	12,790	12,695	12,278	13,326	14,538
철골공	12,747	12,305	11,751	12,545	13,684
내장목공	8,922	9,955	9,798	10,855	13,719
포장공	6,506	6,310	6,237	6,203	6,272
건설기계운전기사	7,801	7,431	6,527	7,272	6,909
건설공	7,378	7,893	7,931	8,684	9,992
기타	226,885	231,240	227,978	252,929	291,966

〈부표 14〉 연령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구분	2013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4,258,570	709,084	256,491	827,521	217,817	243,526	239,659	305,888	81,100
19세 이하	3,853	371	256	951	138	169	376	169	287
20~24세	16,546	1,500	876	2,521	624	1,202	1,346	1,520	703
25~29세	157,820	16,050	10,304	26,274	7,079	10,637	11,734	15,860	4,941
30~34세	244,644	32,169	15,411	41,391	13,336	15,215	16,201	21,611	6,077
35~39세	323,670	50,123	18,693	58,639	16,984	18,662	19,448	28,012	6,659
40~44세	343,874	55,755	19,732	68,396	17,670	19,425	18,963	24,308	6,285
45~49세	493,387	85,333	29,591	104,911	25,105	26,499	27,138	31,458	8,980
50~54세	562,278	99,792	35,836	121,623	28,877	29,657	29,772	34,401	9,893
55~59세	645,239	116,923	41,445	136,386	32,916	34,170	33,759	41,846	11,625
60~64세	558,480	103,623	34,261	112,801	28,098	30,250	29,823	39,971	10,458
65세	83,221	15,775	4,866	15,935	4,514	5,171	4,502	6,270	1,546
66~69세	312,031	56,718	17,600	55,246	16,859	18,233	17,560	24,206	5,585
70세 이상	512,031	74,640	27,517	82,055	25,524	34,193	28,972	36,159	8,027
기타	1,499	312	103	392	93	43	65	97	34

(단위: 명)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46,271	235,344	198,202	134,144	182,193	143,232	177,203	52,897	107,998
19세 이하	53	140	71	61	135	106	105	8	457
20~24세	604	1,199	938	464	789	532	823	455	450
25~29세	5,805	11,306	7,759	4,582	7,144	4,907	6,764	2,837	3,837
30~34세	9,575	15,006	11,750	7,935	10,270	8,166	10,448	3,450	6,633
35~39세	13,032	18,361	15,320	11,057	13,232	10,219	12,707	4,431	8,091
40~44세	14,032	18,654	16,682	11,893	14,723	10,908	13,068	4,824	8,556
45~49세	18,523	24,517	21,512	16,182	20,534	15,638	18,606	6,968	11,892
50~54세	19,102	27,266	23,584	17,735	23,504	18,316	21,972	7,309	13,639
55~59세	20,200	31,341	27,100	20,468	26,477	21,103	26,416	7,409	15,655
60~64세	16,206	26,344	24,311	17,642	22,978	18,685	23,485	5,930	13,614
65세	2,315	3,940	3,683	2,482	3,352	2,768	3,321	771	2,010
66~69세	10,188	18,258	15,817	9,298	13,367	10,128	12,092	2,996	7,880
70세 이상	16,601	38,966	29,640	14,307	25,635	21,716	27,351	5,499	15,229
기타	35	46	35	38	53	40	45	10	55

〈부표 14〉 연령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구분	2014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4,606,161	771,752	276,995	909,599	231,387	260,071	258,319	327,624	88,787
19세 이하	6,732	491	284	1,560	321	434	853	256	394
20~24세	33,984	3,413	1,959	6,123	1,341	2,260	2,509	2,720	1,167
25~29세	195,944	21,369	12,767	35,316	8,519	12,536	13,908	18,529	5,915
30~34세	269,608	37,280	16,977	47,744	14,160	16,278	17,316	23,048	6,673
35~39세	351,026	55,250	20,338	65,235	17,989	19,976	20,872	29,648	7,258
40~44세	373,325	60,990	21,442	75,361	18,772	20,899	20,543	25,997	6,955
45~49세	533,698	92,984	31,939	115,064	26,654	28,280	29,210	33,643	9,838
50~54세	605,304	108,214	38,281	132,965	30,520	31,476	31,840	36,711	10,727
55~59세	689,543	125,746	44,133	147,521	34,564	36,037	35,950	44,394	12,509
60~64세	595,000	110,848	36,327	120,946	29,593	31,956	31,819	42,430	11,270
65세	90,739	17,320	5,284	17,482	4,841	5,567	4,877	6,862	1,736
66~69세	331,628	60,423	18,662	59,198	17,757	19,265	18,609	25,797	6,001
70세 이상	528,027	77,090	28,487	84,662	26,260	35,060	29,947	37,491	8,307
기타	1,605	334	115	422	96	47	66	98	37

(단위: 명)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56,876	251,115	211,284	143,342	197,950	153,000	189,702	57,816	120,542
19세 이하	103	201	116	141	307	206	206	12	847
20~24세	1,290	2,291	1,681	933	1,713	1,011	1,615	885	1,073
25~29세	7,079	13,046	9,267	5,688	9,203	5,896	8,325	3,528	5,053
30~34세	10,346	15,948	12,566	8,594	11,372	8,815	11,145	3,765	7,581
35~39세	14,028	19,483	16,297	11,782	14,459	10,941	13,480	4,828	9,162
40~44세	15,052	20,015	17,854	12,705	16,108	11,694	14,048	5,247	9,643
45~49세	19,675	26,137	23,029	17,286	22,292	16,777	19,897	7,558	13,435
50~54세	20,347	29,108	25,065	18,749	25,359	19,472	23,357	7,893	15,220
55~59세	21,359	33,136	28,628	21,610	28,506	22,322	28,048	7,944	17,136
60~64세	17,206	27,919	25,645	18,600	24,457	19,812	24,925	6,355	14,892
65세	2,477	4,288	3,953	2,688	3,660	3,025	3,613	829	2,237
66~69세	10,777	19,324	16,664	9,776	14,134	10,700	12,812	3,228	8,501
70세 이상	17,101	40,170	30,483	14,750	26,320	22,287	28,184	5,734	15,694
기타	36	49	36	40	60	42	47	10	68

〈부표 14〉 연령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구분	2015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4,932,097	827,754	295,872	984,401	245,151	276,010	276,159	348,836	95,791
19세 이하	11,195	668	303	2,176	605	954	1,379	427	708
20~24세	53,888	5,573	3,047	10,123	2,177	3,320	3,784	4,210	1,695
25~29세	231,006	26,680	14,928	43,516	10,001	14,229	15,827	21,079	6,637
30~34세	291,431	41,374	18,326	53,265	14,944	17,241	18,354	24,274	7,163
35~39세	376,092	59,650	21,906	71,316	18,993	21,121	22,180	31,219	7,785
40~44세	400,134	65,566	22,959	81,735	19,864	22,160	21,972	27,597	7,509
45~49세	570,069	99,545	33,959	124,019	28,035	29,891	31,134	35,722	10,569
50~54세	644,441	115,529	40,554	142,789	32,051	33,246	33,849	38,869	11,512
55~59세	730,820	133,610	46,599	157,378	36,279	37,943	38,157	46,932	13,297
60~64세	634,333	118,121	38,684	129,559	31,397	33,925	33,874	45,281	12,042
65세	96,744	18,443	5,625	18,761	5,125	5,882	5,188	7,336	1,879
66~69세	349,554	63,672	19,658	62,565	18,653	20,271	19,608	27,241	6,388
70세 이상	540,675	78,952	29,206	86,744	26,931	35,777	30,784	38,548	8,566
기타	1,717	371	118	455	96	50	69	101	41

(단위: 명)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65,556	263,502	221,837	151,974	213,298	162,053	201,255	62,189	140,459
19세 이하	156	285	134	255	609	389	281	75	1,791
20~24세	2,023	3,339	2,361	1,491	2,856	1,556	2,598	1,411	2,324
25~29세	8,047	14,337	10,365	6,698	10,924	6,839	9,730	4,097	7,072
30~34세	10,934	16,625	13,264	9,151	12,403	9,362	11,747	3,987	9,017
35~39세	14,769	20,434	17,063	12,435	15,553	11,522	14,255	5,191	10,700
40~44세	15,903	21,038	18,777	13,424	17,366	12,417	14,890	5,620	11,337
45~49세	20,591	27,452	24,245	18,221	24,086	17,820	21,129	8,030	15,621
50~54세	21,308	30,428	26,258	19,739	27,198	20,579	24,641	8,357	17,534
55~59세	22,313	34,566	29,802	22,646	30,431	23,394	29,499	8,429	19,545
60~64세	18,178	29,344	26,971	19,657	26,130	20,939	26,420	6,734	17,077
65세	2,613	4,512	4,133	2,855	3,892	3,198	3,854	891	2,557
66~69세	11,225	20,181	17,361	10,266	14,877	11,267	13,433	3,404	9,484
70세 이상	17,460	40,911	31,065	15,094	26,903	22,726	28,728	5,952	16,328
기타	36	50	38	42	70	45	50	11	72

〈부표 14〉 연령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구분	2016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325,663	893,038	318,596	1,079,123	260,353	294,018	297,570	373,704	105,529
19세 이하	21,298	1,275	454	4,360	827	1,773	2,466	678	1,133
20~24세	90,721	10,037	5,238	18,627	3,655	5,021	5,706	6,849	2,624
25~29세	271,835	33,259	17,342	53,774	11,644	16,014	17,916	23,849	7,607
30~34세	319,564	46,600	19,933	60,770	15,879	18,347	19,878	25,855	7,863
35~39세	407,511	64,984	23,824	79,154	20,142	22,467	23,972	33,238	8,671
40~44세	432,424	70,806	24,768	89,615	21,088	23,644	23,861	29,598	8,363
45~49세	613,184	107,131	36,467	135,121	29,588	31,669	33,437	38,174	11,612
50~54세	689,573	123,694	43,246	154,395	33,711	35,158	36,117	41,338	12,591
55~59세	776,156	141,912	49,360	168,435	38,104	39,995	40,485	49,608	14,305
60~64세	679,316	126,053	41,296	139,635	33,277	36,096	36,165	48,514	13,106
65세	102,548	19,508	5,976	19,988	5,370	6,162	5,478	7,746	2,027
66~69세	366,922	66,695	20,631	65,924	19,466	21,203	20,505	28,665	6,795
70세 이상	552,662	80,679	29,940	88,748	27,506	36,415	31,506	39,488	8,788
기타	1,951	405	121	577	96	54	78	104	44

(단위: 명)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74,697	276,868	232,330	161,409	231,907	172,389	213,658	66,928	173,546
19세 이하	204	385	278	329	1,366	779	522	127	4,342
20~24세	3,026	5,014	3,313	2,422	4,960	2,526	4,195	2,202	5,306
25~29세	9,071	15,564	11,373	7,798	13,011	7,829	11,017	4,700	10,067
30~34세	11,588	17,344	13,950	9,760	13,689	10,043	12,406	4,268	11,391
35~39세	15,549	21,431	17,850	13,142	16,932	12,280	15,048	5,532	13,295
40~44세	16,805	22,170	19,679	14,266	18,809	13,304	15,739	6,001	13,908
45~49세	21,588	28,851	25,384	19,232	26,086	18,899	22,356	8,515	19,074
50~54세	22,277	31,855	27,428	20,728	29,214	21,745	25,919	8,871	21,286
55~59세	23,198	36,036	30,986	23,680	32,479	24,523	30,908	8,909	23,233
60~64세	19,185	30,934	28,217	20,831	28,027	22,229	28,061	7,177	20,513
65세	2,742	4,718	4,290	3,006	4,145	3,373	4,069	944	3,006
66~69세	11,644	20,930	17,975	10,727	15,602	11,724	14,081	3,563	10,792
70세 이상	17,781	41,582	31,566	15,446	27,506	23,083	29,283	6,107	17,238
기타	39	54	41	42	81	52	54	12	95

〈부표 14〉 연령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구분	2017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793,219	968,723	345,364	1,195,471	276,085	312,444	325,427	402,602	122,505
19세 이하	39,910	2,867	671	10,018	1,011	2,451	4,187	1,416	1,839
20~24세	146,275	17,157	8,462	32,194	5,481	7,258	8,439	10,590	4,419
25~29세	316,485	40,597	20,121	65,481	13,193	17,573	20,273	26,694	9,126
30~34세	352,582	52,333	21,930	69,696	16,806	19,548	21,964	27,760	9,163
35~39세	445,864	71,074	26,093	88,687	21,324	23,852	26,661	35,746	10,473
40~44세	471,338	76,786	26,960	99,034	22,361	25,171	26,757	32,077	10,119
45~49세	663,355	115,502	39,282	147,923	31,206	33,497	36,631	41,101	13,600
50~54세	742,184	133,026	46,265	168,133	35,535	37,104	39,053	44,148	14,609
55~59세	827,514	151,230	52,343	181,418	39,898	41,971	43,361	52,675	16,074
60~64세	730,344	135,237	44,472	151,166	35,336	38,439	38,790	51,971	14,626
65세	108,665	20,625	6,347	21,236	5,640	6,492	5,798	8,187	2,199
66~69세	383,605	69,655	21,624	69,222	20,223	22,046	21,360	29,897	7,237
70세 이상	562,914	82,203	30,664	90,561	27,974	36,981	32,067	40,232	8,974
기타	2,184	431	130	702	97	61	86	108	47

(단위: 명)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84,490	290,884	244,044	171,505	256,129	184,787	228,528	71,996	212,235
19세 이하	305	613	410	511	2,292	1,393	1,356	212	8,358
20~24세	4,485	7,001	4,816	3,825	8,855	4,199	6,409	3,141	9,544
25~29세	10,057	16,672	12,445	8,820	15,634	8,962	12,282	5,183	13,372
30~34세	12,253	18,124	14,648	10,376	15,354	10,857	13,205	4,531	14,034
35~39세	16,396	22,552	18,785	13,946	18,881	13,238	15,962	5,891	16,303
40~44세	17,699	23,400	20,756	15,077	20,773	14,270	16,742	6,418	16,938
45~49세	22,615	30,355	26,666	20,330	28,622	20,191	23,757	9,115	22,962
50~54세	23,305	33,394	28,654	21,782	31,905	23,045	27,404	9,428	25,394
55~59세	24,194	37,529	32,250	24,729	34,853	25,847	32,528	9,399	27,215
60~64세	20,204	32,612	29,622	22,007	30,213	23,577	30,014	7,634	24,424
65세	2,851	4,920	4,465	3,172	4,404	3,560	4,282	1,027	3,460
66~69세	12,034	21,572	18,517	11,168	16,300	12,200	14,721	3,731	12,098
70세 이상	18,053	42,085	31,968	15,719	27,953	23,390	29,806	6,273	18,011
기타	39	55	42	43	90	58	60	13	122

〈부표 15〉 연령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3년	4,258,570	2,518,021	549,827	512,034	208,875	115,126
19세 이하	3,853	2,798	524	389	102	27
20~24세	16,546	14,623	1,216	587	95	18
25~29세	157,820	138,539	10,482	6,245	1,669	564
30~34세	244,644	200,450	19,199	13,821	4,508	2,025
35~39세	323,670	225,388	34,691	26,890	9,614	4,884
40~44세	343,874	205,285	45,565	40,020	16,053	8,556
45~49세	493,387	275,220	67,250	63,758	27,654	15,798
50~54세	562,278	302,755	74,876	74,385	34,476	20,565
55~59세	645,239	339,292	85,222	85,327	40,553	24,523
60~64세	558,480	294,968	74,584	76,779	34,742	20,663
65세	83,221	43,933	11,942	13,069	5,026	2,692
66~69세	312,031	167,138	46,591	49,404	17,873	8,767
70세 이상	512,031	306,232	77,668	61,350	16,509	6,044
기타	1,499	1,400	17	10	1	-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3년	71,334	46,863	31,532	21,539	32,162	151,257
19세 이하	10	2	-	-	-	1
20~24세	2	2	-	-	-	3
25~29세	213	70	21	7	2	8
30~34세	945	400	155	72	68	3,001
35~39세	2,575	1,478	785	448	493	16,424
40~44세	4,991	3,007	1,902	1,207	1,607	15,681
45~49세	10,061	6,635	4,337	2,923	4,491	15,260
50~54세	13,322	9,233	6,404	4,528	7,125	14,609
55~59세	16,820	11,861	8,641	6,193	9,795	17,012
60~64세	13,556	9,365	6,613	4,507	6,519	16,184
65세	1,549	949	578	332	505	2,646
66~69세	4,620	2,643	1,527	980	1,185	11,303
70세 이상	2,669	1,218	569	342	372	39,058
기타	1	-	-	-	-	67

〈부표 15〉 연령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4년	4,606,161	2,750,922	591,990	557,434	227,229	122,276
19세 이하	6,732	4,470	1,072	857	247	65
20~24세	33,984	30,133	2,544	1,107	162	29
25~29세	195,944	170,337	13,731	8,424	2,303	784
30~34세	269,608	217,694	22,253	16,814	5,719	2,418
35~39세	351,026	243,551	38,218	30,400	11,095	5,448
40~44세	373,325	224,267	49,461	43,953	17,801	9,280
45~49세	533,698	300,673	72,344	69,482	30,308	16,897
50~54세	605,304	329,245	80,476	80,680	37,552	21,825
55~59세	689,543	367,170	90,781	91,642	43,561	25,769
60~64세	595,000	317,719	79,221	82,772	36,934	21,450
65세	90,739	47,804	13,043	14,739	5,607	2,928
66~69세	331,628	178,730	49,275	53,162	18,955	9,162
70세 이상	528,027	317,625	79,553	63,390	16,984	6,221
기타	1,605	1,504	18	12	1	-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4년	72,819	46,984	31,539	21,546	32,164	151,258
19세 이하	17	3	-	-	-	1
20~24세	4	2	-	-	-	3
25~29세	253	73	21	8	2	8
30~34세	1,007	407	155	72	68	3,001
35~39세	2,674	1,487	786	449	494	16,424
40~44세	5,139	3,021	1,904	1,211	1,607	15,681
45~49세	10,324	6,658	4,337	2,924	4,491	15,260
50~54세	13,600	9,259	6,405	4,528	7,125	14,609
55~59세	17,099	11,879	8,642	6,193	9,795	17,012
60~64세	13,706	9,374	6,614	4,507	6,519	16,184
65세	1,605	952	578	332	505	2,646
66~69세	4,700	2,648	1,528	980	1,185	11,303
70세 이상	2,691	1,221	569	342	373	39,058
기타	-	-	-	-	-	68

〈부표 15〉 연령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5년	4,932,097	2,969,365	634,914	604,070	242,830	124,501
19세 이하	11,195	7,107	2,122	1,508	363	74
20~24세	53,888	48,187	3,824	1,601	234	33
25~29세	231,006	198,780	17,086	10,895	3,005	870
30~34세	291,431	232,512	25,261	19,711	6,675	2,554
35~39세	376,092	260,134	41,643	34,038	12,325	5,626
40~44세	400,134	241,608	53,134	47,959	19,340	9,518
45~49세	570,069	323,967	77,332	75,049	32,497	17,215
50~54세	644,441	354,053	85,815	86,823	39,992	22,216
55~59세	730,820	393,501	96,455	98,181	45,948	26,094
60~64세	634,333	340,645	85,077	90,662	39,261	21,778
65세	96,744	51,247	13,934	15,980	5,991	2,973
66~69세	349,554	189,327	52,044	56,674	19,870	9,290
70세 이상	540,675	326,690	81,163	64,975	17,328	6,260
기타	1,717	1,607	24	14	1	-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5년	72,918	46,991	31,540	21,546	32,164	151,258
19세 이하	17	3	-	-	-	1
20~24세	4	2	-	-	-	3
25~29세	257	74	21	8	2	8
30~34세	1,015	407	155	72	68	3,001
35~39세	2,686	1,487	786	449	494	16,424
40~44세	5,149	3,022	1,905	1,211	1,607	15,681
45~49세	10,338	6,659	4,337	2,924	4,491	15,260
50~54세	13,614	9,261	6,405	4,528	7,125	14,609
55~59세	17,120	11,879	8,642	6,193	9,795	17,012
60~64세	13,712	9,374	6,614	4,507	6,519	16,184
65세	1,606	952	578	332	505	2,646
66~69세	4,703	2,650	1,528	980	1,185	11,303
70세 이상	2,696	1,221	569	342	373	39,058
기타	1	-	-	-	-	68

〈부표 15〉 연령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6년	5,325,663	3,250,172	695,437	652,566	246,469	124,579
19세 이하	21,298	14,153	4,224	2,397	427	76
20~24세	90,721	81,643	6,235	2,528	272	34
25~29세	271,835	231,602	21,796	14,014	3,177	874
30~34세	319,564	251,980	29,962	23,416	6,917	2,566
35~39세	407,511	281,499	46,889	38,495	12,666	5,635
40~44세	432,424	263,468	58,584	52,573	19,691	9,530
45~49세	613,184	353,003	84,538	81,393	33,014	17,223
50~54세	689,573	384,743	93,196	93,303	40,564	22,223
55~59세	776,156	424,845	103,789	104,314	46,464	26,102
60~64세	679,316	369,543	93,261	98,020	39,798	21,782
65세	102,548	55,018	14,999	16,886	6,051	2,975
66~69세	366,922	200,945	55,120	59,181	20,030	9,297
70세 이상	552,662	335,920	82,790	66,031	17,397	6,262
기타	1,951	1,810	54	15	1	-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6년	72,936	46,992	31,543	21,546	32,165	151,258
19세 이하	17	3	-	-	-	1
20~24세	4	2	-	-	-	3
25~29세	259	74	21	8	2	8
30~34세	1,020	407	155	72	68	3,001
35~39세	2,686	1,488	786	449	494	16,424
40~44세	5,152	3,022	1,905	1,211	1,607	15,681
45~49세	10,341	6,659	4,338	2,924	4,491	15,260
50~54세	13,615	9,261	6,406	4,528	7,125	14,609
55~59세	17,120	11,879	8,643	6,193	9,795	17,012
60~64세	13,714	9,374	6,614	4,507	6,519	16,184
65세	1,606	952	578	332	505	2,646
66~69세	4,703	2,650	1,528	980	1,185	11,303
70세 이상	2,698	1,221	569	342	374	39,058
기타	1	-	-	-	-	68

〈부표 15〉 연령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7년	5,793,219	3,657,893	745,867	661,815	246,603	124,593
19세 이하	39,910	30,942	5,797	2,630	444	76
20~24세	146,275	134,534	8,582	2,843	273	34
25~29세	316,485	271,372	25,881	14,795	3,189	876
30~34세	352,582	280,263	33,938	24,156	6,933	2,569
35~39세	445,864	314,080	51,752	39,387	12,681	5,637
40~44세	471,338	296,697	63,323	53,501	19,707	9,531
45~49세	663,355	395,840	90,680	82,567	33,028	17,225
50~54세	742,184	429,545	99,652	94,648	40,570	22,225
55~59세	827,514	469,131	109,734	105,429	46,475	26,103
60~64세	730,344	412,769	99,964	99,104	39,812	21,783
65세	108,665	60,205	15,778	17,035	6,053	2,975
66~69세	383,605	215,288	57,102	59,530	20,037	9,297
70세 이상	562,914	345,189	83,625	66,175	17,400	6,262
기타	2,184	2,038	59	15	1	-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7년	72,941	46,993	31,543	21,546	32,165	151,260
19세 이하	17	3	-	-	-	1
20~24세	4	2	-	-	-	3
25~29세	259	74	21	8	2	8
30~34세	1,020	407	155	72	68	3,001
35~39세	2,686	1,488	786	449	494	16,424
40~44세	5,153	3,022	1,905	1,211	1,607	15,681
45~49세	10,343	6,659	4,338	2,924	4,491	15,260
50~54세	13,615	9,261	6,406	4,528	7,125	14,609
55~59세	17,120	11,879	8,643	6,193	9,795	17,012
60~64세	13,714	9,374	6,614	4,507	6,519	16,184
65세	1,606	952	578	332	505	2,646
66~69세	4,705	2,650	1,528	980	1,185	11,303
70세 이상	2,698	1,222	569	342	374	39,058
기타	1	-	-	-	-	70

〈부표 16〉 연령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3년	4,258,570	2,866,339	589,267	250,846	139,014	85,754
19세 이하	3,853	3,325	386	105	23	11
20~24세	16,546	15,838	592	93	16	2
25~29세	157,820	148,799	6,412	1,711	570	216
30~34세	244,644	216,975	15,784	4,936	2,180	992
35~39세	323,670	250,276	32,938	11,557	5,644	2,942
40~44세	343,874	236,199	46,898	19,350	10,013	5,938
45~49세	493,387	321,045	71,723	32,254	18,549	11,515
50~54세	562,278	354,066	82,148	39,074	23,224	15,160
55~59세	645,239	396,914	93,890	45,471	27,559	18,487
60~64세	558,480	341,767	85,741	39,211	23,639	15,485
65세	83,221	50,979	14,571	5,971	3,236	2,033
66~69세	312,031	192,201	56,450	22,227	11,690	6,807
70세 이상	512,031	336,544	81,722	28,881	12,671	6,165
기타	1,499	1,411	12	5	-	1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3년	55,454	37,749	26,520	18,819	37,551	151,257
19세 이하	2	-	-	-	-	1
20~24세	2	-	-	-	-	3
25~29세	72	22	7	3	-	8
30~34세	426	179	83	47	41	3,001
35~39세	1,635	917	543	335	459	16,424
40~44세	3,539	2,191	1,437	962	1,666	15,681
45~49세	7,309	5,055	3,419	2,438	4,820	15,260
50~54세	10,073	7,244	5,128	3,741	7,811	14,609
55~59세	13,125	9,430	7,010	5,130	11,211	17,012
60~64세	10,726	7,689	5,667	4,113	8,258	16,184
65세	1,241	829	600	390	725	2,646
66~69세	4,084	2,523	1,731	1,126	1,889	11,303
70세 이상	3,220	1,670	895	534	671	39,058
기타	-	-	-	-	-	67

〈부표 16〉 연령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4년	4,606,161	3,141,403	634,823	269,175	146,097	87,188
19세 이하	6,732	5,551	849	248	62	18
20~24세	33,984	32,675	1,117	157	26	4
25~29세	195,944	183,853	8,592	2,342	787	254
30~34세	269,608	237,288	18,763	6,150	2,568	1,054
35~39세	351,026	271,976	36,465	13,026	6,199	3,039
40~44세	373,325	259,094	50,831	21,102	10,729	6,074
45~49세	533,698	351,607	77,471	34,893	19,635	11,767
50~54세	605,304	386,164	88,460	42,146	24,474	15,430
55~59세	689,543	430,357	100,221	48,475	28,792	18,762
60~64세	595,000	369,143	91,761	41,392	24,437	15,623
65세	90,739	55,937	16,249	6,556	3,476	2,088
66~69세	331,628	206,443	60,244	23,323	12,072	6,885
70세 이상	528,027	349,800	83,786	29,360	12,840	6,189
기타	1,605	1,515	14	5	-	1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4년	55,562	37,756	26,526	18,821	37,552	151,258
19세 이하	3	-	-	-	-	1
20~24세	2	-	-	-	-	3
25~29세	75	23	7	3	-	8
30~34세	434	179	83	47	41	3,001
35~39세	1,640	918	544	336	459	16,424
40~44세	3,553	2,192	1,441	962	1,666	15,681
45~49세	7,331	5,055	3,420	2,439	4,820	15,260
50~54세	10,096	7,245	5,128	3,741	7,811	14,609
55~59세	13,142	9,431	7,010	5,130	11,211	17,012
60~64세	10,732	7,690	5,667	4,113	8,258	16,184
65세	1,243	829	600	390	725	2,646
66~69세	4,088	2,524	1,731	1,126	1,889	11,303
70세 이상	3,223	1,670	895	534	672	39,058
기타	-	-	-	-	-	68

〈부표 16〉 연령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5년	4,932,097	3,402,935	681,624	284,550	148,230	87,276
19세 이하	11,195	9,249	1,492	362	70	18
20~24세	53,888	52,010	1,613	227	29	4
25~29세	231,006	215,676	11,060	3,024	871	258
30~34세	291,431	255,121	21,672	7,094	2,698	1,061
35~39세	376,092	292,009	40,103	14,237	6,372	3,050
40~44세	400,134	280,131	54,852	22,609	10,961	6,084
45~49세	570,069	379,916	83,051	37,056	19,941	11,779
50~54세	644,441	416,341	94,622	44,551	24,854	15,441
55~59세	730,820	462,391	106,789	50,822	29,101	18,781
60~64세	634,333	397,910	99,705	43,700	24,747	15,627
65세	96,744	60,275	17,498	6,932	3,517	2,089
66~69세	349,554	219,803	63,777	24,233	12,190	6,889
70세 이상	540,675	360,478	85,374	29,698	12,879	6,194
기타	1,717	1,625	16	5	-	1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5년	55,568	37,757	26,526	18,821	37,552	151,258
19세 이하	3	-	-	-	-	1
20~24세	2	-	-	-	-	3
25~29세	76	23	7	3	-	8
30~34세	434	179	83	47	41	3,001
35~39세	1,640	918	544	336	459	16,424
40~44세	3,554	2,193	1,441	962	1,666	15,681
45~49세	7,332	5,055	3,420	2,439	4,820	15,260
50~54세	10,098	7,245	5,128	3,741	7,811	14,609
55~59세	13,142	9,431	7,010	5,130	11,211	17,012
60~64세	10,732	7,690	5,667	4,113	8,258	16,184
65세	1,243	829	600	390	725	2,646
66~69세	4,089	2,524	1,731	1,126	1,889	11,303
70세 이상	3,223	1,670	895	534	672	39,058
기타	-	-	-	-	-	68

〈부표 16〉 연령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6년	5,325,663	3,744,824	729,744	288,015	148,299	87,291
19세 이하	21,298	18,416	2,366	422	72	18
20~24세	90,721	87,891	2,531	261	29	4
25~29세	271,835	253,249	14,148	3,186	875	260
30~34세	319,564	279,329	25,352	7,322	2,710	1,066
35~39세	407,511	318,664	44,528	14,566	6,381	3,050
40~44세	432,424	307,503	59,411	22,957	10,969	6,086
45~49세	613,184	416,236	89,344	37,548	19,947	11,782
50~54세	689,573	454,480	101,068	45,089	24,861	15,442
55~59세	776,156	501,146	112,863	51,321	29,108	18,781
60~64세	679,316	435,061	107,030	44,201	24,751	15,628
65세	102,548	65,122	18,398	6,987	3,519	2,089
66~69세	366,922	234,525	66,266	24,383	12,197	6,889
70세 이상	552,662	371,344	86,422	29,767	12,880	6,195
기타	1,951	1,858	17	5	-	1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6년	55,572	37,760	26,526	18,821	37,553	151,258
19세 이하	3	-	-	-	-	1
20~24세	2	-	-	-	-	3
25~29세	76	23	7	3	-	8
30~34세	434	179	83	47	41	3,001
35~39세	1,641	918	544	336	459	16,424
40~44세	3,555	2,193	1,441	962	1,666	15,681
45~49세	7,332	5,056	3,420	2,439	4,820	15,260
50~54세	10,098	7,246	5,128	3,741	7,811	14,609
55~59세	13,142	9,432	7,010	5,130	11,211	17,012
60~64세	10,733	7,690	5,667	4,113	8,258	16,184
65세	1,243	829	600	390	725	2,646
66~69세	4,089	2,524	1,731	1,126	1,889	11,303
70세 이상	3,224	1,670	895	534	673	39,058
기타	-	-	-	-	-	68

〈부표 16〉 연령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7년	5,793,219	4,203,299	738,674	288,144	148,313	87,296
19세 이하	39,910	36,785	2,592	439	72	18
20~24세	146,275	143,147	2,828	262	29	4
25~29세	316,485	297,128	14,908	3,195	877	260
30~34세	352,582	311,612	26,069	7,337	2,713	1,066
35~39세	445,864	356,138	45,390	14,581	6,383	3,050
40~44세	471,338	345,504	60,306	22,973	10,970	6,087
45~49세	663,355	465,249	90,484	37,562	19,949	11,784
50~54세	742,184	505,795	102,356	45,095	24,863	15,442
55~59세	827,514	551,415	113,940	51,332	29,109	18,781
60~64세	730,344	485,025	108,079	44,215	24,752	15,628
65세	108,665	71,095	18,540	6,989	3,519	2,089
66~69세	383,605	250,866	66,599	24,390	12,197	6,891
70세 이상	562,914	381,449	86,566	29,769	12,880	6,195
기타	2,184	2,091	17	5	-	1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7년	55,573	37,760	26,526	18,821	37,553	151,260
19세 이하	3	-	-	-	-	1
20~24세	2	-	-	-	-	3
25~29세	76	23	7	3	-	8
30~34세	434	179	83	47	41	3,001
35~39세	1,641	918	544	336	459	16,424
40~44세	3,555	2,193	1,441	962	1,666	15,681
45~49세	7,332	5,056	3,420	2,439	4,820	15,260
50~54세	10,098	7,246	5,128	3,741	7,811	14,609
55~59세	13,142	9,432	7,010	5,130	11,211	17,012
60~64세	10,733	7,690	5,667	4,113	8,258	16,184
65세	1,243	829	600	390	725	2,646
66~69세	4,089	2,524	1,731	1,126	1,889	11,303
70세 이상	3,225	1,670	895	534	673	39,058
기타	-	-	-	-	-	70

〈부표 17〉 연령별 성별 피공제자수

구분	2013년	남성	여성	2014년	남성	여성	2015년	남성	여성
합계	4,258,570	3,666,378	592,192	4,606,161	3,951,823	654,338	4,932,097	4,222,438	709,659
19세 이하	3,853	3,161	692	6,732	5,888	844	11,195	10,180	1,015
20~24세	16,546	16,137	409	33,984	32,882	1,102	53,888	51,718	2,170
25~29세	157,820	152,280	5,540	195,944	188,140	7,804	231,006	221,152	9,854
30~34세	244,644	232,674	11,970	269,608	254,985	14,623	291,431	274,076	17,355
35~39세	323,670	296,208	27,462	351,026	318,558	32,468	376,092	338,785	37,307
40~44세	343,874	299,764	44,110	373,325	322,886	50,439	400,134	344,081	56,053
45~49세	493,387	426,302	67,085	533,698	458,211	75,487	570,069	487,012	83,057
50~54세	562,278	487,717	74,561	605,304	521,208	84,096	644,441	551,998	92,443
55~59세	645,239	550,686	94,553	689,543	584,179	105,364	730,820	616,075	114,745
60~64세	558,480	468,718	89,762	595,000	497,008	97,992	634,333	529,302	105,031
65세	83,221	69,338	13,883	90,739	75,707	15,032	96,744	80,754	15,990
66~69세	312,031	259,174	52,857	331,628	275,492	56,136	349,554	290,558	58,996
70세 이상	512,031	402,996	109,035	528,027	415,376	112,651	540,675	425,360	115,315
기타	1,499	1,223	273	1,605	1,303	300	1,717	1,387	328

(단위: 명)

구분	2016년	남성	여성	2017년	남성	여성
합계	5,325,663	4,553,052	772,611	5,793,219	4,942,034	851,185
19세 이하	21,298	20,001	1,297	39,910	38,076	1,834
20~24세	90,721	86,768	3,953	146,275	139,121	7,154
25~29세	271,835	259,336	12,499	316,485	300,434	16,051
30~34세	319,564	298,694	20,870	352,582	326,946	25,636
35~39세	407,511	364,692	42,819	445,864	396,182	49,682
40~44세	432,424	370,031	62,393	471,338	401,153	70,185
45~49세	613,184	521,274	91,910	663,355	560,261	103,094
50~54세	689,573	586,987	102,586	742,184	626,771	115,413
55~59세	776,156	650,887	125,269	827,514	689,389	138,125
60~64세	679,316	566,777	112,539	730,344	608,826	121,518
65세	102,548	85,633	16,915	108,665	90,655	18,010
66~69세	366,922	305,404	61,518	383,605	319,362	64,243
70세 이상	552,662	435,010	117,652	562,914	443,137	119,777
기타	1,951	1,558	391	2,184	1,721	463

〈부표 18〉 연령별 내외국인 피공제자수

구분	2013년	내국인	외국인	2014년	내국인	외국인	2015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4,258,570	3,976,106	282,464	4,606,161	4,270,648	335,513	4,932,097	4,542,119	389,978
19세 이하	3,853	313	3,540	6,732	315	6,417	11,195	342	10,853
20~24세	16,546	16,373	173	33,984	33,656	328	53,888	53,225	663
25~29세	157,820	154,773	3,047	195,944	190,780	5,164	231,006	222,656	8,350
30~34세	244,644	232,558	12,086	269,608	251,159	18,449	291,431	266,546	24,885
35~39세	323,670	303,811	19,859	351,026	326,135	24,891	376,092	345,905	30,187
40~44세	343,874	318,530	25,344	373,325	343,206	30,119	400,134	365,245	34,889
45~49세	493,387	453,636	39,751	533,698	487,141	46,557	570,069	516,990	53,079
50~54세	562,278	516,341	45,937	605,304	551,520	53,784	644,441	583,513	60,928
55~59세	645,239	597,726	47,513	689,543	634,937	54,606	730,820	669,140	61,680
60~64세	558,480	516,138	42,342	595,000	547,120	47,880	634,333	580,719	53,614
65세	83,221	76,600	6,621	90,739	83,081	7,658	96,744	88,258	8,486
66~69세	312,031	290,884	21,147	331,628	307,888	23,740	349,554	323,754	25,800
70세 이상	512,031	497,395	14,636	528,027	512,675	15,352	540,675	524,787	15,888
기타	1,499	1,028	468	1,605	1,035	568	1,717	1,039	676

(단위: 명)

구분	2016년	내국인	외국인	2017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5,325,663	4,858,956	466,707	5,793,219	5,229,503	563,716
19세 이하	21,298	516	20,782	39,910	2,004	37,906
20~24세	90,721	89,049	1,672	146,275	142,170	4,105
25~29세	271,835	257,663	14,172	316,485	294,728	21,757
30~34세	319,564	284,904	34,660	352,582	306,861	45,721
35~39세	407,511	369,721	37,790	445,864	399,010	46,854
40~44세	432,424	390,819	41,605	471,338	422,110	49,228
45~49세	613,184	551,449	61,735	663,355	591,681	71,674
50~54세	689,573	619,727	69,846	742,184	661,348	80,836
55~59세	776,156	706,424	69,732	827,514	747,924	79,590
60~64세	679,316	619,213	60,103	730,344	662,437	67,907
65세	102,548	93,152	9,396	108,665	98,385	10,280
66~69세	366,922	339,027	27,895	383,605	353,738	29,867
70세 이상	552,662	536,248	16,414	562,914	546,058	16,856
기타	1,951	1,044	905	2,184	1,049	1,135

〈부표 19〉 시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3년	4,258,570	2,518,021	549,827	512,034	208,875	115,126
서울	709,084	389,557	91,486	95,856	42,838	24,141
인천	256,491	149,533	32,045	30,992	13,173	7,642
경기	827,521	480,921	103,470	101,635	43,260	24,583
대구	217,817	127,524	29,847	26,749	10,199	5,658
경북	243,526	148,535	32,019	27,736	10,636	5,634
경남	239,659	156,841	29,697	24,487	8,613	4,295
부산	305,888	182,500	39,328	36,568	14,114	7,753
울산	81,100	51,317	10,094	9,000	3,737	1,902
광주	146,271	84,550	20,834	18,761	7,214	3,759
전남	235,344	141,989	30,174	26,445	10,690	6,004
전북	198,202	117,768	28,081	24,285	8,844	4,530
대전	134,144	73,038	18,351	17,527	7,284	4,164
충남	182,193	109,578	22,964	20,933	8,535	4,746
충북	143,232	85,536	19,170	16,771	6,774	3,495
강원	177,203	109,328	22,879	19,856	7,619	3,998
제주	52,897	34,071	7,295	6,111	2,112	984
기타	108,001	75,435	12,093	8,322	3,233	1,838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3년	71,334	46,863	31,532	21,539	32,162	151,257
서울	15,097	9,910	6,909	4,537	6,214	22,539
인천	4,969	3,354	2,370	1,669	2,669	8,075
경기	15,532	10,596	7,253	5,016	7,811	27,444
대구	3,538	2,398	1,605	1,277	2,087	6,935
경북	3,287	2,087	1,421	973	1,532	9,666
경남	2,357	1,491	953	657	1,015	9,253
부산	4,900	3,357	2,316	1,699	2,265	11,088
울산	1,014	587	256	166	233	2,794
광주	2,269	1,464	1,057	699	1,129	4,535
전남	3,865	2,412	1,535	997	1,638	9,595
전북	2,621	1,621	1,028	647	908	7,869
대전	2,725	1,948	1,230	917	1,418	5,542
충남	3,029	1,887	1,117	638	905	7,861
충북	2,055	1,227	882	583	880	5,859
강원	2,467	1,506	968	627	812	7,143
제주	484	268	142	81	85	1,264
기타	1,125	750	490	356	561	3,795

〈부표 19〉 시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4년	4,606,161	2,750,921	591,990	557,434	227,229	122,276
서울	771,752	427,270	99,305	105,969	47,632	25,969
인천	276,995	163,030	34,539	33,735	14,313	8,162
경기	909,599	533,927	113,460	112,936	48,375	26,738
대구	231,387	136,391	31,577	28,648	10,910	5,956
경북	260,071	160,389	33,982	29,604	11,221	5,865
경남	258,319	170,657	31,783	26,391	9,204	4,510
부산	327,624	197,017	41,980	39,627	15,151	8,134
울산	88,787	57,069	10,901	9,795	3,985	1,971
광주	156,876	92,015	22,167	19,987	7,608	3,916
전남	251,115	153,710	31,924	28,016	11,209	6,170
전북	211,284	127,283	29,672	25,676	9,249	4,668
대전	143,342	79,012	19,672	18,799	7,698	4,337
충남	197,950	120,181	24,902	22,998	9,365	5,007
충북	153,000	92,461	20,353	17,892	7,142	3,632
강원	189,702	118,356	24,313	21,259	8,064	4,158
제주	57,816	38,017	7,829	6,446	2,198	1,001
기타	120,544	84,136	13,631	9,656	3,905	2,082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4년	72,820	46,984	31,539	21,546	32,164	151,258
서울	15,469	9,934	6,910	4,540	6,215	22,539
인천	5,073	3,357	2,370	1,671	2,670	8,075
경기	15,991	10,645	7,255	5,017	7,811	27,444
대구	3,597	2,404	1,605	1,277	2,087	6,935
경북	3,329	2,089	1,421	973	1,532	9,666
경남	2,399	1,496	954	657	1,015	9,253
부산	4,985	3,361	2,316	1,700	2,265	11,088
울산	1,029	588	256	166	233	2,794
광주	2,297	1,466	1,057	699	1,129	4,535
전남	3,902	2,417	1,537	997	1,638	9,595
전북	2,658	1,626	1,028	647	908	7,869
대전	2,763	1,953	1,231	917	1,418	5,542
충남	3,088	1,888	1,117	638	905	7,861
충북	2,086	1,230	882	583	880	5,859
강원	2,495	1,507	968	627	812	7,143
제주	485	268	142	81	85	1,264
기타	1,174	755	490	356	561	3,796

〈부표 19〉 시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5년	4,932,097	2,969,365	634,914	604,070	242,830	124,501
서울	827,754	461,813	106,791	115,844	51,234	26,445
인천	295,872	175,352	36,998	36,604	15,376	8,319
경기	984,401	581,958	123,408	124,582	52,847	27,413
대구	245,151	145,600	33,463	30,618	11,520	6,044
경북	276,010	171,674	36,193	31,439	11,755	5,938
경남	276,159	183,793	33,890	28,376	9,736	4,582
부산	348,836	211,125	44,777	42,836	16,120	8,260
울산	95,791	62,182	11,763	10,571	4,212	1,996
광주	165,556	98,061	23,351	21,079	7,911	3,969
전남	263,502	162,791	33,369	29,413	11,584	6,248
전북	221,837	134,923	31,016	26,919	9,532	4,709
대전	151,974	84,686	20,891	20,119	8,073	4,379
충남	213,298	130,798	26,945	24,995	9,961	5,098
충북	162,053	98,731	21,516	19,101	7,495	3,689
강원	201,255	126,536	25,854	22,672	8,435	4,201
제주	62,189	41,568	8,283	6,768	2,240	1,005
기타	140,461	97,774	16,406	12,134	4,799	2,206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5년	72,918	46,991	31,540	21,546	32,164	151,258
서울	15,489	9,934	6,910	4,540	6,215	22,539
인천	5,079	3,358	2,370	1,671	2,670	8,075
경기	16,020	10,646	7,255	5,017	7,811	27,444
대구	3,598	2,404	1,605	1,277	2,087	6,935
경북	3,330	2,089	1,421	973	1,532	9,666
경남	2,404	1,498	955	657	1,015	9,253
부산	4,988	3,361	2,316	1,700	2,265	11,088
울산	1,030	588	256	166	233	2,794
광주	2,298	1,467	1,057	699	1,129	4,535
전남	3,911	2,419	1,537	997	1,638	9,595
전북	2,660	1,626	1,028	647	908	7,869
대전	2,765	1,953	1,231	917	1,418	5,542
충남	3,092	1,888	1,117	638	905	7,861
충북	2,087	1,230	882	583	880	5,859
강원	2,500	1,507	968	627	812	7,143
제주	485	268	142	81	85	1,264
기타	1,182	755	490	356	561	3,796

〈부표 19〉 시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6년	5,325,663	3,250,172	695,437	652,566	246,469	124,579
서울	893,038	505,861	117,624	125,497	51,965	26,461
인천	318,596	191,159	40,578	39,715	15,598	8,323
경기	1,079,123	646,849	138,600	138,080	53,957	27,438
대구	260,353	156,567	35,756	32,452	11,627	6,045
경북	294,018	185,034	38,897	33,274	11,861	5,940
경남	297,570	199,705	36,980	30,607	9,903	4,583
부산	373,704	228,686	48,559	46,135	16,339	8,266
울산	105,529	69,200	13,320	11,658	4,288	1,996
광주	174,697	104,854	24,672	22,039	7,975	3,972
전남	276,868	173,183	35,079	30,585	11,673	6,250
전북	232,330	142,647	32,695	27,948	9,593	4,709
대전	161,409	91,511	22,335	21,214	8,140	4,383
충남	231,907	144,396	29,772	26,999	10,139	5,099
충북	172,389	106,209	23,151	20,229	7,586	3,693
강원	213,658	135,865	27,704	23,799	8,527	4,206
제주	66,928	45,608	8,785	6,961	2,244	1,005
기타	173,548	122,838	20,930	15,374	5,054	2,210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6년	72,936	46,992	31,543	21,546	32,165	151,258
서울	15,490	9,934	6,911	4,540	6,216	22,539
인천	5,079	3,358	2,370	1,671	2,670	8,075
경기	16,026	10,646	7,255	5,017	7,811	27,444
대구	3,598	2,404	1,605	1,277	2,087	6,935
경북	3,331	2,089	1,421	973	1,532	9,666
경남	2,412	1,498	957	657	1,015	9,253
부산	4,989	3,361	2,316	1,700	2,265	11,088
울산	1,030	588	256	166	233	2,794
광주	2,298	1,467	1,057	699	1,129	4,535
전남	3,912	2,419	1,537	997	1,638	9,595
전북	2,660	1,626	1,028	647	908	7,869
대전	2,765	1,953	1,231	917	1,418	5,542
충남	3,092	1,889	1,117	638	905	7,861
충북	2,087	1,230	882	583	880	5,859
강원	2,500	1,507	968	627	812	7,143
제주	485	268	142	81	85	1,264
기타	1,182	755	490	356	561	3,796

〈부표 19〉 시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7년	5,793,219	3,657,893	745,867	661,815	246,603	124,593
서울	968,723	571,095	126,637	126,919	51,979	26,463
인천	345,364	214,531	43,443	40,242	15,602	8,323
경기	1,195,471	746,975	152,046	140,817	53,991	27,443
대구	276,085	170,430	37,366	32,710	11,628	6,045
경북	312,444	201,264	40,748	33,612	11,868	5,940
경남	325,427	224,222	39,777	31,130	9,915	4,587
부산	402,602	253,871	51,702	46,693	16,348	8,267
울산	122,505	83,908	15,234	11,995	4,305	1,996
광주	184,490	113,473	25,632	22,247	7,981	3,972
전남	290,884	185,658	36,401	30,797	11,680	6,250
전북	244,044	153,076	33,809	28,119	9,593	4,709
대전	171,505	100,365	23,395	21,388	8,148	4,383
충남	256,129	165,261	32,513	27,608	10,145	5,100
충북	184,787	117,093	24,418	20,474	7,588	3,693
강원	228,528	149,251	28,977	24,007	8,529	4,207
제주	71,996	50,437	9,003	6,982	2,244	1,005
기타	212,235	156,983	24,766	16,075	5,059	2,210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7년	72,941	46,993	31,543	21,546	32,165	151,260
서울	15,490	9,934	6,911	4,540	6,216	22,539
인천	5,079	3,358	2,370	1,671	2,670	8,075
경기	16,026	10,646	7,255	5,017	7,811	27,444
대구	3,598	2,404	1,605	1,277	2,087	6,935
경북	3,331	2,089	1,421	973	1,532	9,666
경남	2,416	1,498	957	657	1,015	9,253
부산	4,990	3,362	2,316	1,700	2,265	11,088
울산	1,030	588	256	166	233	2,794
광주	2,298	1,467	1,057	699	1,129	4,535
전남	3,912	2,419	1,537	997	1,638	9,595
전북	2,660	1,626	1,028	647	908	7,869
대전	2,765	1,953	1,231	917	1,418	5,542
충남	3,092	1,889	1,117	638	905	7,861
충북	2,087	1,230	882	583	880	5,859
강원	2,500	1,507	968	627	812	7,143
제주	485	268	142	81	85	1,264
기타	1,182	755	490	356	561	3,798

〈부표 20〉 시도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3년	4,258,570	2,866,339	589,267	250,846	139,014	85,754
서울	709,084	448,600	108,231	49,707	27,874	17,271
인천	256,491	170,288	35,054	15,533	8,834	5,787
경기	827,521	547,970	114,923	50,673	29,091	18,087
대구	217,817	144,400	31,826	12,854	7,172	4,475
경북	243,526	168,891	32,407	12,905	7,024	4,218
경남	239,659	175,753	29,050	11,027	5,571	3,132
부산	305,888	205,180	43,543	17,576	9,597	5,857
울산	81,100	58,565	10,338	4,298	2,284	1,215
광주	146,271	97,151	21,604	8,939	4,916	2,946
전남	235,344	160,528	30,466	13,313	7,477	4,838
전북	198,202	134,762	28,611	11,222	5,830	3,492
대전	134,144	84,384	19,929	8,626	4,932	3,282
충남	182,193	124,226	24,125	10,281	5,806	3,623
충북	143,232	97,481	19,390	8,249	4,335	2,693
강원	177,203	124,022	23,302	9,312	4,888	2,891
제주	52,897	39,620	6,717	2,531	1,242	638
기타	108,001	84,518	9,751	3,800	2,141	1,309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3년	55,454	37,749	26,520	18,819	37,551	151,257
서울	11,262	7,737	5,467	3,706	6,690	22,539
인천	3,856	2,657	1,957	1,440	3,010	8,075
경기	12,065	8,395	5,899	4,253	8,721	27,444
대구	2,900	2,017	1,521	1,105	2,612	6,935
경북	2,615	1,764	1,259	918	1,859	9,666
경남	1,919	1,241	853	621	1,239	9,253
부산	3,935	2,785	2,046	1,462	2,819	11,088
울산	658	344	212	134	258	2,794
광주	1,889	1,253	968	651	1,419	4,535
전남	3,032	2,053	1,214	991	1,837	9,595
전북	2,198	1,386	933	663	1,236	7,869
대전	2,196	1,541	1,153	802	1,757	5,542
충남	2,212	1,435	867	603	1,154	7,861
충북	1,626	1,117	785	538	1,159	5,859
강원	1,914	1,296	805	591	1,039	7,143
제주	359	206	134	68	118	1,264
기타	818	522	447	273	624	3,795

〈부표 20〉 시도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4년	4,606,161	3,141,403	634,823	269,175	146,097	87,188
서울	771,752	494,179	118,364	54,485	29,669	17,626
인천	276,995	186,275	37,813	16,672	9,347	5,887
경기	909,599	610,985	126,250	55,788	31,224	18,531
대구	231,387	154,994	33,729	13,567	7,472	4,530
경북	260,071	182,702	34,273	13,498	7,255	4,260
경남	258,319	191,648	30,969	11,615	5,785	3,171
부산	327,624	222,337	46,622	18,610	9,975	5,941
울산	88,787	65,123	11,136	4,543	2,355	1,229
광주	156,876	105,946	22,832	9,335	5,073	2,973
전남	251,115	173,979	32,059	13,827	7,644	4,877
전북	211,284	145,844	30,020	11,634	5,966	3,529
대전	143,342	91,687	21,196	9,036	5,105	3,322
충남	197,950	136,771	26,201	11,104	6,061	3,680
충북	153,000	105,588	20,521	8,606	4,476	2,723
강원	189,702	134,478	24,707	9,765	5,045	2,918
제주	57,816	44,098	7,057	2,615	1,258	639
기타	120,544	94,769	11,074	4,475	2,387	1,352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4년	55,562	37,756	26,526	18,821	37,552	151,258
서울	11,286	7,738	5,469	3,706	6,691	22,539
인천	3,858	2,658	1,959	1,441	3,010	8,075
경기	12,107	8,396	5,900	4,253	8,721	27,444
대구	2,905	2,017	1,521	1,105	2,612	6,935
경북	2,617	1,764	1,259	918	1,859	9,666
경남	1,923	1,242	853	621	1,239	9,253
부산	3,938	2,785	2,047	1,462	2,819	11,088
울산	659	344	212	134	258	2,794
광주	1,891	1,253	968	651	1,419	4,535
전남	3,037	2,055	1,214	991	1,837	9,595
전북	2,203	1,386	933	664	1,236	7,869
대전	2,200	1,542	1,153	802	1,757	5,542
충남	2,213	1,435	867	603	1,154	7,861
충북	1,628	1,117	785	538	1,159	5,859
강원	1,915	1,296	805	591	1,039	7,143
제주	359	206	134	68	118	1,264
기타	823	522	447	273	624	3,796

〈부표 20〉 시도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5년	4,932,097	3,402,935	681,624	284,550	148,230	87,276
서울	827,754	536,270	128,263	58,030	30,119	17,643
인천	295,872	201,054	40,699	17,726	9,499	5,892
경기	984,401	669,011	137,947	60,193	31,871	18,558
대구	245,151	166,100	35,699	14,168	7,558	4,531
경북	276,010	196,198	36,121	14,021	7,326	4,261
경남	276,159	206,900	32,956	12,141	5,853	3,175
부산	348,836	239,242	49,849	19,567	10,096	5,943
울산	95,791	71,098	11,915	4,767	2,381	1,229
광주	165,556	113,181	23,922	9,636	5,125	2,974
전남	263,502	184,494	33,470	14,199	7,722	4,886
전북	221,837	154,823	31,269	11,918	6,005	3,531
대전	151,974	98,597	22,511	9,400	5,146	3,324
충남	213,298	149,441	28,202	11,692	6,147	3,683
충북	162,053	113,025	21,737	8,950	4,531	2,724
강원	201,255	144,194	26,131	10,133	5,085	2,923
제주	62,189	48,106	7,377	2,656	1,262	639
기타	140,461	111,201	13,556	5,353	2,504	1,360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5년	55,568	37,757	26,526	18,821	37,552	151,258
서울	11,286	7,738	5,469	3,706	6,691	22,539
인천	3,859	2,658	1,959	1,441	3,010	8,075
경기	12,107	8,396	5,900	4,253	8,721	27,444
대구	2,905	2,017	1,521	1,105	2,612	6,935
경북	2,617	1,764	1,259	918	1,859	9,666
경남	1,925	1,243	853	621	1,239	9,253
부산	3,938	2,785	2,047	1,462	2,819	11,088
울산	659	344	212	134	258	2,794
광주	1,892	1,253	968	651	1,419	4,535
전남	3,039	2,055	1,214	991	1,837	9,595
전북	2,203	1,386	933	664	1,236	7,869
대전	2,200	1,542	1,153	802	1,757	5,542
충남	2,213	1,435	867	603	1,154	7,861
충북	1,628	1,117	785	538	1,159	5,859
강원	1,915	1,296	805	591	1,039	7,143
제주	359	206	134	68	118	1,264
기타	823	522	447	273	624	3,796

〈부표 20〉 시도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6년	5,325,663	3,744,824	729,744	288,015	148,299	87,291
서울	893,038	591,291	137,807	58,733	30,132	17,643
인천	318,596	220,477	43,784	17,938	9,503	5,892
경기	1,079,123	749,264	151,338	61,241	31,895	18,562
대구	260,353	179,379	37,521	14,268	7,559	4,531
경북	294,018	212,282	37,940	14,123	7,328	4,262
경남	297,570	225,914	35,186	12,297	5,854	3,183
부산	373,704	260,602	53,137	19,780	10,102	5,944
울산	105,529	79,685	12,996	4,837	2,381	1,229
광주	174,697	121,309	24,869	9,700	5,127	2,974
전남	276,868	196,597	34,641	14,289	7,723	4,887
전북	232,330	164,227	32,300	11,976	6,005	3,531
대전	161,409	106,885	23,594	9,460	5,150	3,324
충남	231,907	165,891	30,188	11,864	6,147	3,683
충북	172,389	122,148	22,860	9,036	4,535	2,724
강원	213,658	155,378	27,260	10,219	5,089	2,923
제주	66,928	52,649	7,570	2,659	1,262	639
기타	173,548	140,846	16,753	5,595	2,507	1,360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6년	55,572	37,760	26,526	18,821	37,553	151,258
서울	11,287	7,739	5,469	3,706	6,692	22,539
인천	3,859	2,658	1,959	1,441	3,010	8,075
경기	12,109	8,396	5,900	4,253	8,721	27,444
대구	2,905	2,017	1,521	1,105	2,612	6,935
경북	2,617	1,764	1,259	918	1,859	9,666
경남	1,925	1,245	853	621	1,239	9,253
부산	3,938	2,785	2,047	1,462	2,819	11,088
울산	659	344	212	134	258	2,794
광주	1,892	1,253	968	651	1,419	4,535
전남	3,039	2,055	1,214	991	1,837	9,595
전북	2,203	1,386	933	664	1,236	7,869
대전	2,200	1,542	1,153	802	1,757	5,542
충남	2,214	1,435	867	603	1,154	7,861
충북	1,628	1,117	785	538	1,159	5,859
강원	1,915	1,296	805	591	1,039	7,143
제주	359	206	134	68	118	1,264
기타	823	522	447	273	624	3,796

〈부표 20〉 시도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7년	5,793,219	4,203,299	738,674	288,144	148,313	87,296
서울	968,723	665,601	139,166	58,747	30,134	17,643
인천	345,364	246,731	44,294	17,942	9,503	5,892
경기	1,195,471	862,925	153,989	61,272	31,900	18,562
대구	276,085	194,860	37,771	14,269	7,559	4,531
경북	312,444	230,377	38,265	14,129	7,328	4,262
경남	325,427	253,245	35,692	12,309	5,858	3,187
부산	402,602	288,955	53,670	19,789	10,103	5,945
울산	122,505	96,325	13,315	4,854	2,381	1,229
광주	184,490	130,892	25,073	9,706	5,127	2,974
전남	290,884	210,399	34,848	14,296	7,723	4,887
전북	244,044	175,775	32,466	11,976	6,005	3,531
대전	171,505	116,802	23,765	9,468	5,150	3,324
충남	256,129	189,521	30,773	11,870	6,148	3,683
충북	184,787	134,305	23,099	9,038	4,535	2,724
강원	228,528	170,039	27,466	10,221	5,090	2,923
제주	71,996	57,697	7,590	2,659	1,262	639
기타	212,235	178,850	17,432	5,599	2,507	1,360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7년	55,573	37,760	26,526	18,821	37,553	151,260
서울	11,287	7,739	5,469	3,706	6,692	22,539
인천	3,859	2,658	1,959	1,441	3,010	8,075
경기	12,109	8,396	5,900	4,253	8,721	27,444
대구	2,905	2,017	1,521	1,105	2,612	6,935
경북	2,617	1,764	1,259	918	1,859	9,666
경남	1,925	1,245	853	621	1,239	9,253
부산	3,939	2,785	2,047	1,462	2,819	11,088
울산	659	344	212	134	258	2,794
광주	1,892	1,253	968	651	1,419	4,535
전남	3,039	2,055	1,214	991	1,837	9,595
전북	2,203	1,386	933	664	1,236	7,869
대전	2,200	1,542	1,153	802	1,757	5,542
충남	2,214	1,435	867	603	1,154	7,861
충북	1,628	1,117	785	538	1,159	5,859
강원	1,915	1,296	805	591	1,039	7,143
제주	359	206	134	68	118	1,264
기타	823	522	447	273	624	3,798

〈부표 21〉 시도별 성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2013년	남성	여성	2014년	남성	여성	2015년	남성	여성
합계	4,258,570	3,666,378	592,192	4,606,161	3,951,823	654,338	4,932,097	4,222,438	709,659
서울	709,084	634,748	74,336	771,752	688,442	83,310	827,754	736,644	91,110
인천	256,491	221,436	35,055	276,995	238,291	38,704	295,872	254,038	41,834
경기	827,521	721,842	105,679	909,599	790,543	119,056	984,401	853,822	130,579
대구	217,817	187,293	30,524	231,387	198,180	33,207	245,151	209,170	35,981
경북	243,526	209,530	33,996	260,071	223,074	36,997	276,010	236,187	39,823
경남	239,659	203,797	35,862	258,319	218,822	39,497	276,159	233,308	42,851
부산	305,888	267,037	38,851	327,624	284,673	42,951	348,836	302,069	46,767
울산	81,100	69,507	11,593	88,787	75,808	12,979	95,791	81,452	14,339
광주	146,271	114,269	32,002	156,876	122,117	34,759	165,556	128,551	37,005
전남	235,344	189,242	46,102	251,115	201,113	50,002	263,502	210,697	52,805
전북	198,202	163,342	34,860	211,284	173,578	37,706	221,837	181,972	39,865
대전	134,144	114,769	19,375	143,342	122,051	21,291	151,974	129,039	22,935
충남	182,193	158,834	23,359	197,950	171,894	26,056	213,298	184,727	28,571
충북	143,232	123,256	19,976	153,000	131,208	21,792	162,053	138,798	23,255
강원	177,203	151,941	25,262	189,702	162,442	27,260	201,255	172,328	28,927
제주	52,897	44,189	8,708	57,816	48,066	9,750	62,189	51,522	10,667
기타	108,001	91,346	16,652	120,544	101,521	19,021	140,461	118,114	22,345

(단위: 명)

구분	2016년	남성	여성	2017년	남성	여성
합계	5,325,663	4,553,052	772,611	5,793,219	4,942,034	851,185
서울	893,038	792,924	100,114	968,723	857,683	111,040
인천	318,596	273,153	45,443	345,364	295,262	50,102
경기	1,079,123	934,128	144,995	1,195,471	1,031,260	164,211
대구	260,353	221,563	38,790	276,085	234,168	41,917
경북	294,018	251,182	42,836	312,444	266,281	46,163
경남	297,570	251,344	46,226	325,427	274,959	50,468
부산	373,704	323,053	50,651	402,602	347,545	55,057
울산	105,529	89,684	15,845	122,505	103,645	18,860
광주	174,697	135,411	39,286	184,490	142,829	41,661
전남	276,868	221,291	55,577	290,884	232,508	58,376
전북	232,330	190,479	41,851	244,044	199,850	44,194
대전	161,409	136,841	24,568	171,505	145,152	26,353
충남	231,907	200,270	31,637	256,129	219,763	36,366
충북	172,389	147,552	24,837	184,787	157,846	26,941
강원	213,658	182,924	30,734	228,528	195,474	33,054
제주	66,928	55,248	11,680	71,996	59,192	12,804
기타	173,548	146,005	27,541	212,235	178,617	33,618

〈부표 22〉 성별 적립금액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3년	4,258,570	2,518,021	549,827	512,034	208,875	115,126
남성	3,666,378	2,128,593	468,829	451,063	189,938	106,707
여성	592,195	389,428	80,998	60,971	18,937	8,419
2014년	4,606,161	2,750,921	591,990	557,434	227,229	122,276
남성	3,951,823	2,316,651	503,296	490,151	206,093	113,017
여성	654,340	434,270	88,694	67,283	21,136	9,259
2015년	4,932,097	2,969,365	634,914	604,070	242,830	124,501
남성	4,222,438	2,494,495	539,128	531,046	220,106	114,976
여성	709,661	474,870	95,786	73,024	22,724	9,525
2016년	5,325,663	3,250,172	695,437	652,566	246,469	124,579
남성	4,553,052	2,728,664	590,566	572,947	223,157	115,019
여성	772,613	521,508	104,871	79,619	23,312	9,560
2017년	5,793,219	3,657,893	745,867	661,815	246,603	124,593
남성	4,942,034	3,067,999	632,715	580,366	223,226	115,025
여성	851,185	589,894	113,152	81,449	23,377	9,568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3년	71,334	46,863	31,532	21,539	32,162	151,257
남성	66,861	44,259	29,897	20,583	31,058	128,590
여성	4,473	2,604	1,635	956	1,104	22,667
2014년	72,820	46,984	31,539	21,546	32,164	151,258
남성	68,127	44,347	29,902	20,589	31,060	128,590
여성	4,693	2,637	1,637	957	1,104	22,668
2015년	72,918	46,991	31,540	21,546	32,164	151,258
남성	68,197	44,348	29,903	20,589	31,060	128,590
여성	4,721	2,643	1,637	957	1,104	22,668
2016년	72,936	46,992	31,543	21,546	32,165	151,258
남성	68,207	44,348	29,905	20,589	31,060	128,590
여성	4,729	2,644	1,638	957	1,105	22,668
2017년	72,941	46,993	31,543	21,546	32,165	151,260
남성	68,210	44,349	29,905	20,589	31,060	128,590
여성	4,731	2,644	1,638	957	1,105	22,670

〈부표 23〉 성별 적립일수별 신고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3년	4,258,570	2,866,339	589,267	250,846	139,014	85,754
남성	3,666,378	2,428,521	512,936	224,410	126,389	79,203
여성	592,195	437,818	76,331	26,436	12,625	6,551
2014년	4,606,161	3,141,403	634,823	269,175	146,097	87,188
남성	3,951,823	2,651,043	552,159	240,551	132,631	80,433
여성	654,340	490,360	82,664	28,624	13,466	6,755
2015년	4,932,097	3,402,935	681,624	284,550	148,230	87,276
남성	4,222,438	2,864,826	593,242	254,367	134,503	80,492
여성	709,661	538,109	88,382	30,183	13,727	6,784
2016년	5,325,663	3,744,824	729,744	288,015	148,299	87,291
남성	4,553,052	3,150,907	634,836	257,256	134,541	80,501
여성	772,613	593,917	94,908	30,759	13,758	6,790
2017년	5,793,219	4,203,299	738,674	288,144	148,313	87,296
남성	4,942,034	3,532,666	641,985	257,320	134,547	80,504
여성	851,185	670,633	96,689	30,824	13,766	6,792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3년	55,454	37,749	26,520	18,819	37,551	151,257
남성	51,787	35,352	25,074	17,888	36,228	128,590
여성	3,667	2,397	1,446	931	1,323	22,657
2014년	55,562	37,756	26,526	18,821	37,552	151,258
남성	51,863	35,356	25,079	17,889	36,229	128,590
여성	3,699	2,400	1,447	932	1,323	22,668
2015년	55,568	37,757	26,526	18,821	37,552	151,258
남성	51,864	35,357	25,079	17,889	36,229	128,590
여성	3,704	2,400	1,447	932	1,323	22,668
2016년	55,572	37,760	26,526	18,821	37,553	151,258
남성	51,865	35,359	25,079	17,889	36,229	128,590
여성	3,707	2,401	1,447	932	1,324	22,668
2017년	55,573	37,760	26,526	18,821	37,553	151,260
남성	51,866	35,359	25,079	17,889	36,229	128,590
여성	3,707	2,401	1,447	932	1,324	22,670

〈부표 24〉 월별 연도별 신고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6,253,841	6,345,901	6,393,331	7,171,780	8,181,316
1월	473,056	531,927	514,479	553,621	648,468
2월	405,099	440,823	462,133	492,746	582,858
3월	408,699	453,339	446,160	502,395	618,282
4월	510,977	530,101	526,481	577,104	678,935
5월	534,464	540,534	530,554	591,672	678,849
6월	554,730	553,144	544,154	616,625	699,333
7월	567,426	557,500	560,753	629,379	714,848
8월	536,637	537,943	546,215	620,001	699,029
9월	546,899	522,213	546,094	625,083	715,121
10월	545,718	538,741	548,375	624,525	696,900
11월	585,409	571,332	583,836	661,546	712,885
12월	584,727	568,304	584,097	677,083	735,808

〈부표 25〉 월별 연도별 신고일수

(단위: 일)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04,450,005	107,563,807	108,569,444	123,046,574	145,710,447
1월	7,628,675	8,917,822	8,845,118	9,640,761	11,899,565
2월	6,712,599	7,240,551	8,042,018	8,275,154	9,732,120
3월	5,959,415	7,346,468	6,992,586	7,795,532	11,079,836
4월	8,723,425	9,275,006	9,252,413	10,104,808	12,843,242
5월	9,042,516	9,362,834	8,936,918	10,121,912	12,183,569
6월	9,463,115	9,522,327	9,206,700	10,795,565	12,697,216
7월	9,854,241	9,578,598	9,748,508	11,066,995	12,883,678
8월	8,873,596	9,034,693	9,254,946	10,382,760	12,116,025
9월	9,110,109	8,569,639	8,983,340	10,703,686	12,571,062
10월	8,578,465	8,674,067	8,986,158	10,116,459	12,284,484
11월	10,324,638	10,194,254	10,344,303	11,697,658	12,067,732
12월	10,179,211	9,847,548	9,976,436	12,345,284	13,351,918

〈부표 26〉 연도별 연령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563,716	37,906	4,105	21,757	45,721	46,854	49,228
1998년	-	-	-	-	-	-	-
1999년	-	-	-	-	-	-	-
2000년	-	-	-	-	-	-	-
2001년	-	-	-	-	-	-	-
2002년	4	-	-	-	-	-	-
2003년	1	-	-	-	-	-	-
2004년	4,005	-	-	-	6	133	330
2005년	2,834	-	-	-	7	74	181
2006년	23,692	55	-	2	132	708	1,783
2007년	32,211	86	4	15	406	1,359	2,638
2008년	48,630	83	7	86	872	2,713	4,218
2009년	40,520	166	9	168	1,199	2,983	3,742
2010년	23,366	58	9	203	1,130	1,978	2,366
2011년	28,405	243	6	442	1,688	2,381	2,498
2012년	34,478	1,022	34	698	2,076	2,863	3,150
2013년	44,323	1,827	104	1,433	4,570	4,667	4,438
2014년	53,048	2,877	155	2,117	6,363	5,032	4,775
2015년	54,465	4,436	335	3,186	6,436	5,296	4,770
2016년	76,729	9,929	1,009	5,822	9,775	7,603	6,716
2017년	97,005	17,124	2,433	7,585	11,061	9,064	7,623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기타
합계	71,674	80,836	79,590	67,907	10,280	29,867	16,856	1,135
1998년	-	-	-	-	-	-	-	-
1999년	-	-	-	-	-	-	-	-
2000년	-	-	-	-	-	-	-	-
2001년	-	-	-	-	-	-	-	-
2002년	-	-	1	3	-	-	-	-
2003년	-	-	-	-	-	-	1	-
2004년	720	796	635	458	58	433	434	2
2005년	402	495	535	495	75	306	263	1
2006년	3,557	4,405	4,759	4,159	647	2,249	1,160	76
2007년	4,840	5,816	5,945	5,324	872	2,798	2,061	47
2008년	7,039	7,937	8,437	7,864	1,256	4,165	3,903	50
2009년	5,866	6,706	6,931	6,275	1,087	3,090	2,257	41
2010년	3,308	3,722	3,761	3,514	576	1,636	1,098	7
2011년	3,718	4,269	4,991	4,567	682	1,688	1,188	44
2012년	4,469	5,222	5,582	4,837	667	2,458	1,313	87
2013년	5,832	6,569	5,936	4,846	701	2,324	958	118
2014년	6,806	7,847	7,093	5,538	1,037	2,593	716	99
2015년	6,522	7,144	7,074	5,734	828	2,060	536	108
2016년	8,656	8,918	8,052	6,489	910	2,095	526	229
2017년	9,939	10,990	9,858	7,804	884	1,972	442	226

〈부표 27〉 연도별 시도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63,716	194,856	28,257	187,434	5,934	11,587	17,202	8,884	10,003
1998년	-	-	-	-	-	-	-	-	-
1999년	-	-	-	-	-	-	-	-	-
2000년	-	-	-	-	-	-	-	-	-
2001년	-	-	-	-	-	-	-	-	-
2002년	4	1	-	-	1	-	-	1	-
2003년	1	1	-	-	-	-	-	-	-
2004년	4,005	1,698	175	1,284	50	147	98	56	53
2005년	2,834	1,291	134	952	23	45	42	30	12
2006년	23,692	11,584	1,025	7,068	340	366	335	295	217
2007년	32,211	15,541	1,544	9,748	417	597	443	383	315
2008년	48,630	22,088	2,435	16,419	526	729	629	565	522
2009년	40,520	17,223	2,263	13,946	406	576	739	562	433
2010년	23,366	9,607	1,790	7,802	185	344	386	288	257
2011년	28,405	11,807	1,895	9,573	186	468	432	386	261
2012년	34,478	13,778	1,966	11,335	238	480	820	633	657
2013년	44,323	16,425	2,258	14,289	415	749	1,359	799	955
2014년	53,048	17,749	2,307	17,747	630	1,173	1,792	795	1,049
2015년	54,465	15,489	2,552	17,775	907	1,665	2,045	953	1,247
2016년	76,729	18,504	3,401	25,278	886	2,206	3,479	1,310	1,660
2017년	97,005	22,070	4,512	34,218	724	2,042	4,603	1,828	2,365

(단위: 명)

구분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3,980	19,801	10,871	3,884	5,766	5,198	8,061	1,586	40,412
1998년	-	-	-	-	-	-	-	-	-
1999년	-	-	-	-	-	-	-	-	-
2000년	-	-	-	-	-	-	-	-	-
2001년	-	-	-	-	-	-	-	-	-
2002년	1	-	-	-	-	-	-	-	-
2003년	-	-	-	-	-	-	-	-	-
2004년	34	92	36	8	35	53	80	2	104
2005년	29	67	41	12	21	29	41	4	61
2006년	179	503	322	149	264	183	306	36	520
2007년	213	746	409	215	330	228	350	27	705
2008년	307	1,188	571	267	516	391	456	52	969
2009년	326	1,139	570	239	436	396	382	66	818
2010년	168	587	328	114	269	223	257	38	723
2011년	206	833	399	152	306	270	403	62	766
2012년	220	1,177	588	196	371	408	384	84	1,143
2013년	250	1,575	822	457	527	579	491	172	2,201
2014년	397	2,032	1,059	478	689	511	883	146	3,611
2015년	449	2,464	1,296	404	516	431	722	252	5,298
2016년	481	3,455	1,849	532	698	762	1,191	289	10,748
2016년	720	3,943	2,581	661	788	734	2,115	356	12,745

〈부표 28〉 연도별 적립금액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563,716	354,125	73,077	79,173	32,481	12,756
1998년	-	-	-	-	-	-
1999년	-	-	-	-	-	-
2000년	-	-	-	-	-	-
2001년	-	-	-	-	-	-
2002년	4	2	-	-	-	-
2003년	1	-	-	-	-	-
2004년	4,005	1,302	534	610	289	169
2005년	2,834	1,033	393	463	248	130
2006년	23,692	10,583	3,214	4,190	2,334	1,306
2007년	32,211	16,303	4,228	5,461	2,713	1,401
2008년	48,630	27,159	6,143	8,180	3,625	1,622
2009년	40,520	26,357	4,111	5,510	2,415	1,031
2010년	23,366	16,016	2,125	2,899	1,210	567
2011년	28,405	17,453	2,753	4,349	2,071	968
2012년	34,478	20,643	3,351	5,340	2,778	1,450
2013년	44,323	24,627	4,991	7,809	4,286	1,886
2014년	53,048	28,406	6,626	10,347	5,679	1,744
2015년	54,465	30,804	8,232	10,875	4,064	470
2016년	76,729	50,054	14,467	11,454	742	12
2017년	97,005	83,383	11,909	1,686	27	-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합계	5,438	2,706	1,490	775	454	1,241
1998년	-	-	-	-	-	-
1999년	-	-	-	-	-	-
2000년	-	-	-	-	-	-
2001년	-	-	-	-	-	-
2002년	-	-	-	-	-	2
2003년	-	-	-	-	-	1
2004년	115	67	33	30	15	841
2005년	76	49	20	17	20	385
2006년	775	493	381	239	165	12
2007년	879	543	370	204	109	-
2008년	827	507	324	159	84	-
2009년	560	293	140	67	36	-
2010년	291	149	70	27	12	-
2011년	471	216	92	21	11	-
2012년	616	245	45	9	1	-
2013년	583	124	15	1	1	-
2014년	225	20	-	1	-	-
2015년	20	-	-	-	-	-
2016년	-	-	-	-	-	-
2017년	-	-	-	-	-	-

〈부표 29〉 연도별 적립일수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563,716	418,552	82,612	34,787	14,066	6,008
1998년	-	-	-	-	-	-
1999년	-	-	-	-	-	-
2000년	-	-	-	-	-	-
2001년	-	-	-	-	-	-
2002년	-	-	-	-	-	-
2003년	4	2	-	-	-	-
2004년	1	-	-	-	-	-
2005년	4,005	1,423	761	409	212	146
2006년	2,834	1,133	568	312	177	107
2007년	23,692	11,484	4,804	2,928	1,743	1,021
2008년	32,211	18,190	6,395	3,326	1,776	1,006
2009년	48,630	30,928	9,238	4,311	1,963	957
2010년	40,520	29,611	5,921	2,674	1,142	600
2011년	23,366	17,932	3,035	1,245	593	298
2012년	28,405	20,080	4,431	2,103	980	465
2013년	34,478	23,958	5,376	2,796	1,447	610
2014년	44,323	29,591	7,861	4,293	1,861	575
2015년	53,048	35,070	10,355	5,680	1,717	206
2016년	54,465	39,098	10,926	3,980	444	17
2017년	76,729	64,692	11,320	706	11	-

(단위: 명)

구분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9년이상	기타
합계	3,089	1,681	968	453	259	1,241
1998년	-	-	-	-	-	-
1999년	-	-	-	-	-	-
2000년	-	-	-	-	-	-
2001년	-	-	-	-	-	-
2002년	-	-	-	-	-	2
2003년	-	-	-	-	-	1
2004년	98	47	31	24	13	841
2005년	62	31	27	21	11	385
2006년	632	446	316	185	121	12
2007년	646	452	255	100	65	-
2008년	581	340	201	74	37	-
2009년	313	146	75	31	7	-
2010년	153	67	31	10	2	-
2011년	223	91	22	7	3	-
2012년	235	47	9	-	-	-
2013년	127	13	1	1	-	-
2014년	19	1	-	-	-	-
2015년	-	-	-	-	-	-
2016년	-	-	-	-	-	-
2017년	-	-	-	-	-	-

〈부표 30〉 연도별 성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563,716	506,265	57,451
2002년	4	2	2
2003년	1	1	-
2004년	4,005	3,716	289
2005년	2,834	2,586	248
2006년	23,692	21,761	1,931
2007년	32,211	29,515	2,696
2008년	48,630	44,731	3,899
2009년	40,520	36,468	4,052
2010년	23,366	20,858	2,508
2011년	28,405	25,704	2,701
2012년	34,478	31,364	3,114
2013년	44,323	39,976	4,347
2014년	53,048	47,095	5,953
2015년	54,465	48,279	6,186
2016년	76,729	68,802	7,927
2017년	97,005	85,407	11,598

〈부표 31〉 연도별 시도별 외국인 신고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2년	101,765	49,144	5,008	32,322	526	1,074	1,553	1,178	1,168
2013년	113,926	51,943	5,302	35,713	779	1,368	2,284	1,484	1,669
2014년	133,008	56,399	6,071	42,912	1,181	1,980	3,082	1,677	1,980
2015년	149,691	58,628	7,034	48,502	1,614	2,813	3,883	1,979	2,408
2016년	194,178	66,590	8,909	64,547	1,863	3,888	6,062	2,629	3,365
2017년	239,474	74,810	11,183	82,751	1,813	4,320	8,571	3,767	4,714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2012년	414	746	816	497	2,366	1,246	822	186	2,699
2013년	743	917	1,051	564	3,033	1,568	878	307	4,323
2014년	900	1,178	1,022	765	3,897	1,966	1,311	321	6,366
2015년	920	1,088	1,009	946	5,041	2,592	1,478	449	9,307
2016년	1,186	1,393	1,491	1,151	6,953	3,692	2,233	603	17,623
2017년	1,474	1,777	1,756	1,414	8,107	5,103	3,726	660	23,528

〈부표 32〉 연도별 연령별 외국인 신고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2012년	101,765	96	2,182	10,074	22,555	37,017	26,793	2,978	70
2013년	113,926	135	4,387	15,933	26,091	39,003	25,824	2,495	58
2014년	133,008	112	7,198	22,009	30,413	44,188	26,981	2,039	68
2015년	149,691	117	11,747	26,234	33,730	48,130	28,098	1,585	50
2016년	194,178	256	24,719	36,936	42,503	56,735	31,498	1,480	51
2017년	239,474	289	41,707	47,026	50,218	65,312	33,609	1,267	46

〈부표 33〉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 피공제자수 및 금액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피공제자수	퇴직공제금 지급액
합계	581,946	1,252,928
1999년	3	2
2000년	638	513
2001년	3,836	3,600
2002년	5,046	5,271
2003년	6,621	7,332
2004년	11,419	12,828
2005년	15,044	17,177
2006년	14,700	18,109
2007년	11,495	14,395
2008년	12,703	16,932
2009년	20,328	28,997
2010년	22,935	38,374
2011년	25,290	48,753
2012년	45,257	89,271
2013년	57,968	124,087
2014년	68,113	154,417
2015년	73,775	187,767
2016년	86,457	220,709
2017년	100,318	264,394

〈부표 34〉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614,039	2	307	3,572	10,451	22,811	35,342
1999년	3	-	-	-	-	-	1
2000년	638	-	-	-	-	14	55
2001년	3,836	-	-	-	-	80	344
2002년	5,046	-	-	-	-	142	489
2003년	6,621	-	-	-	4	277	610
2004년	11,419	-	-	-	35	488	931
2005년	15,044	-	-	-	78	697	1,091
2006년	15,078	-	-	-	56	589	981
2007년	11,713	-	-	1	50	479	745
2008년	12,721	-	-	-	62	464	786
2009년	20,411	-	-	-	98	543	1,058
2010년	23,012	-	-	7	154	679	1,187
2011년	25,657	-	-	16	219	789	1,379
2012년	56,825	-	-	49	490	1,614	2,772
2013년	62,754	-	2	112	872	1,946	3,399
2014년	72,622	-	14	306	1,178	2,198	3,373
2015년	78,481	-	23	665	1,762	3,141	4,490
2016년	91,581	-	60	877	2,342	3,739	5,131
2017년	100,577	2	208	1,539	3,051	4,932	6,520

* 동일 근로자 추가지급건수 포함된 수치임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이상
합계	55,386	62,229	71,089	118,921	24,377	91,667	117,885
1999년	-	1	-	1	-	-	-
2000년	81	69	94	70	8	56	191
2001년	419	371	390	420	61	309	1,442
2002년	498	427	506	476	84	400	2,024
2003년	751	623	622	620	103	506	2,505
2004년	1,128	943	1,061	1,081	188	829	4,735
2005년	1,383	1,229	1,482	1,530	285	1,234	6,035
2006년	1,434	1,373	1,482	1,571	293	1,245	6,054
2007년	1,035	1,033	1,226	1,185	205	943	4,811
2008년	1,205	1,204	1,347	1,327	241	900	5,185
2009년	1,674	1,856	2,034	2,050	380	2,726	7,992
2010년	1,913	2,053	2,351	2,449	407	4,077	7,735
2011년	2,312	2,429	2,842	2,825	476	5,184	7,186
2012년	4,701	5,624	6,497	6,573	1,058	14,414	13,033
2013년	5,618	6,786	8,162	7,454	6,560	11,882	9,961
2014년	5,985	6,755	7,932	14,008	4,308	12,493	14,072
2015년	7,049	8,225	9,481	21,276	3,244	11,321	7,804
2016년	7,995	9,264	10,292	23,992	3,257	13,071	11,561
2017년	10,205	11,964	13,288	30,013	3,219	10,077	5,559

〈부표 35〉 연도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614,039	117,740	38,555	119,979	36,785	32,312	26,699	51,701	8,141
1999년	3	-	2	-	-	-	-	-	-
2000년	638	172	74	142	56	22	11	22	3
2001년	3,836	720	227	699	249	185	174	220	69
2002년	5,046	594	228	852	259	334	255	338	75
2003년	6,621	756	309	1,169	484	487	398	355	120
2004년	11,419	1,273	497	1,952	730	778	661	943	193
2005년	15,044	1,629	750	2,492	897	950	908	1,524	245
2006년	15,078	1,678	707	2,427	975	955	840	1,376	188
2007년	11,713	1,288	575	1,817	800	855	692	1,172	126
2008년	12,721	1,674	614	1,842	1,372	838	652	1,350	150
2009년	20,411	3,010	1,016	3,210	2,436	1,185	871	2,401	154
2010년	23,012	3,931	1,281	3,902	2,161	1,228	892	2,325	216
2011년	25,657	4,988	1,698	4,834	1,953	1,333	1,004	2,249	297
2012년	56,825	12,009	3,736	11,612	4,096	2,721	1,933	4,881	480
2013년	62,754	14,712	4,470	13,138	3,175	2,621	2,263	4,557	600
2014년	72,622	14,356	4,555	13,774	3,932	3,951	3,223	6,384	1,086
2015년	78,481	16,229	5,223	15,576	3,999	3,884	3,110	6,741	1,111
2016년	91,581	17,715	5,984	18,503	4,491	4,908	4,152	7,386	1,501
2017년	100,577	21,006	6,609	22,038	4,720	5,077	4,660	7,477	1,527

* 동일 근로자 추가지급건수 포함된 수치임

(단위: 명)

구분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22,728	24,884	19,037	22,392	30,978	29,069	22,085	4,405	6,549
1999년	-	-	-	-	1	-	-	-	-
2000년	51	14	12	7	15	13	17	3	4
2001년	188	233	146	177	135	223	149	30	12
2002년	242	225	255	245	333	413	267	109	22
2003년	295	297	344	395	421	428	306	43	14
2004년	550	525	527	594	839	792	453	57	55
2005년	796	675	570	725	1,008	907	624	99	245
2006년	819	675	651	946	1,033	1,115	493	92	108
2007년	613	483	534	668	793	760	425	43	69
2008년	500	452	455	696	735	819	489	47	36
2009년	749	655	540	1,088	1,146	1,113	661	76	100
2010년	848	773	741	1,165	1,237	1,194	813	140	165
2011년	943	786	696	1,182	1,332	1,123	879	201	159
2012년	2,077	1,714	1,493	2,323	2,454	2,463	1,897	361	575
2013년	2,244	2,294	1,760	2,067	2,866	2,803	2,069	409	706
2014년	2,673	2,923	2,137	2,427	3,923	3,391	2,552	503	832
2015년	2,869	3,237	2,408	2,442	3,730	3,711	2,746	539	926
2016년	3,018	4,299	2,760	2,627	4,644	4,085	3,599	793	1,116
2017년	3,253	4,624	3,008	2,618	4,333	3,716	3,646	860	1,405

〈부표 36〉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614,039	111,677	282,915	108,138	50,198
1999년	3	3	-	-	-
2000년	638	497	139	2	-
2001년	3,836	2,441	1,315	79	1
2002년	5,046	2,737	2,081	217	11
2003년	6,621	3,464	2,615	480	57
2004년	11,419	5,978	4,357	909	142
2005년	15,044	7,792	5,690	1,215	272
2006년	15,078	7,290	5,961	1,356	339
2007년	11,713	5,803	4,468	1,022	306
2008년	12,721	5,647	5,129	1,367	411
2009년	20,411	7,768	9,018	2,515	769
2010년	23,012	5,700	11,443	3,786	1,348
2011년	25,657	4,207	12,577	5,345	2,176
2012년	56,825	16,921	23,677	9,480	3,982
2013년	62,754	9,318	29,755	12,697	5,968
2014년	72,622	9,238	34,758	13,776	6,925
2015년	78,481	7,048	35,893	15,480	8,206
2016년	91,581	7,575	43,578	17,754	8,944
2017년	100,577	2,250	50,461	20,658	10,341

* 동일 근로자 추가지급건수 포함된 수치임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합계	25,860	14,725	8,629	5,178	6,719
1999년	-	-	-	-	-
2000년	-	-	-	-	-
2001년	-	-	-	-	-
2002년	-	-	-	-	-
2003년	5	-	-	-	-
2004년	30	3	-	-	-
2005년	60	12	3	-	-
2006년	97	26	8	1	-
2007년	91	18	3	2	-
2008년	115	38	10	2	2
2009년	242	67	23	7	2
2010년	455	187	62	24	7
2011년	869	285	131	43	24
2012년	1,636	702	273	95	59
2013년	2,794	1,283	551	224	164
2014년	3,727	2,069	1,129	547	453
2015년	4,834	3,039	1,801	1,082	1,098
2016년	5,088	3,322	2,107	1,372	1,841
2017년	5,817	3,674	2,528	1,779	3,069

〈부표 37〉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614,039	31,765	316,826	125,758	61,078	32,498
1999년	3	-	3	-	-	-
2000년	638	-	586	47	4	1
2001년	3,836	-	2,986	674	163	11
2002년	5,046	-	3,366	1,281	306	82
2003년	6,621	-	4,008	1,705	596	221
2004년	11,419	-	7,102	2,486	1,165	450
2005년	15,044	-	9,315	3,196	1,479	609
2006년	15,078	361	8,317	3,506	1,618	704
2007년	11,713	213	6,488	2,827	1,189	555
2008년	12,721	13	7,070	3,081	1,396	653
2009년	20,411	72	10,969	5,063	2,280	1,101
2010년	23,012	73	12,689	5,368	2,559	1,178
2011년	25,657	352	13,014	6,158	3,085	1,526
2012년	56,825	11,555	24,511	10,485	5,018	2,590
2013년	62,754	4,778	30,399	13,194	6,675	3,597
2014년	72,622	4,499	37,193	14,047	7,081	4,089
2015년	78,481	4,700	37,885	15,165	7,879	4,813
2016년	91,581	5,118	46,830	17,287	8,594	4,875
2017년	100,577	31	54,095	20,188	9,991	5,443

* 동일 근로자 추가지급건수 포함된 수치임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합계	18,528	11,107	6,911	4,054	5,505	9
1999년	-	-	-	-	-	-
2000년	-	-	-	-	-	-
2001년	2	-	-	-	-	-
2002년	10	1	-	-	-	-
2003년	69	20	2	-	-	-
2004년	123	64	25	4	-	-
2005년	270	106	47	17	5	-
2006년	309	166	57	26	14	-
2007년	239	116	65	13	8	-
2008년	291	118	60	27	12	-
2009년	502	241	101	54	28	-
2010년	615	280	140	68	42	-
2011년	806	386	172	85	66	7
2012년	1,337	671	345	175	137	1
2013년	1,907	1,064	576	271	292	1
2014년	2,377	1,477	874	467	518	-
2015년	3,050	1,977	1,273	775	964	-
2016년	3,180	2,021	1,450	894	1,332	-
2017년	3,441	2,399	1,724	1,178	2,087	-

〈부표 38〉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614,039	542,250	71,789
1999년	3	3	-
2000년	638	530	108
2001년	3,836	2,945	891
2002년	5,046	3,448	1,598
2003년	6,621	4,471	2,150
2004년	11,419	7,750	3,669
2005년	15,044	10,676	4,368
2006년	15,078	10,762	4,316
2007년	11,713	8,944	2,769
2008년	12,721	10,357	2,364
2009년	20,411	17,005	3,406
2010년	23,012	19,882	3,130
2011년	25,657	22,334	3,323
2012년	56,825	51,134	5,691
2013년	62,754	57,497	5,257
2014년	72,622	66,031	6,591
2015년	78,481	72,141	6,340
2016년	91,581	84,256	7,325
2017년	100,577	92,084	8,493

* 동일 근로자 추가지급건수 포함된 수치임

〈부표 39〉 연도별 퇴직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고령	부상질병	사망	상용근로자	자영업	타업종취업	기타
합계	614,039	279,664	81,418	11,670	18,820	26,724	100,979	94,764
1999년	3	-	1	-	1	-	-	1
2000년	638	85	30	4	38	23	118	340
2001년	3,836	1,017	164	30	109	188	448	1,880
2002년	5,046	1,472	404	54	237	364	1,042	1,473
2003년	6,621	1,723	577	86	637	405	1,361	1,832
2004년	11,419	3,607	1,068	154	575	545	2,427	3,043
2005년	15,044	4,788	1,527	142	572	699	3,499	3,817
2006년	15,078	5,105	1,697	170	522	708	3,451	3,425
2007년	11,713	4,468	1,324	151	435	704	2,715	1,916
2008년	12,721	5,057	1,330	206	382	695	3,360	1,691
2009년	20,411	9,490	2,077	334	680	1,103	4,516	2,211
2010년	23,012	10,110	1,884	1,852	785	1,210	4,904	2,267
2011년	25,657	11,407	2,504	1,024	812	1,388	5,430	3,092
2012년	56,825	26,085	6,923	1,421	1,535	2,230	8,577	10,054
2013년	62,754	27,363	10,041	1,250	2,290	2,417	8,727	10,666
2014년	72,622	38,032	9,932	1,237	1,787	2,712	9,894	9,028
2015년	78,481	37,495	11,572	1,161	2,077	3,351	12,819	10,006
2016년	91,581	47,235	12,637	1,188	2,565	3,675	12,771	11,510
2017년	100,577	45,125	15,726	1,206	2,781	4,307	14,920	16,512

* 동일 근로자 추가지급건수 포함된 수치임

〈부표 40〉 연령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614,039	117,740	38,555	119,979	36,785	32,312	26,699	51,701	8,141
19세 이하	2	-	1	-	-	-	-	-	-
20~24세	307	42	21	75	18	25	18	17	1
25~29세	3,572	436	457	806	152	151	212	280	68
30~34세	10,451	1,728	1,012	2,347	419	511	483	754	212
35~39세	22,811	3,788	1,593	4,663	1,217	1,270	1,016	1,895	329
40~44세	35,342	6,080	2,192	7,123	2,087	1,993	1,558	2,679	463
45~49세	55,386	11,112	3,463	12,032	2,963	2,694	2,390	4,022	647
50~54세	62,229	13,553	4,096	13,760	3,490	2,918	2,309	4,362	674
55~59세	71,089	15,865	4,669	15,136	3,975	3,147	2,814	5,410	791
60~64세	118,921	23,830	7,892	24,406	6,643	6,081	5,171	9,921	1,791
65세	24,377	4,852	1,531	4,608	1,474	1,400	1,082	2,185	352
66~69세	91,667	17,528	5,518	16,450	6,046	4,935	4,170	8,655	1,284
70세 이상	117,885	18,926	6,110	18,573	8,301	7,187	5,476	11,521	1,529

* 동일 근로자 추가지급건수 포함된 수치임

(단위: 명)

구분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22,728	24,884	19,037	22,392	30,978	29,069	22,085	4,405	6,549
19세 이하	-	-	-	-	-	-	-	1	-
20~24세	15	12	11	11	11	12	10	3	5
25~29세	101	163	78	124	181	109	126	40	88
30~34세	301	487	269	329	523	423	302	97	254
35~39세	873	1,012	582	910	1,384	1,019	765	159	336
40~44세	1,453	1,632	1,043	1,598	1,821	1,718	1,164	296	442
45~49세	2,075	2,329	1,587	2,247	2,489	2,499	1,798	397	642
50~54세	2,149	2,592	1,801	2,111	2,627	2,638	2,055	403	691
55~59세	2,635	2,882	1,967	2,164	2,998	2,840	2,560	438	798
60~64세	4,299	4,738	3,679	3,541	5,307	5,061	4,554	823	1,184
65세	914	967	800	701	1,112	1,107	847	177	268
66~69세	3,363	3,443	2,714	3,455	4,977	4,695	2,996	607	831
70세 이상	4,550	4,627	4,506	5,201	7,548	6,948	4,908	964	1,010

〈부표 41〉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합계	614,039	111,677	282,915	108,138	50,198	25,860	14,725	8,629	5,178
19세 이하	2	-	1	1	-	-	-	-	-
20~24세	307	6	270	24	6	1	-	-	-
25~29세	3,572	139	2,586	612	172	49	11	1	2
30~34세	10,451	1,037	6,397	2,002	670	225	77	28	5
35~39세	22,811	4,109	11,884	4,022	1,541	627	303	175	69
40~44세	35,342	6,547	17,013	6,504	2,659	1,248	606	369	197
45~49세	55,386	9,286	25,581	10,529	4,738	2,370	1,324	678	411
50~54세	62,229	9,942	27,656	12,289	5,719	2,862	1,610	964	538
55~59세	71,089	11,471	30,935	13,876	6,579	3,443	2,061	1,156	697
60~64세	118,921	14,780	50,713	21,836	12,026	7,093	4,618	2,952	1,975
65세	24,377	3,654	11,565	4,231	2,132	1,214	662	402	235
66~69세	91,667	15,749	43,625	15,698	7,625	3,966	2,154	1,231	742
70세 이상	117,885	34,957	54,689	16,514	6,331	2,762	1,299	673	307

* 동일 근로자 추가지급건수 포함된 수치임

(단위: 명)

구분	9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100만 원 미만	1,200만 원 미만	1,300만 원 미만	1,400만 원 미만	1,500만 원 미만	1,600만 원 미만	1,700만 원 미만	1,800만 원 미만
	합계	2,951	1,705	1,036	540	269	119	56	25	14
19세 이하	-	-	-	-	-	-	-	-	-	-
20~24세	-	-	-	-	-	-	-	-	-	-
25~29세	-	-	-	-	-	-	-	-	-	-
30~34세	6	3	1	-	-	-	-	-	-	-
35~39세	47	17	11	4	2	-	-	-	-	-
40~44세	100	43	24	20	7	3	2	-	-	-
45~49세	215	119	66	35	19	8	5	2	-	-
50~54세	284	170	96	63	20	10	4	1	1	-
55~59세	399	204	135	59	49	11	8	4	1	1
60~64세	1,248	737	478	238	111	68	26	14	6	2
65세	130	72	38	27	9	2	2	1	1	-
66~69세	376	236	139	69	36	11	3	2	4	1
70세 이상	146	104	48	25	16	6	6	1	1	-

2017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발 행 일 2018년 11월
발 행 인 권영순
총 기 획 건설근로자공제회 기획관리팀
발 행 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
전 화 1666-1122
인 쇄 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함께행복과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건설근로자공제회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4층
T 1666-1122 www.cwma.or.kr